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847-01

정책보고서 2016-58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현수 · 오미애 · 강은나 · 고제이 · 전진아
김혜승 · 길현종 · 박현용 · 천미경 · 김솔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적정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책임연구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동연구진】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용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박사후 연구과정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솔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 제1부 1인 취약가구 현황 및 위험 분석 〉	1
제1장 서 론: 1인 취약가구 연구배경 및 개념 정의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3절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	16
제2장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운영 사례 검토	21
제1절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 동향	23
제2절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 운영사례: 서울특별시	32
제3장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39
제1절 주민등록 및 행복e음 기반 지역별 1인 세대 및 1인 취약가구 현황 분석	41
제2절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46
제4장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취약가구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 개발 및 분석결과	57
제1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요인 및 예측모형 개발	59
제2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 예측 및 분석결과	66
〈 제2부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	71
제5장 소득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77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79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87

제6장 고용서비스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93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95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06
제7장 주거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125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127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60
제8장 건강행태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299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201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210
제9장 정신건강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223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225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231
제10장 돌봄안전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243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245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255
제11장 결 론: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273
참고문헌	287
부록	293

표 목차

〈표 1-1〉 기존연구에서의 1인 가구 개념	18
〈표 2-1〉 성별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24
〈표 2-2〉 성별 1인가구 세대주의 연령	25
〈표 2-3〉 2014, 2015년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	26
〈표 6-1〉 가구원수별 종사상 지위와 근로소득 평균 및 중위값	100
〈표 6-2〉 취약가구 가구주 취업 로짓회귀분석	103
〈표 6-3〉 고용서비스 사업을 대상층을 기준으로 구분	111
〈표 6-4〉 (근로가능)연령 전체에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113
〈표 7-1〉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의 1인 가구 비율	128
〈표 7-2〉 1인 가구 평균 주거면적	129
〈표 7-3〉 (일반가구) 1인 가구 주택유형	130
〈표 7-4〉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택유형	130
〈표 7-5〉 (일반가구) 1인 가구 임대주택유형	131
〈표 7-6〉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임대주택유형	132
〈표 7-7〉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33
〈표 7-8〉 1인 가구 지하·반지하·옥상/쪽방/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옴막·기타 거처 거주비율	134
〈표 7-9〉 (일반가구) 1인 가구 건축년도	135
〈표 7-10〉 (장애인가구) 1인 가구 건축년도	136
〈표 7-11〉 (일반가구) 1인 가구 주택상태	137
〈표 7-12〉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택상태	138
〈표 7-13〉 1인 가구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139
〈표 7-14〉 (일반가구) 1인 가구 점유형태	140
〈표 7-15〉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점유형태	140
〈표 7-16〉 1인 가구 평균 거주기간	141
〈표 7-17〉 (일반가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42
〈표 7-18〉 (일반가구) 1인 가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43
〈표 7-19〉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44
〈표 7-20〉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45
〈표 7-21〉 1인 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146
〈표 7-22〉 (일반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	147

〈표 7-23〉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1	148
〈표 7-24〉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2	149
〈표 7-25〉 1인 가구 소득	150
〈표 7-26〉 1인 가구 순자산	150
〈표 7-27〉 (일반가구) 1인 가구 가구주 근로형태	151
〈표 7-28〉 (장애인가구) 1인 가구 가구주 근로형태	152
〈표 7-29〉 1인 가구 가구주 연령	153
〈표 7-30〉 1인 가구 가구주 성별	154
〈표 7-31〉 (1인 일반가구) 계층별 주거상황	156
〈표 7-32〉 (1인 장애인가구) 계층별 주거상황	157
〈표 7-33〉 (1인 일반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158
〈표 7-34〉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1	159
〈표 7-35〉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2	160
〈표 7-36〉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160
〈표 7-37〉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161
〈표 7-38〉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163
〈표 7-39〉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최대 거주기간	165
〈표 7-4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166
〈표 7-4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유형별 자격요건 및 주요 특징	167
〈표 7-42〉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세부조건	170
〈표 7-4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세부조건	172
〈표 7-44〉 기존 다가구 매입임대와의 비교	179
〈표 7-45〉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추진실적(2015.6 기준)	183
〈표 7-46〉 서울시 원룸형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184
〈표 7-47〉 희망하우징 임대가격 수준	186
〈표 7-48〉 희망하우징 공급실적(2015.9월말 기준)	186
〈표 7-49〉 서울시 소재 1인 가구 대상 공동체주택 공급현황	187
〈표 7-50〉 공동체주택 유형별 주요 내용	188
〈표 7-51〉 현행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개요	193
〈표 8-1〉 건강행태 구분 및 정의	204
〈표 8-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 차이	205

〈표 8-3〉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만성질환 관리 특성 비교	206
〈표 8-4〉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의 신체활동 실천 차이	207
〈표 8-5〉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208
〈표 8-6〉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관리 특성 비교	209
〈표 8-7〉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213
〈표 8-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항목	213
〈표 9-1〉 정신건강 지표와 정의	228
〈표 9-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 차이	228
〈표 9-3〉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229
〈표 9-4〉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신건강 수준	230
〈표 9-5〉 지역별 1인 가구 비율, 고령화율, 그리고 자살 사망률	231
〈표 9-6〉 정신건강 종합대책 내용 요약	232
〈표 9-7〉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	233
〈표 9-8〉 시·도별 정신보건기관·시설 설치 현황	234
〈표 9-9〉 대한민국 연령별 10만명 당 자살자 수(2014)	237
〈표 10-1〉 돌봄 및 안전영역의 개념정의 및 정책 대상	245
〈표 10-2〉 돌봄 및 안전 관련 이차자료 분석 내용	246
〈표 10-3〉 노인 돌봄 수요 현황	247
〈표 10-4〉 신체적 기능제한 노인의 돌봄 수혜 여부 및 돌봄제공자 유형	248
〈표 10-5〉 신체적 기능제한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248
〈표 10-6〉 장애인 1인 가구 현황	249
〈표 10-7〉 장애인 연령대별 신체적 기능제한 현황	250
〈표 10-8〉 신체적 기능제한을 지닌 장애인 대상 도움수혜 여부	251
〈표 10-9〉 주택 주변의 방범상태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 여부	254
〈표 10-10〉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259
〈표 10-11〉 1인 가구 관련 추가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량	260
〈표 10-12〉 활동보조 급여내용	260
〈표 10-1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현황(2014.12.31. 기준)	261
〈표 10-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현황	261
〈표 10-15〉 활동지원 급여유형별 이용현황	262
〈표 10-16〉 등급별 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262

〈표 10-17〉 활동지원인력 자격 요건	263
〈표 10-18〉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현황	263
〈표 10-1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현황	268
〈표 11-1〉 22개 부처 사회보장 내역사업의 1인 가구 지원 조사결과	275

그림 목차

[그림 2-1] 연도별 가구원수 규모	23
[그림 2-2] 시도별 1인가구 비율	24
[그림 2-3] 4종4색 1인 가구와 공간분포	29
[그림 2-4] 서울시 구별 1인 가구 인구비율	30
[그림 6-1] 가구원수별 취업자 비율	97
[그림 6-2] 가구원수별 종사상지위	98
[그림 6-3] 가구원수별 근로소득	99
[그림 6-4] 경상소득 기준 1인 취약가구 취업특성	102
[그림 6-5] 취약가구 가구원수별 가구주 취업특성	103
[그림 6-6] 200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유형별 구성	109
[그림 7-1] 공공실버주택 사업 현황도(2016년 기준)	174
[그림 7-2] 역세권 2030주택의 주요 특징	181
[그림 7-3] 세대융합 룸셰어링의 사업방식	182
[그림 7-4] 경기도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및 목표	190
[그림 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추진체계	211
[그림 8-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이용절차	215
[그림 8-3]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모형	216
[그림 8-4] 비용상환 및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절차 도식도	217
[그림 9-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프로세스	237
[그림 9-2] 정신보건-복지 연계 노인자살예방 체계	238
[그림 10-1] 화재로부터 주택의 불량상태(화재시 불안전성)	252
[그림 10-2] 주변환경에 대한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 만족	253
[그림 10-3]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	254

제 1 부

1인 취약가구 현황 및 위험분석

제1장 서론: 1인 취약가구 연구배경 및 개념 정의

제2장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운영 사례 검토

제3장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제4장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취약가구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 개발 및 분석결과

제 1 장

서론: 1인 취약가구 연구배경 및 개념 정의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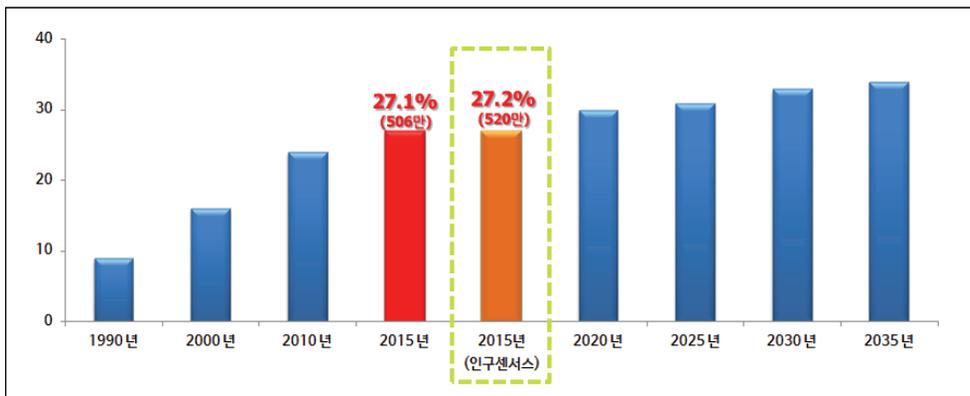
1

서론: 1인 취약가구 연구배경 및 개념 정의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전통적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1인 가구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발표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2년에 25%를 초과하여 처음으로 최빈가구가 되고, 2015년 기준 506만 가구로 전체 1,870만 가구 중 27.1%를 차지하며, 2020년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1인 가구 비율 증가) ('90) 9.0% → ('00) 15.5% → ('10) 23.9% → ('25) 31.3%
-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장래가구추계 결과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일반가구 1,911만 가구 중 27.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1인 가구 현황 및 추계(1990~2035년)

(단위: %, 만명)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6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 1인 가구는 2010년 23.9%(422만)에서 27.2%(520만)로 3.3%p(99만)증가하였고, 1990년(9.0%, 102만)에 비해, 지난 25년 동안 18.2%p(418만 가구) 증가함
 - 1990~2005년 최빈 가구는 4인 가구였지만 2010년 조사에서 2인 가구(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1인 가구(27.2%)가 2인 가구(26.1%)를 넘어 최빈 가구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18.3%, 70세 이상 17.5%, 20대 17%, 50대 16.9%, 40대 16.3% 순서로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고르게 나타났다
- 한편,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약 2,100만 세대 중 1인 세대는 34.5%(724만) 임
- 근래에 올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1인 가구 비중 확대의 현상은 우리사회 가족형태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임
- 이러한 현상은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개념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해체되고 있다는 것임
- 1인 가구의 증가는 이전까지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했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을 정책대상의 기본단위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
- 1인가구의 증가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며, 1인 가구 경제(solo economy)라는 정책주제가 다보스 포럼(2008년)에서도 다루어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 주요국가 1인 가구 비율(2015)
- ☞ 미국 28.0%, 영국 28.5%, 일본 32.7%, 노르웨이 37.9%(2014년 기준)

□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족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는 주거나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현행 대부분의 관련제도가 3-4인으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을 상정하여 설계된 만큼 1인 가구는 대부분 이러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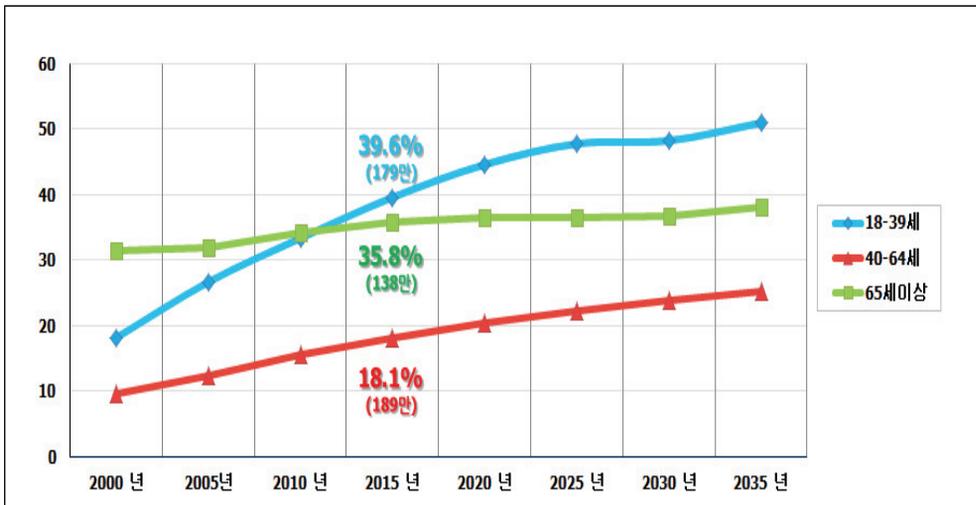
□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1인 가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1인 가구의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인 취약가구의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모든 세대에 걸쳐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노인세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층과 노인세대의 경우, 세대별 빈곤율과 유사한 형태로 1인 취약가구 규모가 쌍봉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세대별 1인 가구 규모 및 비중 증가 추이(2000~2035)

(단위: %, 만명)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재구성

8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 20~30대의 경우 학업 및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 연기·포기, 40~50대는 일자리 불안 등 경제적 위기, 기러기 가족 등 가족해체와 이혼, 60대 이상은 고령화와 더불어 배우자 사별과 자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1인 취약가구의 비중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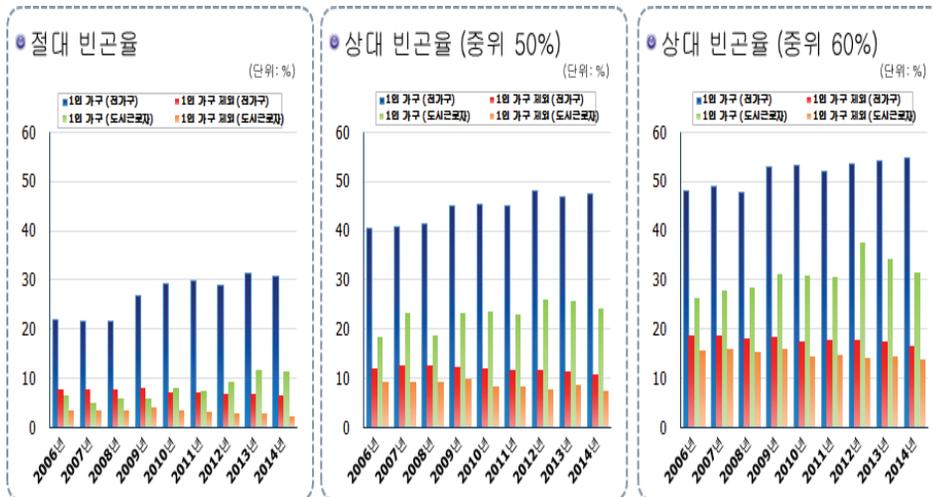
- 선행연구에서는 각 세대별 1인 취약가구를, “20~30대 ≡ 산업예비군 / 40~50대 ≡ 불안한 독신자 / 60대 이상 ≡ 남겨진 실버세대”라고 언급한 사례도 있음(변미리, 2008)

□ 경제적 자립과 자발적 선택 여부에 따라 1인 가구 내 양극화(1인 취약가구 vs. 골드족)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 주거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1인 가구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약 30%, 50% 내외임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빈곤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가운데 청년층과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빈곤통계연보

- 우리나라에 앞서 1인 가구 증가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대응사례를 보면,
 -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 1인 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포괄 대상 범위가 크고 급여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특별히 1인 가구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 없이도 정책사각지대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음
 - 이들 국가에서는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응
 - 한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1인 가구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공적연금, 생활보호, 고령자 맞춤 주택공급 제도 등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시행
 - 1인 가구의 정책사각지대 문제를 인식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와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고립 및 관계 단절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1인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특히, 계층과 세대 등에 따라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의 개념 정의를 통해 정책대상을 설정, 1인 취약가구 유형별로 정책영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각 부처 정책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영역별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소득계층(중위소득 60%) 및 세대(청년 - 중장년 - 노인) 및 장애와 성별을 고려한 정책집단 대상으로, 소득지원, 주거지원, 고용서비스, 건강행태, 정신건강, 돌봄 및 안전등 6가지 정책영역별로 기존의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포함하여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구성하여 제시함
 - 정책대상 및 영역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Matrix 작성

□ 일각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족해체를 심화하고 1인 가구 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인구집단으로 등장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해 법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외면이자, 현대 사회에서 불가결한 요소가 된 복지의 기본 이념과 본질에 대한 도전일 수 있음

- 마치 인간의 빈곤은 '자연법칙'이며,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는 '자유'를 갖는 노동자를 강조하던 과거 19세기 자유방임주의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법규범 체계의 준거 틀을 구성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개인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전문에서 밝히고, 제3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1인 가구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근래에 올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자발적 1인 가구는 우리 사회가 우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 그리고, 이러한 1인 취약가구는 공통적인 정책수요와 연령대별로 차별적인 정책수요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영역별 맞춤형 정책조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내 선행연구 및 언론 동향 검토
 - 1인 취약가구 관련 실증 분석 및 질적 사례연구 등 국내 선행연구 검토
 -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관련 언론 동향 검토
- 국내·외 1인 취약가구 관련 정책운영 사례 조사
 - 국내 각 부처 및 지자체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 운영사례 조사
 -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서비스, 주거복지 등 부처별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대상 및 지원사례 검토
 - 서울 등 1인 가구 관련 기초통계 생산 및 정책지원 방안 추진을 검토 중인 지자체 운영사례 검토
 -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외국 사례 현지 조사 및 벤치마킹
 -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정책 대응체계 관련 정책통계 구축 및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1인 취약가구 관련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 대응방안 등 자료수집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시 활용
 - * 북유럽 NOVA(Norwegian Social Research), NOSOSCO(Nordic Social Statistical Committee), 영국 JRF(Joseph Rowntree Foundation)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와 각종 복지실태조사(빈곤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 유형별 특성 및 위험 분석
 - 주민등록정보 기준 지역별 1인 가구 비중 변화 경향 및 집중 분포지역 분석
 - 행복e음 내 1인 취약가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이력 분석

12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 실태조사 기반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발생 유형 분류 및 특성 비교 분석
 - 1인 취약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및 지출부담, 생활실태 등 위험요인 심층 분석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1인 취약가구 위험 예측모형 개발 및 예측결과 제공과 환류 방안 마련
- 2015년 12월부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기반으로, 1인 취약가구 관련 추가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잠재적 1인 취약가구 위험 예측모형 개발 및 예측결과 지자체 제공
 - 장애, 소득상실, 실업 등 고용위험, 복지급여 수급, 주거위기, 건강위험 등 관련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1인 취약가구 위험 예측모형 개발
 - 잠재적 위험확률 정도에 따른 1인 취약가구 유형화 및 정책대상 집단 도출
-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대상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마련
- 1인 취약가구 유형 및 정책영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 1인 취약가구 정책대상을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 - 중장년 - 노인·장애인’으로 구성하여 각 대상별 위험요인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마련
 - 부처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사 및 기초분석을 기반으로 1인 취약가구의 맞춤형 정책지원 영역을 ‘소득지원, 고용서비스, 주거지원, 건강행태, 정신건강, 돌봄 및 안전’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함
 - 정책대상 및 정책영역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해당 영역별 정책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패키지 구성
-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지원

□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내용 구성

1 1인 취약가구 현황 및 위험분석

1장 서론: 1인 취약가구 연구배경 및 개념정의

2장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운영 사례 검토

3장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4장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취약가구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개발 및 분석결과

2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5장 소득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6장 고용서비스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7장 주거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8장 건강행태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9장 정신건강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10장 돌봄·안전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11장 결론: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2. 연구방법

- 국내 선행연구 및 언론 동향 검토
 - 1인 취약가구 관련 실증 분석 및 질적 사례연구 등 국내 선행연구 검토
 -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관련 언론 기획기사 등 동향 검토
- 국내·외 1인 취약가구 관련 정책운영 사례 조사
 - 국내 각 부처 및 지자체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 운영사례 조사
 -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외국 사례 현지 조사 및 벤치마킹
- 사회보장 빅데이터 및 각종 복지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1인 취약가구 유형별 특성 및 위험요인 심층 분석을 통한 발굴 통계모형 개발
 - 분석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및 차상위 빈곤실태조사, 노인 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사회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 분석대상
 - 1인 취약가구 개념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추출된 사회보장 빅데이터 및 실태조사 상 1인 취약가구 전수
 - 행복e음 내 구축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가구 중 1인 취약가구
 - 빈곤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주거복지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기반 대상 및 정책영역별 1인 취약가구
- 자문회의 개최
 - 사회보장 빅데이터 연계 구축 및 활용, 부처별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한 1인 취약가구 정책지원 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내용 및 보고자료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인구 및 가족구성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1인 취약가구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1인 취약가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와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 유형별 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1인 취약가구 관련 정보들을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취약가구 위험 예측결과를 제공함으로써 1인 취약가구 발굴 및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

제3절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

1. 1인 가구의 개념 및 특징

- 현행 법제상 1인 가구는 법적지위를 갖는 개념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결혼이나 이혼·재혼에 대한 인식,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 또는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단독 가구를 지칭함
- 1인 가구는 2005년 이후 관련 연구를 통해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전까지는 단독가구로 통용
 - 가구란 일반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회집단의 최소단위로서 친족과 비친족 가구로 구분할 수 있음
 - 단독가구는 가구구성원이 1인으로서 주거와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형태로, 이때 가구구성원은 주거와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전제함¹⁾
- 1인 가구의 개념은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구에서 배우자가 존재하여도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거나 미혼상태로 혼자 생활하는 개인을 포괄함
- 즉, 1인 가구는 법적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홀로 주거와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에 속한 집단은 이질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됨
- 변미리 외(2008, 2016)는 1인 가구의 삶의 형태를 기준으로 골드족,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로 1인 가구를 유형화 하였고,
 - 골드족: 3-40대 전문직 종사자로 싱글경제를 주도하는 계층
 - 산업예비군: 20대 청년 실업자 또는 취업준비생 집단
 - 불안한 독신자: 이혼 등 가족해체와 중장년 실업증가로 형성된 경제적 지위가 낮고, 직업이 불안정한 중년세대

1) 한편, 현행법상 '세대'는 가족보다 넓은 개념으로 주거를 함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점에서 가구와 법적 구분 개념이 다름. 동 세대의 개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단위이자 주택법상 국민주택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이면서 소득세법 등 세제상 과세의 기준에 세대의 개념이 도입된 상태임 (종합부동산세법-부동산가액산정, 양도소득세법-양도차액 1세대 1주택)

- 실버세대: 대체로 빈곤과 주거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독거노인 집단
- 정순희와 임은정(2014)은 1인가구의 형성요인을 기준으로 자발적 요인과 비자발적 요인으로 구분함
 - 자발적 1인가구: 30대 이상으로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한 일종의 골드세대
 - 비자발적 1인가구: 경제적 이유나 이혼, 별거 등 가족의 해체, 배우자 사망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
 -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사회정책의 대상이 됨
- 김도희(2012), 정순희와 임은정(2014)은 고용불안과 빈곤이 주요 요인이며, 개인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 1인 취약가구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
- 특히 여성과 노인이 비자발적 요인으로 1인 가구가 되어 경제적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김도희, 2012)
- 정경희 외(2012)는 연령대별 1인 가구 유형화를 통해 1인 가구 형성 요인과 수요가 차별적임을 보고하고 있음
 - 2-30대 청년층: 초혼상승에 따른 의도된 선택의 결과로서 생계비와 주거 문제가 주요 관심
 - 4-50대 중년층: 대체로 이혼자들로서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으며, 주요 관심은 건강과 노후준비이고 소득수준 낮을수록 재혼하지 못하고 1인가구로 남을 확률이 큼
 - 60세 이상 노령층: 배우자 사별이 원인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과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특성을 보임
-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거주 불안정성과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율 및 우울도가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이민홍 외 2015)
 - 통계청(2011)에 따르면 1인가구는 일상적지원,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에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취약함

- 요약하면 1인 가구는 낮은 사회적 참여율, 높은 질병율 및 우울도, 사회적 지원 부족, 주거환경 열악 등 사회적 위험이 높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이민홍 외, 2015)

<표 1-1> 기존연구에서의 1인 가구 개념

저자	연도	1인가구 용어	정의
배화옥	199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여운경·양세정	2001	단독가구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
박은아	2004	단독가구	노인독신가구-만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가구
통계청	2005	1인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차경옥	2006	1인가구	성인 1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김혜영	2007	1인가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변미리 외	2008	1인가구	혼자사는 사람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
한지희 외	2011	1인가구	통계청(2005)의 표준정의
정정희 외	2012	1인가구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1인 가구 거주자)
이성은 외	2012	1인가구	비혼 1인가구-현재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배건이·정극원	2013	1인가구	실제 주소 및 거소를 갖는 단독생활자, 현재 법적/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김혜영	2014	1인가구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혼자 생활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병호	2014	1인가구	법적 배우자가 없이 홀로 사는 독신가구

자료: 이민홍 외(2015) p. 41의 <표 2-2>에 수정보완.

2.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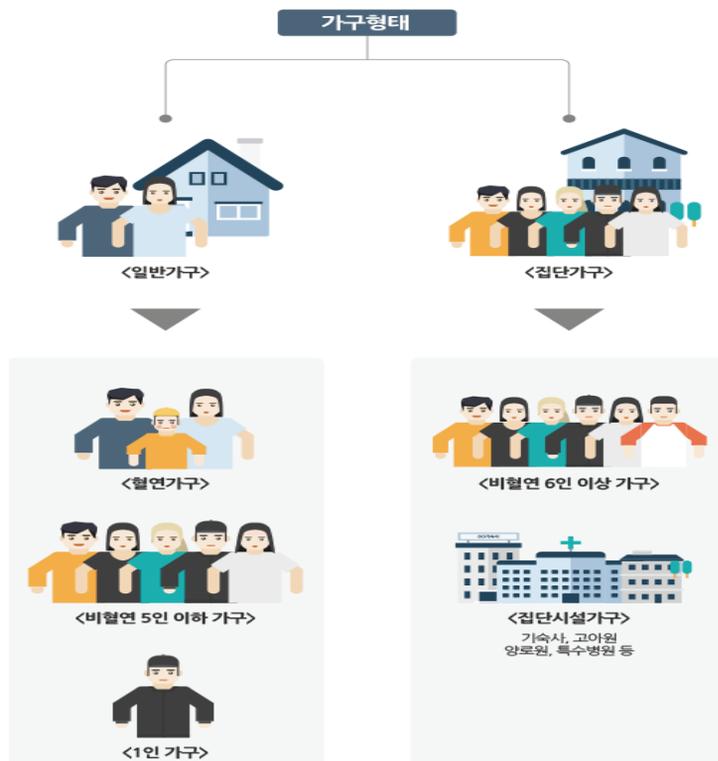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1인 취약가구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정책영역별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1인 가구의 정의는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취약가구는 우리나라의 정책대상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 확대를 고려하여 OECD 및 EU의 상대빈곤 기준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 1인 가구 ≡ 일반가구 가운데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식사, 취침 등 일상적인 생활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 (통계표준용어)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북유럽 국가의 통계를 공동 관리하는 기관인 NOSOSCO를 방문하여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의 및 통계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일반적으로 1인 가구 개념 정의는 유사하나, 정책적으로 가구원수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가구 구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ingle Person with Child'와 'Single Person without Child'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전자에 해당하는 가구 유형의 위험수준을 단순한 1인 가구보다 크게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노르웨이 통계청의 경우, 단순히 혼자 살고 있는 가구(living alone) 개념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와 관련하여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상 세대 구성 및 다양한 복지사업의 가구 구성 개념과 상이한 새로운 가구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복지사업의 가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함

- 또한, 한부모가구, 노숙인의 경우 개별적인 영역으로 별도의 정책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정책지원 방안에서는 제외함

□ 취약가구 ⇔ 소득-고용-주거 등 생계 및 기초적·필수적 욕구와 관련되는 정책

영역의 경우, OECD 및 EU의 상대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를 저소득 취약가구로 정의

- 이는 OECD 상대빈곤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위소득 50% 및 60%에 해당하는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1인 취약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소득수준을 고려한 정책대상으로 설정함

○ 다만, 1인 가구에 있어 단지 경제적인 요인만이 위험요소인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태, 정신건강, 돌봄 및 안전 영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해당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를 취약가구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함

제 2 장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운영 사례 검토

제1절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 동향

제2절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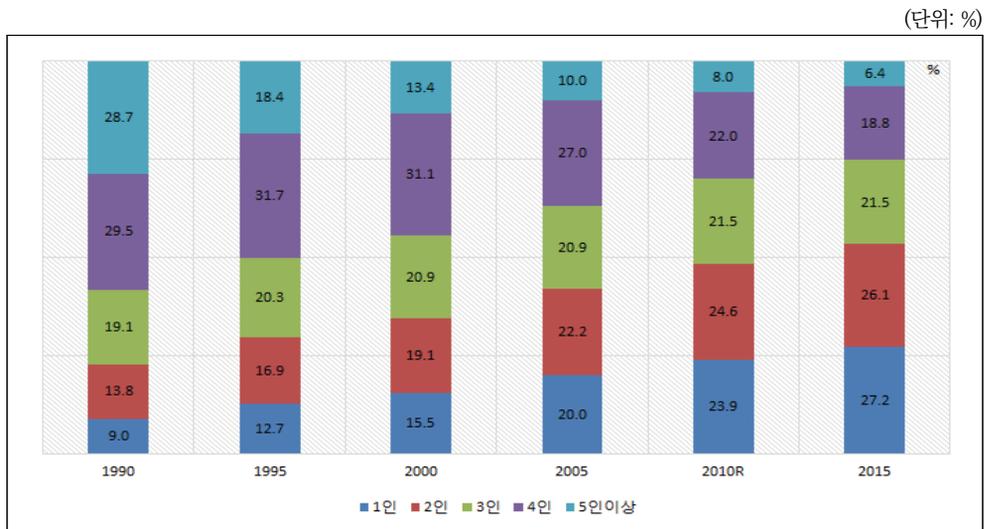
2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 정책운영 사례 검토

제1절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 동향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은 2인가구(24.6%)가, 2015년에는 1인 가구(27.2%)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함
-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강원이 31.2%로 가장 높고, 인천이 23.3%로 가장 낮음
- 1인 가구는 성별로 여자가 50.2%이며, 남성은 30대(23.5%), 여성은 70세 이상(27.6%)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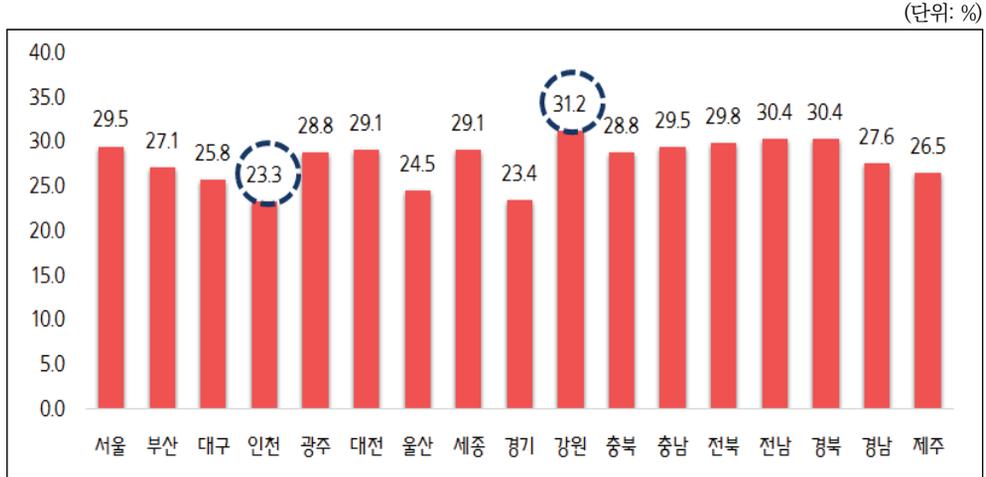
[그림 2-1] 연도별 가구원수 규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9.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4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그림 2-2] 시도별 1인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9.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표 2-1> 성별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단위: 천가구, %)

구분	남자 가구주	여자 가구주	전체
20세미만	28 (1.1)	30 (1.1)	58 (1.1)
20~29세	485 (18.7)	402 (15.4)	887 (17.0)
30~39세	610 (23.5)	343 (13.1)	953 (18.3)
40~49세	542 (20.9)	308 (11.8)	850 (16.3)
50~59세	478 (18.4)	400 (15.3)	878 (16.9)
60~69세	262 (10.1)	407 (15.6)	668 (12.8)
70세이상	189 (7.3)	721 (27.6)	910 (17.5)
전체	2,593 (100.0)	2,610 (100.0)	5,203 (10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9.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주민등록 1인세대²⁾는 34.8%(7,388,906세대)로 가장 비중이 높은 세대이며, 1인 세대 중에서 남자는 51.9%(3,835,131세대), 여자는 48.1%(3,553,775세대)임

○ 1인 세대의 연령별 분포는 남자의 경우 50대가 22.0%로 가장 많고, 40대(21.9%), 30대(21.3%)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50대 17.2%로 가장 많고 70대(16.9%), 40대(12.7%)순으로 나타남

2) 세대와 가구의 개념은 「1장 3절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 참조

〈표 2-2〉 성별 1인가구 세대주의 연령

(단위: 세대수, %)

구분	남자 세대주	여자 세대주	전체
만 17세 미만	4,728 (0.1)	4,190 (0.1)	8,918 (0.1)
만 17~19세	14,404 (0.4)	15,109 (0.4)	29,513 (0.4)
만 20~29세	492,088 (12.8)	405,272 (11.4)	897,360 (12.1)
만 30~39세	816,141 (21.3)	448,971 (12.6)	1,265,112 (17.1)
만 40~49세	838,206 (21.9)	452,375 (12.7)	1,290,581 (17.5)
만 50~59세	845,513 (22.0)	610,518 (17.2)	1,456,031 (19.7)
만 60~64세	298,095 (7.8)	323,485 (9.1)	621,580 (8.4)
만 65~69세	193,459 (5.0)	287,531 (8.1)	480,990 (6.5)
만 70~79세	237,423 (6.2)	601,380 (16.9)	838,803 (11.4)
만 80~89세	80,041 (2.1)	348,695 (9.8)	428,736 (5.8)
만 90~99세	12,028 (0.3)	46,816 (1.3)	58,844 (0.8)
만 100세 이상	3,005 (0.1)	9,433 (0.3)	12,438 (0.2)
전체	3,835,131 (100.0)	3,553,775 (100.0)	7,388,906 (100.0)

자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10.7.) 2016년 9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명

-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2015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11만 가구로, 2014년 대비 17만 1천 가구 증가하였고,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전년 보다 0.5%p 상승함
 - 성별 비율은 여자가 56.5%, 남자가 43.5%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별 비율이 기혼이 59.2%, 미혼이 40.8%임
 -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경북(32.9%)이 가장 많았고, 전남(32.8%), 강원(32.1%)순으로 나타났고, 1인 가구 고용률은 울산(64.6%), 제주(62.3%), 대전(59.7%)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30대가 64만 가구(22.5%)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61만 가구(21.5%), 15~29세 55만 5천 가구(19.5%)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은 울산, 제주, 대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중 제주가 작년대비 4.2%p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음

〈표 2-3〉 2014, 2015년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

(단위: %)

시도	2014년	2015년	시도	2014년	2015년
서울	54.3	55.8	충북	56.7	58.0
부산	45.2	45.9	충남	54.7	56.0
대구	48.6	49.3	전북	48.9	49.5
인천	56.7	57.4	전남	57.3	57.2
광주	56.1	54.2	경북	55.9	55.1
대전	61.0	59.7	경남	56.5	56.1
울산	65.1	64.6	제주	58.1	62.3
경기	60.4	59.2			
강원	51.0	53.5	전국	55.4	55.6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6.29.)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청년층의 구직난과 고학력화, 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초혼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청년층이 증가하며, 이혼율의 상승과 직장 및 자녀교육등으로 중장년층이 증가,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부모 부양의 의무감이 점차 약화되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노년층의 독거 가구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것임(박지혜 외, 2015)

□ 우리나라 1인가구 전체 민간 소비지출 규모는 2006년 16조원(3.3%)에서 2015년 86조원(13.6%), 2030년 194조(19.6%)에 달해 4인가구 소비지출규모(178조, 18.0%)를 넘어설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한정민, 이용호, 2013)

○ 통계청 2013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 생필품과 개인소비에 집중된 항목에서 3인 가구보다 높은 소비 활동을 보임(박지혜 외, 2015)

- 1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 항목 지출비중이 3인 가구보다 10%p, 보건항목지출비중은 1.4배 높게 나타났음
- 60대 이상의 경우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 높은 지출 비중을 보였음

- 트렌드 코리아 2017에 따르면 침체된 소비시장에 자발적 고립을 통해 무엇이든 '혼자하기'를 선호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잇달아 큰 인기를 얻을것이라 전망했음(김난도 외, 2016)
- 최근 인터넷상에는 1인 가구의 관심이 증가하듯 '1인 경제', '얼로너(aloner)', '싱글라이제이션(Singlesion)', '솔로이코노미(Solo Economy)', '1코노미(1인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나홀로족', '포미족(for me)', '혼밥', '혼술', '혼행(혼자 여행가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나홀로 호팩(혼자 호텔 패키지 즐기기)' 등 신조어가 생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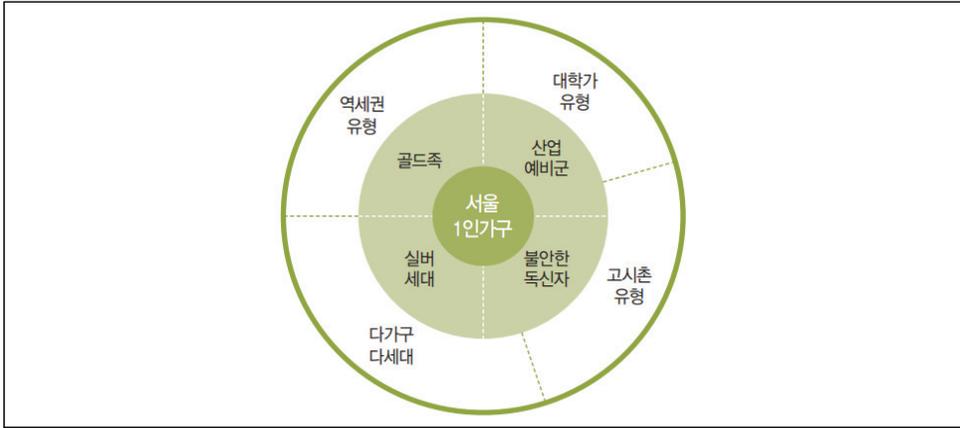
- 트렌드에 민감한 식품,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1인 가구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음
- 편의점 도시락 판매 및 1인 가구의 식료품과 생필품의 구입처가 되고 있는 편의점 2016년 상반기 매출이 2015년보다 21.8%가 증가했으며, 2010년 연 매출이 7조 8085억원에서 2016년에는 2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또한 가정 간편 조리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의 판매액 증가, 가구업체도 1인용 가구, 카드사 역시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음(파이낸셜 뉴스, 2016.11.13, 시사저널, 2016.11.17)
- 커피전문점도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즐기는 개인과 공부하는 개인들을 위한 1인 좌석 및 도시관 형태의 분리형 좌석 인테리어를 통해 라이브러리 콘셉트 매장을 선보이고 있음(세계일보, 2016.11.18)
- 1인 가구는 제품을 직접 소유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빌려쓰는 렌탈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의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시사저널, 2016.11.17), 미니멀리즘을 지향하기 때문에 TV 대신 노트북,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뉴스를 시청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는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박지혜 외, 2015)
 - 1인 가구의 경우, 질적 측면에서도 자기 만족을 위한 가치소비에 투자를 하는 성향에 있으며, 취미생활과 자기계발, 문화생활로 외로움을 충족시키고 있음. 최근 언론에서도 혼자 사는 남녀 연예인의 삶을 관찰하는 프로그램 및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가 성황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영화관과 공연문화에도 1인 관객을 위한 좌석 마련 및 할인 서비스 등의 마케팅이 증가 하고 있으며, 홀로 여행을 떠나는 혼여족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개별 여행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 변미리(2008, 2016)는 1인 가구 증가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이 원인인 가족해체 등에 따른 비자발적 독신층의 증가,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를 주장했으며 1인가구를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함
 - 골드족: 3-40대 전문직 종사자로 싱글경제를 주도하는 계층
 - 산업예비군: 20대 청년 실업자 또는 취업준비생 집단
 - 불안한 독신자: 이혼 등 가족해체와 증장년 실업증가로 형성된 경제적 지위가 낮고, 직업이 불안정한 중년세대
 - 실버세대: 대체로 빈곤과 주거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독거노인 집단

- ‘골드족’ 이외에 3종류의 유형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과 연관이 있으며, 이들을 위해 ‘산업예비군’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제공, ‘불안한 독신자’에게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실버세대’는 사회적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그림 2-3] 4종4색 1인 가구와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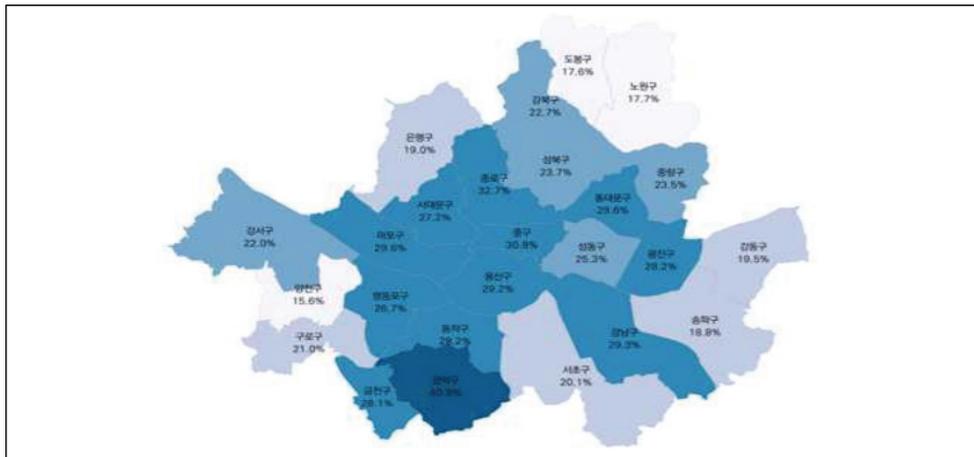
자료: 변미리(2016. 3) 서울의 4종4색 1인가구, 대세로 자리잡다. 서울경제 2016년 3월 제132호, p.8

- 서울시 20~80세 1인 가구 여성 1,81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삶 관련 조사수행 결과는 세대별로 다음과 같음(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6)
 - 20-30세 여성의 74.2%는 주거비 부담을 느꼈으며, 사생활을 우려하여 공동체 주거로 인한 고립감 해소엔 부정적(50.7%)으로 나타난 반면 공동체주택 거주가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남. 안전상태에서는 44.6%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때문으로 나타남
 - 40-50세 여성의 29.5%는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혼자 살면서 가장 곤란한 점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고(55.5%), 외롭고(40.9%), 경제적 불안감(37.2%)으로 조사됨
 - 60-80세 여성은 연령으로 인한 차별 무시 경험율이 21.2%, 1인 가구로 인한 차별 무시 경험율이 20.5%로 나타났으며, 희망 여가활동 1순위는 나들이나 여행(39.2%)비율이 가장 많았음
 - 정책요구로는 청년층에겐 주택안정, 여성안전 순으로, 중장년층은 주거, 경제분야 순으로, 노년층은 건강관리 지원, 주택 개보수 순으로 나타남

□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서울시 1인 가구는 2005년 21.5%, 2015년 2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주로 청년층, 종로구와 중구는 고령자 중심의 특성을 보임(서울시 보도자료, 2016. 6. 22)

○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사람이 있는 비율(61.9% vs. 82.6%),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는 비율(49.9% vs. 62.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비율(62.9% vs. 75.1%) 모두 낮게 나타나, 도움을 받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서울시 구별 1인 가구 인구비율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2016.6.22) 2016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서울시민 생활상은? p.9

□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양극화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1인 가구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각각 약 30%, 50% 내외로나타났으며,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빈곤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가운데 청년층과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천현숙(2016)이 발표한 1인 가구의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48.6㎡이며,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의 주거사용면적은 30.4㎡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집을 소유한 1인 가구의 경우 71.1㎡이나, 월세, 전세 등 집을 빌린 경우 38.3㎡으로 주거사용면적이 특히 작음
 - 영국의 1인 가구의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72.1㎡, 미국은 141.3㎡으로 한국은 매우 작은 면적을 소비하고 있음
- 주택소유 비중도 1인 가구의 경우 52.0%로, 2인 이상 가구 71.8%에 비해 매우 작은편이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은 23.8%로 가장 낮아,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김광석, 2015).
- 서울시 월세가구 74.7%가 1인 가구이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순수 월세로 환산했을 때 청년층의 월세 부담은 비청년에 비해 최고 2.7배 큰 것으로 나타났음(머니투데이방송, 2016.10.11)
-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 가구는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가족해체나 사별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으며, 다른 연령대의 비해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이 축소하였음. 이는 경기침체 지속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미래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불확실하여 비록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경직적으로 지출하기때문임(김광석, 2015)
- 서울시 고독사 실태분석에 따르면 고독사란 홀로 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홀로 죽고 방치된 사례로 정의될 수 있으며, 2010년 1인 가구수가 가장 많은 관악구(84,423가구)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였음(2013년 고독사 확실히 19건(1위), 고독사 의심 129건(5위))(송인주, 2016)
- 정책 제안으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령이 필요하며, 사전관리 및 예방으로 지역사회중심(주거지 중심, local 중심, 직장 중심)의 접근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음

제2절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 운영사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³⁾

○ 서울시는 증가하는 서울특별시 거주 1인 가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인 가구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24일 전국 최초 1인 가구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 1인 가구: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
- 1인 가구 복지정책: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주거복지 사업,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의 근거가 됨

○ 1인 가구 관련 조례 제정 이외에도 1인 가구 관점을 반영한 타 조례 제정 및 개정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시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포함(2016.1.7. 개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제시(2015.10.8. 개정)

□ 정책영역별 지원 사례

< 주거 >

○ 서울시 매입형 임대주택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문은 부록 참고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2년부터 시에서 매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량은 총 8,827호(2015. 12)에 달함
- 2016년 다가구·다세대 1,500호를 매입하여, 200호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소득 50%이하인 1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임(전세임대 300호 별도공급). 100호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라 하여 비주택시설에 장기체류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가족문제 등 거주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시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상주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것임
-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희망하우징'도 150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 공간이 포함된 셰어하우스 형태로 공급할 것임
 -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과 건설한 원룸을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약 5~16만원 사이에서 책정됨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 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68,857가구를 지원하였고, 1인 가구 월지급액은 50,000원(2016.4.)임
-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에게 퇴소 후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2인 가구에 월 12만원을 지급할 예정임(1년간, 생애 1회 지원)

○ 한지붕 세대공감(홈세어링)

-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연결하여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원)생은 어르신에게 소정

의 임대료와 생활서비스(봉사활동)를 제공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임

- 서울시는 어르신에게 1실 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 등)의 공사를 시행하며(SH공사), 대학(원)생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만원 내외 거주공간을 제공함
- 사회혁신담당관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한지붕 세대공감'과 주택정책과에서 2014년 11월부터 시행한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을 2016년부터 통합하여 11개구에서 시행중임

○ 여성안심주택

- 서울시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하여 구로구 천왕지구 내 여성안심주택을 공급(96호)
- 출입구 바로 옆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고 수도, 전기, 가스 검침은 주택 외부에서 처리되도록 설계되며 출입문도 주 출입구와 카드식 개폐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외부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게 설계됨

< 건강행태 >

○ 저소득 독거어르신 빨래방 운영

- 저소득 노인 가구 및 거동 불편자에게 이불 등 대형 빨래감 수거 세탁 후 배달하는 빨래방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위생상태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

○ 독거어르신 영양죽 배달사업

- 만성질환 및 치아가 부실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죽 배달 및 모니터링 실시하며, 방문이후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기록지 작성 및 사례회의를 진행

○ 여성 1인 가구 건강관리 지원

- 시립보라매병원에 여성 전문 진료센터 운영
-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내 여성 우울증 검진 및 상담 및 보건소에서 싱글여성 특화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확대

〈 정신건강 〉

- 독거어르신 사회관계 형성 지원사업
 - 독거어르신을 집 밖으로 유도하여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두레활동 등 집단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 제고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
 - 전담 관리자 파견하여 독거어르신 유형별(저소득, 사별, 우울/자살고위험군, 관계위축) 맞춤형 사업 추진
 - 경제 안정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멘토멘티 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 등
- 독거어르신 콩나물 기르기 사업
 - 자살취약지역 영구임대 거주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콩나물 기르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 생에 대한 의욕고취 및 자살예방
- 독거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 우울감 지수가 높은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회문제 예방관리
 - 우울증 검사 후 관리가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1:1연계를 통해 사회안정 전망 구축
-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시니어 희망공동체 MOU
 - 자살시도자와 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살의 위험성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25개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지원서비스 등 지속사업 진행
 -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구 1인 가구 연합)와 MOU를 통해 1인 가구의 무연사(고독사)방지, 삶의 질 향상 및 연대감 증진을 위한 법률자문 사업 진행

〈 여가 & 문화 〉

- 1인 가구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
 -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동네 여건에 적합한 공간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공모 요건 변경 추진

- 공동식당, 택배 받아주기, 대화커뮤니티 등 1인 가구 특성 사업 운영
- 2016년 근린생태계 조성사업 내용 중 거점공간 중심 거버넌스 특화사업과 연계추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를 통한 사회연결망 강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나 구청을 통한 공모사업 지원
 - 예) 강북구청의 “평범한 청년들의 마을살이 아지트와 마을 잇기”: 청년동아리모임지원, 더불어소셜공간(마을생활 비즈니스 모델 공부), 공동체모임
-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
 - 1인 여성 가구끼리 식사를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소셜다이닝
 - 인근 여성 1인 가구 텃밭 가꾸기 사업, 여성 독거 어르신 동아리 지원 사업 등

〈돌봄 & 안전〉

- 독거어르신 통합돌봄지원센터
 - 보건소·노인종합복지관·재가노인센터 등 지역사회 노인돌봄자원과 정보총괄 관리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내 구별 1개소 씩 연차별 확대설치
- 홀몸가구 안부확인 사업
 - 2003년부터 14년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우유배달사업을 지속해온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 함께 사업시행
 - 주7회 우유배달을 통한 안부확인으로 신체적·심리적 안정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의 위기상황발생에 대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 독거어르신 공동생활공간 조성

- 성북구 관내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대상인 무허가건물을 어르신쉼터와 독거어르신 공동생활 공간으로 신축/조성하여 어르신 돌봄 강화 및 고독사 방지

○ 한파대비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가구 안전점검

- '15/16년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한파대비 가정방문 및 난방용품 지원
- 전반적 생활상태 점검 및 안전 확인
- 가스 전기시설 점검 및 안전 사용요령, 한파대비 행동요령 안내

○ 안심귀가 스카우트

- 2014년 4월부터 밤 10시~새벽 1시 여성들의 안전 귀가 지원
-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도착 30분전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 상황실로 전화하여 신청

○ 여성안심택배

- 택배를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심택배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지도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도를 고려, 여성 밀집 거주지역이나 범죄 취약지역인 원룸촌 지역에 설치, 환경안전망 구축
- 2015년 8월 기준 120곳 운영
- 24시간 365일 운영, 이용료 무료(보관시간 48시간 이후 하루 1천원 과금)

제 3 장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제1절 주민등록 및 행복e음 기반 지역별 1인 세대 및 1인 취약가구
현황 분석

제2절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3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제1절 주민등록 및 행복e음 기반 지역별 1인 세대 및 1인 취약가구 현황 분석

□ 분석목적

- 주민등록 기준 전국 읍면동별 1인 세대 비율 분석 및 집중 분포지역 추출

□ 분석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복e음 복지사업별 수급분포

□ 분석내용

- 전국 읍면동별 세대 정보 기준 1인 세대수 및 연령별 정보 추출
- 전국 읍면동별 1인 세대 비율 분석
 - 2016년 4월 말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전체 2,100만 세대 중 1인 세대는 731만 세대로 약 34.64%를 차지함
 - 그러나, 주민등록 기준 1인 세대는 1인 취약가구 개념과 상이하므로 지역별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복지사업별 연령 집단별 1인 수급가구 분포를 동시에 분석함
- 전국 읍면동별 복지사업별 1인 수급가구 분포 분석 (시설수급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118만 5천명 중 1인 가구는 58만 5천명으로 약 49.37%를, 의료급여는 약 135만명 수급자 중 1인 가구는 61만 5천명으로 약 45.55%임
 - 주거급여는 수급자 134만 9천명 중 1인 가구가 60만 5천명으로 약 44.88%를 차지하며, 차상위 지원대상 전체 수급자 58만 9천명 중 1인 가구가 22만 5천명으로 약 38.23%를 차지함

- 전국 1인 세대 비율 및 1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분포

전체세대	1인세대	%	생계급여									
			전체	1인가구	%	연령(%)						
21,104,857	7,310,001	34.64	1,185,202	585,133	49.37	2.08	2.55	3.39	10.62	32.31	22.73	26.32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 전국 1인 세대 비율 및 1인 의료급여 수급가구 분포

전체세대	1인세대	%	의료급여									
			전체	1인가구	%	연령(%)						
21,104,857	7,310,001	34.64	1,349,643	614,756	45.55	1.99	2.68	3.36	10.61	32.71	22.90	25.75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 전국 1인 세대 비율 및 1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분포

전체세대	1인세대	%	주거급여									
			전체	1인가구	%	연령(%)						
21,104,857	7,310,001	34.64	1,348,740	605,377	44.88	1.91	2.50	3.31	10.55	32.71	23.09	25.93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 전국 1인 세대 비율 및 1인차상위지원 대상 분포

전체세대	1인세대	%	차상위지원									
			전체	1인가구	%	연령(%)						
21,104,857	7,310,001	34.64	588,640	225,022	38.23	0.69	1.29	3.55	6.23	16.71	21.71	49.82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 전국 1인 세대 비율 상위 30위 읍면동 주민등록 기준 1인 세대 상위 읍면동별 1인 수급가구(취약가구) 비중 및 연령별 구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1인 세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									
				1인 가구 %	연령(%)					1인 가구 %	연령(%)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경기	파주시	월롱면	8,276	84.53	79	52.32	1.27	2.53	5.06	31.65	32.91	25.32	81	48.21	1.23	2.47	4.94	33.33	32.10	24.69			
전남	고흥군	도양읍소북출장소	429	80.49	288	78.69	0.00	0.00	1.39	14.24	26.04	58.33	319	75.41	0.00	0.00	1.25	12.85	29.15	56.74			
서울	중구	올지로동	977	78.10	71	94.67	0.00	1.41	8.45	33.80	26.76	29.58	77	95.06	0.00	1.30	7.79	35.06	27.27	28.57			
전남	산안군	육산면가거드출장	272	77.94	11	68.75	0.00	0.00	18.18	9.09	27.27	36.36	12	70.59	0.00	0.00	8.33	16.67	33.33	33.33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4,267	77.57	502	94.72	0.20	0.00	5.98	43.23	32.07	15.94	520	95.41	0.19	0.00	2.50	5.96	44.23	15.38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266	77.40	183	75.31	1.09	5.46	6.01	12.02	37.16	21.31	16.94	194	71.59	1.03	7.73	11.86	35.57	22.16	15.88		
서울	용산구	남영동	4,107	74.48	837	90.29	0.00	0.48	2.39	13.86	47.43	23.78	12.07	888	88.53	0.00	2.78	14.48	48.22	22.83	11.25		
서울	광진구	파왕동	10,560	73.12	165	65.48	1.21	4.85	2.42	13.94	30.91	26.06	20.61	168	63.88	1.19	4.76	2.38	14.29	30.95	26.19	20.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제2동	1,811	71.30	20	34.48	0.00	5.00	5.00	35.00	10.00	40.00	23	35.38	0.00	4.35	4.35	34.78	13.04	39.1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888	71.27	904	90.49	0.22	0.66	3.32	13.83	46.24	26.00	9.73	831	88.43	0.21	0.64	3.33	13.86	46.29	25.99	9.67	
경북	구미시	전미동	9,210	71.15	85	31.84	2.35	9.41	12.94	11.76	37.65	12.94	12.94	89	29.08	2.25	10.11	12.36	35.96	14.61	12.36	7.34	
서울	관악구	대학동	10,385	70.83	251	63.38	0.40	9.96	8.76	15.94	43.03	14.34	7.57	259	61.23	0.39	10.04	8.49	15.44	44.02	14.29	7.66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8,028	70.26	439	90.70	74.26	0.91	1.14	1.59	10.02	4.56	7.52	444	87.92	73.20	1.13	1.58	10.81	4.50	7.66	26.32	
인천	옹진군	연평면	927	68.49	18	52.94	5.56	0.00	5.56	0.00	50.00	11.11	27.78	19	50.00	5.26	0.00	5.26	5.26	47.37	10.53	26.32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10,976	68.06	295	57.39	1.02	4.41	7.80	15.59	35.93	20.00	15.25	301	54.33	1.00	4.98	7.64	16.28	35.55	19.27	15.28	
경북	구미시	원평1동	2,222	68.98	191	76.71	0.52	1.57	2.62	17.28	48.17	17.80	12.04	205	73.74	0.49	1.46	2.44	18.54	46.34	19.51	11.22	
전남	영광군	낙평면	196	68.77	14	53.85	7.14	0.00	0.00	0.00	28.57	14.29	50.00	14	43.75	7.14	0.00	0.00	28.57	14.29	50.00	10.21	
서울	중구	회현동	2,319	68.71	396	91.24	0.00	0.00	1.77	8.59	51.01	27.78	10.86	431	92.09	0.00	0.00	1.62	9.05	52.67	26.45	10.21	
강원	화천군	상치면	2,065	68.29	66	55.93	4.55	1.52	3.03	12.12	24.24	16.67	37.88	71	55.04	4.23	1.41	2.82	11.27	25.35	18.31	36.62	
광주	동구	송정동	2,019	66.26	166	66.14	0.00	0.60	3.01	13.86	43.37	27.11	12.05	179	60.47	0.00	1.12	2.79	12.85	45.81	26.26	11.17	

44 1인 취약가구 위한 보조금 확대 방안 연구

시/도	시/군/구	역삼동	1인 세대	%	66.07	15,077	68.07	151	50.67	1.32	3.31	4.64	12.58	37.75	27.15	13.25	159	50.32	1.26	5.03	4.40	11.95	37.11	27.04	13.21
광주	동구	서남동	1,505	67.95	124	55.36	0.00	9.68	2.42	13.71	25.00	23.39	25.81	143	52.57	0.00	9.79	2.10	13.99	28.67	21.68	23.78	21.68	23.78	
서울	금천구	가산동	7,942	66.91	293	71.29	1.71	1.71	12.97	37.88	25.94	18.09	305	70.93	1.64	2.30	1.97	12.79	38.69	25.25	17.38	37.84	16.22	17.38	
부산	중구	남포동	505	66.27	30	75.00	0.00	3.33	40.00	40.00	13.33	37	68.52	0.00	0.00	2.70	4.93	10.31	46.19	17.49	14.35	37.84	16.22	14.35	
경기	오산시	남부동	9,069	68.17	211	68.06	1.90	4.27	4.74	10.43	45.50	18.01	15.17	223	63.71	1.79	4.93	10.31	46.19	17.49	14.35	37.84	16.22	14.35	
경기	연천군	중면	86	66.15	3	30.00	0.00	0.00	0.00	33.33	0.00	66.67	3	30.00	0.00	0.00	0.00	0.00	0.00	33.33	0.00	66.67	0.00	66.67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6,777	65.42	118	57.00	0.85	2.54	3.39	5.08	27.97	30.51	29.66	123	53.02	0.81	3.25	5.69	29.27	28.46	28.46	29.27	28.46	28.46	
대전	동구	중앙동	2,576	65.27	478	72.42	0.63	0.84	1.26	7.32	39.96	16.32	497	71.72	0.60	1.21	1.21	7.24	40.64	33.40	15.69	33.40	15.69	15.69	
부산	북산진구	부전제1동	5,283	64.71	518	65.82	0.39	2.12	1.16	9.65	36.49	28.76	21.43	546	62.05	0.37	2.20	1.28	9.71	37.18	28.57	20.70	28.57	20.70	
서울	관악구	정자동	10,526	64.54	236	61.14	3.81	2.54	3.81	9.32	30.08	29.66	20.76	246	88.16	3.25	3.66	4.47	9.76	30.49	28.46	19.92	28.46	19.92	

○ 전국 1인 세대 비율 상위 30위 읍면동 1인 세대 상위 읍면동별 1인 가구(취약가구) 비중 및 연령별 구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1인 세대	%	주거급여										차상위지원										
					1인 가구					연령(%)					%	1인 가구					연령(%)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0-17	18-29	30-39		40-49	50-64	65-74	75+						
경기	파주시	월롱면	8,276	84.53	82	46.33	1.22	2.44	4.88	32.93	32.93	24.39	38	42.70	5.26	2.63	5.26	10.53	21.05	21.05	34.21	34.21			
전남	고흥군	도양읍소북출장소	429	80.49	291	80.17	0.00	0.00	1.37	14.09	26.46	58.08	5	31.25	0.00	0.00	0.00	20.00	60.00	20.00	20.00	20.00	20.00		
서울	중구	용치로동	977	78.10	77	95.06	0.00	0.00	1.30	7.79	35.06	27.27	28.57	21	77.78	0.00	4.76	0.00	14.29	9.52	23.81	47.62	47.62		
전남	신안군	확신면가도출장	272	77.94	12	70.59	0.00	0.00	8.33	16.67	8.33	33.33	6	85.71	0.00	0.00	0.00	33.33	0.00	66.67	66.67	66.67	66.67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4,267	77.57	522	94.91	0.19	0.00	6.13	44.25	31.61	15.33	59	70.24	0.00	0.00	1.69	13.56	22.03	22.03	40.68	40.68	40.68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266	77.40	191	72.35	0.52	6.81	12.04	36.13	22.51	16.23	48	51.61	2.08	8.33	14.58	16.67	18.75	22.92	22.92	22.92	22.92		
서울	용산구	남영동	4,107	74.48	901	88.94	0.00	0.44	2.55	14.65	48.61	22.53	61	67.03	0.00	1.64	4.92	16.39	24.59	36.07	16.39	36.07	16.39		
서울	광진구	회왕동	10,560	73.12	178	57.98	1.12	5.06	2.81	14.04	33.15	24.72	19.10	41	34.17	0.00	9.76	2.44	9.76	26.83	17.07	34.15	34.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제2동	1,811	71.30	23	36.51	0.00	4.35	4.35	34.78	13.04	39.13	14	50.00	0.00	0.00	7.14	7.14	14.29	35.71	35.71	35.71	35.71		

제3장 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분석 4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888	71.27	927	89.65	0.22	0.65	3.45	13.92	46.39	25.78	9.60	80	56.74	0.00	6.25	11.25	13.75	32.50	26.25	10.00
경북	구미시	진미동	9,210	71.15	88	28.03	2.27	7.95	12.50	12.50	37.50	14.77	12.50	17	16.83	5.88	11.76	0.00	11.76	35.29	29.41	5.88
서울	관악구	대학동	10,385	70.83	266	61.39	0.39	9.38	8.59	15.63	44.14	14.45	7.42	58	56.31	0.00	5.17	15.52	31.03	22.41	12.07	13.7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8,028	70.26	322	83.42	63.66	0.93	1.55	2.48	14.60	6.21	10.56	57	47.90	1.75	5.26	7.02	10.53	12.28	26.32	36.84
인천	옹진군	연평면	927	69.49	19	45.24	5.26	0.00	5.26	5.26	47.37	10.53	26.32	42	76.36	0.00	2.38	0.00	0.00	7.14	21.43	69.05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10,976	69.06	303	53.72	0.66	4.95	7.92	16.17	35.64	19.80	14.85	58	34.32	1.72	1.72	8.62	6.90	37.93	18.97	24.14
경북	구미시	원평1동	2,222	68.98	200	72.46	0.50	1.50	2.00	18.00	46.50	20.00	11.50	21	35.59	0.00	0.00	14.29	28.57	19.05	19.05	19.05
전남	영광군	낙월면	196	68.77	15	45.45	6.67	0.00	0.00	0.00	26.67	20.00	46.67	8	27.59	0.00	0.00	0.00	0.00	12.50	12.50	75.00
서울	중구	회현동	2,319	68.71	426	89.87	0.00	0.00	1.64	8.92	53.52	25.82	10.09	21	46.67	0.00	0.00	0.00	4.76	19.05	28.57	47.62
강원	화천군	상서면	2,065	68.29	68	53.97	2.94	1.47	2.94	11.76	23.53	19.12	38.24	46	46.54	0.00	0.00	4.35	0.00	13.04	26.09	56.52
광주	동구	송정동	2,019	68.26	178	60.34	0.00	1.12	2.81	13.48	45.51	26.40	10.67	50	55.56	2.00	0.00	2.00	10.00	10.00	34.00	42.0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15,077	68.07	158	50.64	1.27	4.43	4.43	12.03	37.34	27.22	13.29	27	30.34	7.41	3.70	3.70	14.81	40.74	11.11	18.52
광주	동구	서남동	1,506	67.95	142	52.40	0.00	9.15	1.41	15.49	28.87	21.83	23.24	36	48.65	2.78	0.00	0.00	13.89	5.56	22.22	55.56
서울	금천구	가산동	7,942	66.91	297	70.55	1.01	2.02	2.36	12.79	38.38	25.59	17.85	65	47.10	0.00	1.54	3.08	10.77	23.08	20.00	41.54
부산	중구	남포동	505	66.27	36	67.92	0.00	0.00	2.78	2.78	38.89	38.89	16.67	5	41.67	0.00	0.00	0.00	0.00	20.00	20.00	60.00
경기	오산시	남촌동	9,059	66.17	219	61.34	1.83	5.02	5.48	10.50	45.21	17.81	14.16	52	40.63	0.00	1.92	7.69	13.46	25.00	17.31	34.62
경기	연천군	중면	86	66.15	2	22.22	0.00	0.00	0.00	0.00	50.00	0.00	50.00	0	-	-	-	-	-	-	-	-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6,777	65.42	122	53.51	0.82	1.64	3.28	5.74	30.33	29.51	28.69	36	40.45	0.00	5.56	5.56	22.22	33.33	27.78	27.78
대전	동구	중앙동	2,578	65.27	494	71.59	0.81	1.01	1.21	7.29	40.69	33.40	15.59	118	63.44	0.00	0.00	2.54	11.02	31.36	24.58	30.51
부산	부산진구	부전제1동	5,283	64.71	544	62.10	0.37	2.21	1.10	9.56	37.32	28.68	20.77	92	46.70	1.09	0.00	1.09	5.43	25.00	30.43	36.96
서울	관악구	청룡동	10,826	64.54	241	57.38	3.73	3.32	3.73	9.13	30.71	29.05	20.33	70	41.92	0.00	1.43	7.14	14.29	32.86	17.14	27.14

제2절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 분석목적

- 주민등록 기준 1인 세대 및 행복e음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별 1인 가구 비중과 연령집단별 분포, 주거·보건의료(건강행태, 정신건강)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읍면동 및 시군구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을 실시함
- 향후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과 연계한 지역 단위 1인 취약가구 정책지원 방안 시범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함

□ 분석내용

- 1인 세대 비율, 연령집단별 1인 취약가구(수급가구) 비율 및 구성 분포 등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클러스터링
- 클러스터별 특성 분석을 통한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추출 및 지원

□ 분석지표

- 각 지표들을 표준화 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지수화 한 후,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에 활용함
- 읍면동 단위 지역정보 제약으로 읍면동 단위 클러스터링은 1인 세대 비율과 연령별 1인 수급가구 구성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 클러스터링에서는 주거 및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실시함
- 읍면동 단위 클러스터링 주요 지표 ☞ 읍면동 1인 가구(세대) 관련 지표 17개
 - 1인 세대 비율(%)
 - 생계급여_1인가구 비율(%), 생계_18~39세 비중(%), 생계_40~64세 비중(%), 생계_65세이상 비중(%)
 - 의료급여_1인가구 비율(%), 의료_18~39세 비중(%), 의료_40~64세 비중(%), 의료_65세이상 비중(%)

- 주거급여_1인가구 비율(%), 주거_18~39세 비중(%), 주거_40~64세 비중(%), 주거_65세이상 비중(%)
- 차상위_1인가구 비율(%), 차상위_18~39세 비중(%), 차상위_40~64세 비중(%), 차상위_65세이상 비중(%)

○ 시군구 단위 클러스터링 ⇨ 시군구 1인 가구(세대) 지표 20개, 정책영역별 특성 지표 5개

- 1인세대 비율
- 청년 인구(18~39세) 비율, 중장년 인구(40~64세) 비율, 노령 인구(65세 이상) 비율
- 생계급여_1인가구 비율(%), 생계_18~39세 비중(%), 생계_40~64세 비중(%), 생계_65세이상 비중(%)
- 의료급여_1인가구 비율(%), 의료_18~39세 비중(%), 의료_40~64세 비중(%), 의료_65세이상 비중(%)
- 주거급여_1인가구 비율(%), 주거_18~39세 비중(%), 주거_40~64세 비중(%), 주거_65세이상 비중(%)
- 차상위_1인가구 비율(%), 차상위_18~39세 비중(%), 차상위_40~64세 비중(%), 차상위_65세이상 비중(%)
- 주택보급률,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우울경험률, 자살사망률

□ 분석방법 ⇨ 클러스터링 방법론 Gaussian Mixture Model(GMM)

- Gaussian Mixture는 확률모델로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여 “soft” classifier 로 사용할 수 있음
- 데이터로부터 추정해야 하는 parameter는 평균 μ_i , 공분산 Σ_k , mixing coefficient π_k 가 있음
 - parameter는 EM(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으로 추정하는데, 우선, μ_i , Σ_k , π_k 의 초기치를 설정하고, 각각의 클러스터 k 에 대해

할당점수 $\gamma(z_{nk})$ 를 X_n 에 할당함

$$\gamma(z_{nk}) = \frac{\pi_k N(x_n | \mu_k, \Sigma_k)}{\sum_{j=1}^K \pi_j N(x_n | \mu_j, \Sigma_j)}$$

- 그리고, 주어진 점수에서 클러스터 k 에 대하여 μ_k, Σ_k, π_k 를 조정함

$$\mu_k^{new} = \frac{1}{N_k} \sum_{n=1}^N \gamma(z_{nk}) x_n, \text{ where } N_k = \sum_{n=1}^N \gamma(z_{nk})$$

$$\Sigma_k^{new} = \frac{1}{N_k} \sum_{n=1}^N \gamma(z_{nk}) (x_n - \mu_k^{new})(x_n - \mu_k^{new})^T$$

$$\pi_k^{new} = \frac{N_k}{N}$$

○ 다음으로 최대가능도(likelihood) 함수를 평가한 후, 이러한 작업을 최대가능도 또는 parameter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함

$$\ln p(X | \mu, \Sigma, \pi) = \sum_{n=1}^N \ln \left\{ \sum_{k=1}^K \pi_k N(x_n | \mu_k, \Sigma_k) \right\}$$

□ 읍면동 단위 1인 취약가구 집중 지역 분석결과

-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특성 및 정책영역별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Gaussian Mixture Model(GMM)을 사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관련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읍면동(n=3,541) 단위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주요 특성
 - 주성분 분석(PCA)을 활용하여 최적 클러스터 수를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3,541개 읍면동이 6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음

〈 6개 클러스터별 주요 지표별 특성 분석 및 전국 읍면동 분류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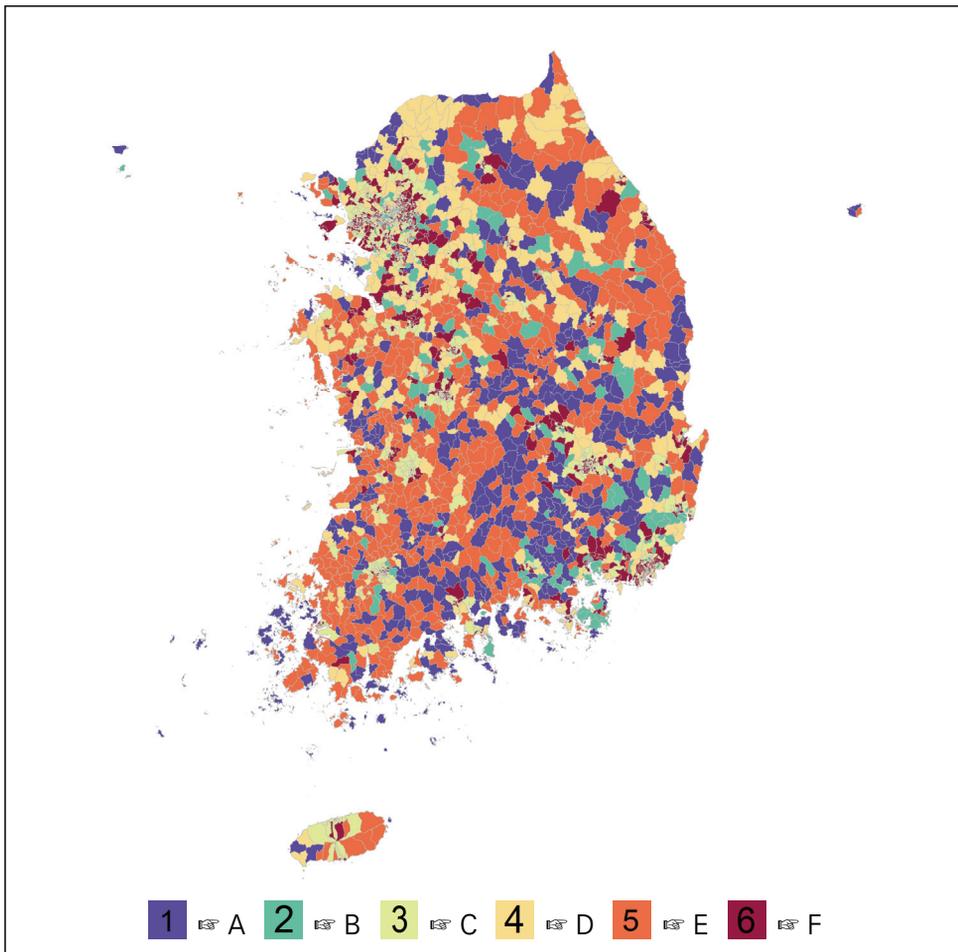
구분	A (436)	B (298)	C (631)	D (686)	E (639)	F (851)
1인세대 비율	47.0%	45.4%	28.0%	39.1%	45.2%	36.7%
생계_1인가구 비율	66.1%	71.0%	38.3%	57.2%	52.3%	49.7%
생계_18-39세	4.9%	5.6%	8.5%	5.7%	5.7%	6.4%
생계_40-64세	34.3%	47.2%	42.9%	37.8%	38.6%	45.9%
생계_65세이상	58.8%	45.2%	45.3%	54.2%	53.3%	45.7%
의료_1인가구 비율	63.5%	67.6%	34.0%	53.5%	49.2%	45.8%
의료_18-39세	5.0%	5.7%	8.7%	5.7%	5.7%	6.5%
의료_40-64세	34.3%	47.5%	43.4%	38.3%	38.7%	46.3%
의료_65세이상	58.8%	44.9%	44.8%	53.8%	53.2%	45.3%
주거_1인가구 비율	63.2%	66.3%	33.2%	52.7%	48.8%	45.1%
주거_18-39세	4.7%	5.6%	8.4%	5.6%	5.5%	6.3%
주거_40-64세	34.1%	47.3%	43.4%	38.1%	38.6%	46.2%
주거_65세이상	59.1%	45.1%	45.2%	54.2%	53.5%	45.6%
차상위_1인가구 비율	62.9%	51.6%	29.1%	41.7%	57.9%	34.3%
차상위_18-39세	3.0%	7.2%	6.5%	5.7%	3.0%	6.1%
차상위_40-64세	12.4%	27.8%	24.4%	24.9%	12.8%	30.9%
차상위_65세이상	84.5%	64.5%	68.1%	68.8%	83.8%	62.2%

- 6개 클러스터별 주요 지표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 및 노인 중심의 1인 취약가구 집중 지역(Cluster A, 436개 읍면동) ⇨ 1인 세대 비율이 가장 높고, 1인 수급가구 구성에 있어 노인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 1인 가구 및 중장년 중심의 1인 취약가구 집중 지역(Cluster B, 298개 읍면동) ⇨ 1인 세대 비율이 높고, 1인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1인 수급가구 구성에서 중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 1인 가구 및 1인 취약가구 미집중 지역(Cluster C, 631개 읍면동) ⇨ 1인 세대 비율 가장 낮고 1인 수급가구의 비중은 가장 낮은 반면, 청년층 취약가구 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노인 1인 취약가구 분포 지역(Cluster D, 686개 읍면동) ⇨ 1인 세대 비율은 평균 수준이나, 1인 수급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1인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 구성비중이 높은 지역

- 1인 가구 및 차상위 취약가구 집중 지역(Cluster E, 639개 읍면동)
↳ 1인 세대 비율이 다소 높으며, 기초보장 1인 수급가구의 비중보다 차상위 지원에서 1인 수급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중장년 1인 취약가구 분포 지역(Cluster F, 851개 읍면동) ↳ 1인 세대 비율은 높지 않으나, 1인 수급가구 구성 중에서 중장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6개 클러스터별 전국 읍면동 분류 결과 〉



□ 주거 및 보건의료 지표 반영 시군구 단위 1인 취약가구 집중 지역 분석결과

-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특성 및 정책영역별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Gaussian Mixture Model(GMM)을 사용하여 시군구 단위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관련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군구 단위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결과
 - 주성분 분석(PCA)을 활용하여 최적 클러스터 수를 도출하였으며, 229개 시군구가 6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음
- 6개 클러스터별 주요 지표별 특성 분석 및 시군구별 분류 결과
 - 1인 취약가구 집중 및 건강행태 고위험지역(Cluster A, 4개 시군구)
 - 1인 세대 비율은 평균 수준이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에 1인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차상위 지원을 제외한 1인 수급가구 구성에 있어서 노인세대 비중이 가장 높고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

☞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연천군

- 청년·중장년 1인 가구 집중 및 정신건강 고위험지역(Cluster B, 40개 시군구)
 - 1인 세대 비율은 평균 수준이나,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으며, 차상위 지원에서 1인 수급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으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우울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부평구, 계양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광주시

〈 6개 클러스터별 주요 지표별 특성 분석 및 시군구 분류 결과 〉

구분	A (4)	B (40)	C (75)	D (10)	E (49)	F (51)
1인세대 비율	37.5%	35.4%	33.8%	31.0%	44.4%	42.8%
청년인구 비율	29.4%	32.5%	30.2%	30.8%	19.2%	23.8%
중장년인구 비율	38.9%	39.4%	38.8%	39.6%	38.4%	40.4%
노인인구 비율	15.9%	12.7%	12.7%	10.9%	30.3%	21.5%
생계_1인가구 비율	59.1%	52.6%	48.3%	48.7%	54.0%	54.4%
생계_18-39세	4.7%	5.5%	6.2%	7.2%	6.0%	5.7%
생계_40-64세	36.9%	41.9%	44.0%	43.7%	37.5%	40.0%
생계_65세이상	53.9%	51.0%	47.6%	45.8%	53.9%	51.7%
의료_1인가구 비율	57.3%	48.3%	44.6%	44.1%	51.1%	51.2%
의료_18-39세	4.7%	5.6%	6.4%	7.3%	6.0%	5.7%
의료_40-64세	37.0%	42.5%	44.3%	45.0%	37.9%	40.3%
의료_65세이상	54.0%	50.3%	47.2%	44.8%	53.8%	51.5%
주거_1인가구 비율	50.0%	47.6%	44.0%	42.8%	50.8%	50.6%
주거_18-39세	4.6%	5.5%	6.1%	7.0%	5.8%	5.6%
주거_40-64세	38.0%	42.4%	44.2%	44.6%	37.7%	40.2%
주거_65세이상	54.1%	50.6%	47.6%	45.5%	54.1%	51.8%
차상위_1인가구 비율	33.4%	32.3%	35.8%	39.6%	56.5%	50.8%
차상위_18-39세	5.6%	6.3%	5.4%	5.9%	2.8%	3.7%
차상위_40-64세	26.6%	28.6%	25.5%	25.3%	13.7%	19.1%
차상위_65세이상	67.3%	64.4%	68.4%	67.2%	83.1%	76.7%
주택보급률	103.3%	98.1%	103.4%	87.7%	106.5%	111.9%
현재흡연율	23.6%	21.0%	22.1%	19.2%	22.8%	23.1%
고위험음주율	21.9%	17.9%	18.4%	17.2%	18.9%	21.6%
우울경험률	6.3%	7.6%	5.9%	5.3%	5.1%	6.4%
자살사망률	22.9	22.7	24.7	22.1	27.8	29.0

- 1인 가구 및 1인 취약가구 미집중 중장년층 상대 분포 지역(Cluster C, 75개 시군구)
 - 1인 세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하는 지역
 - 1인 수급가구 구성 중 중장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거,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평균적인 지역

☞ 서울 노원구, 강남구,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울주군, 세종시, 경기 의정부시,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 양구군, 충북 청주시, 증평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 제주시

- 1인 가구 및 1인 취약가구 미집중 청년층 상대 분포 지역(Cluster D, 10개 시군구)
 - 1인 세대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면서, 1인 수급가구 구성 중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
 - 주택보급률은 낮은 반면에,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우울경험률, 자살사망률 등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가장 양호한 지역

☞ 광주 동구, 남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기 과천시, 시흥시, 충남 계룡시, 경남 진주시

- 노인 중심 1인 취약가구 집중 농어촌 지역(Cluster E, 49개 시군구)

- 1인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1인 수급가구 구성(차상위 지원 포함)에 있어 노인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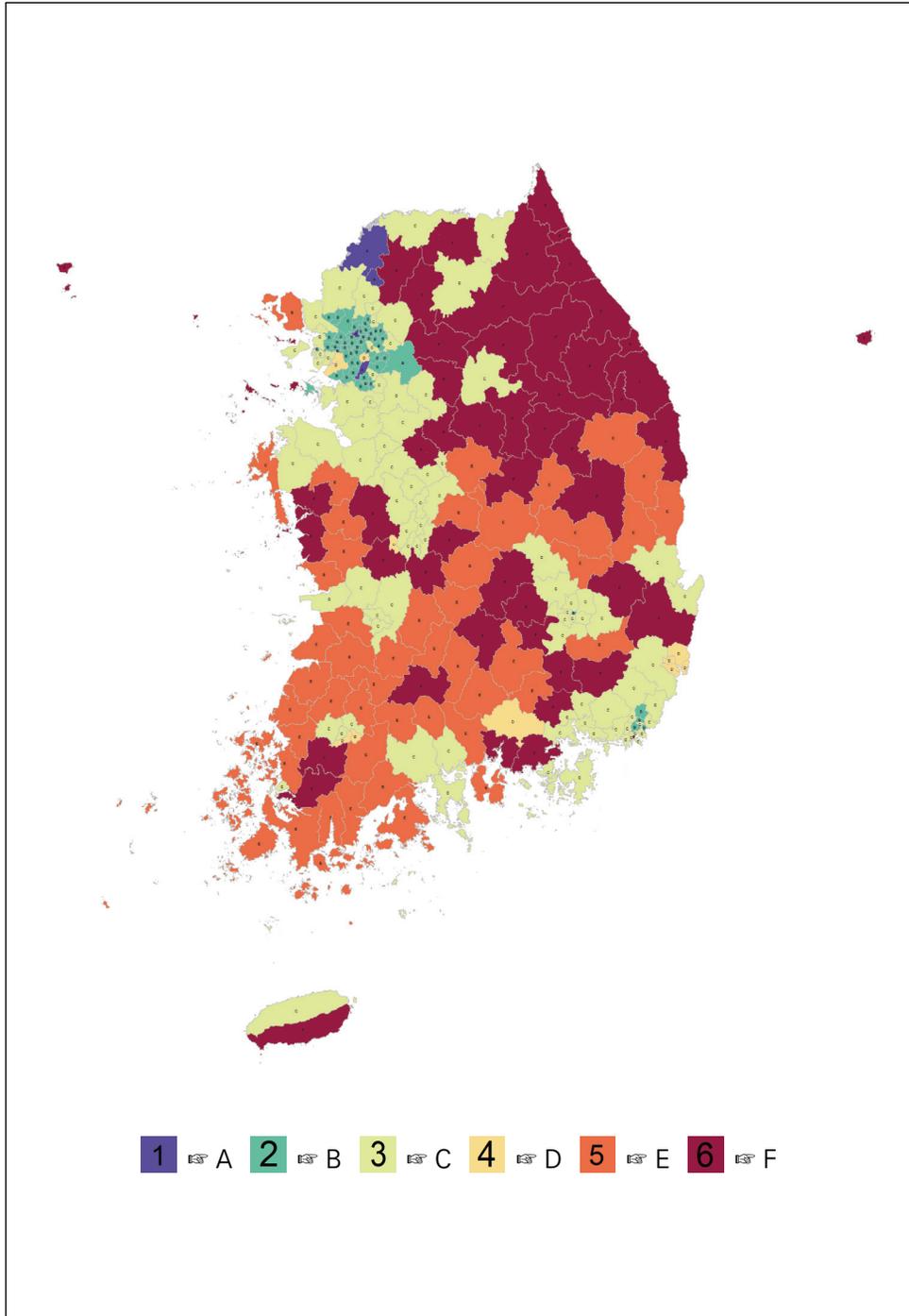
☞ 인천 강화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 중장년 중심 1인 취약가구 집중 지역(Cluster F, 51개 시군구)

- 1인 세대 비율이 상당히 높고, 노인 중심의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년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 주거급여_1인가구 비율, 차상위_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자살사망률 등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지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부산 중구,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암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제주 서귀포시

〈 6개 클러스터별 전국 시군구 분류 결과 〉



제 4 장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취약가구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 개발 및 분석결과

제1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요인 및 예측모형 개발

제2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 예측 및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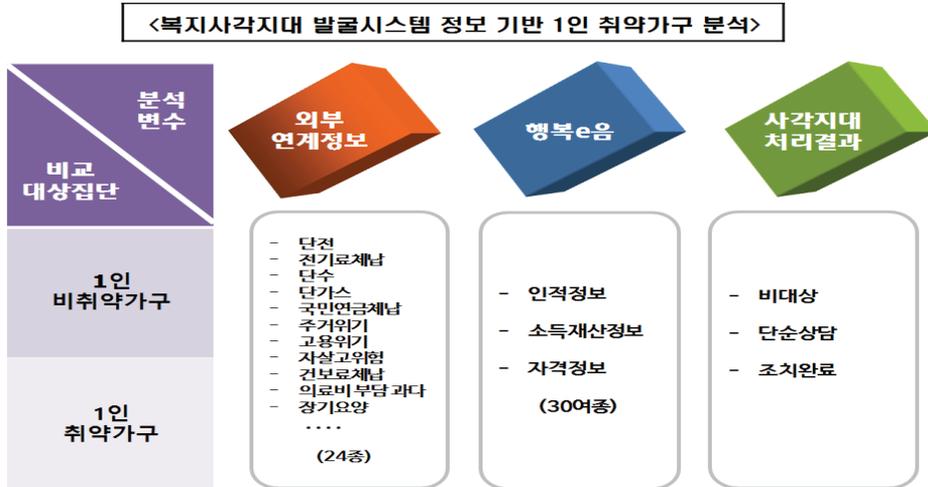
4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 취약가구 위험 예측모형 개발 및 분석결과

제1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요인 및 예측모형 개발

□ 개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와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연계하여 1인 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통계모형을 개발하고, 1인 취약가구 위험도를 예측하고자 함
 -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기반 외부데이터(24종)와 행복e음 정보(인적정보, 소득재산정보, 자격정보 등 30종)로 분석 DB 구축
 - 분석 DB에서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의미 있는 변수를 찾아내고, 기계학습(Machine-learning) 방법론 등을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연구 수행
- 1인 취약가구의 Predictive Risk Modeling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와 외부정보(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 등)를 연계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여러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1인 취약가구 발굴에 유의한 변수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Predictive Risk Modeling 이란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하여 통계 모형(model)을 만들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새로운 case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는 작업을 의미함



□ 이 연구에서 사용할 통계분석방법은 Logistic Regression, Elastic Net, Decision Tree, Random Forest, Boosting 임

○ Logistic Regression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모형화 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분류문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회귀모형 임

○ Elastic Net은 다중공선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변수선택과 추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Elastic Net은 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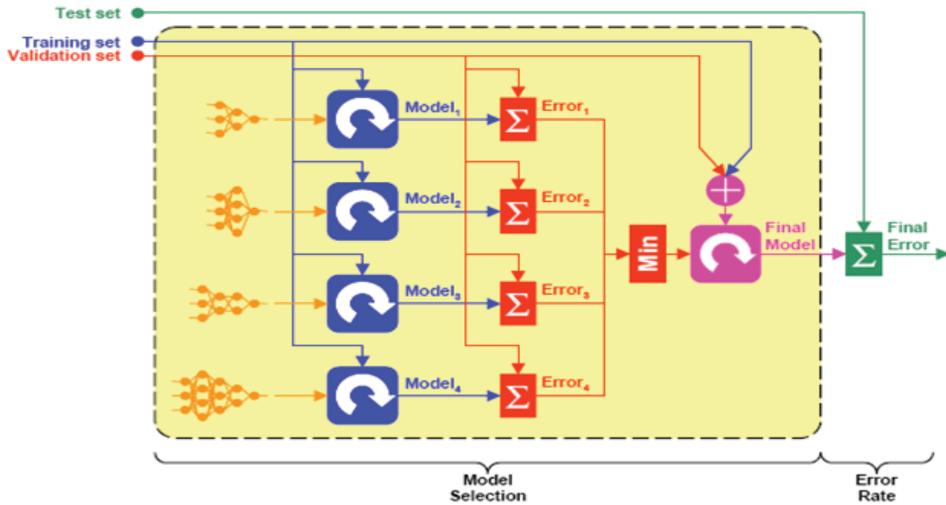
○ Decision Tree는 분류 및 예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 적용결과에 의해 if - then 으로 표현되는 규칙 생성

○ Random Forest는 주어진 자료로부터 여러 개의 예측 모형을 만든 후 이러한 예측 모형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최종 예측 모형을 만드는 앙상블(ensemble) 기법 중 하나로, 랜덤하게 많은 decision tree 모형을 구축하여 이들을 선형 결합하는 방법임

- 앙상블 기법은 예측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 되었음

- Boosting 기법은 앙상블(ensemble) 기법 중 하나로, Boosting의 기본 아이디어는 예측력이 약한 예측 모형(weak learner)들을 결합하여 강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임
 - 여기서 약한 예측 모형이란 랜덤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약간 좋은 예측력을 지닌 모형, 강한 예측 모형이란 예측력이 최적에 가까운 예측모형을 의미함

□ 예측 모형 평가 단계에서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모형을 비교/평가해야 하고, 특정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분석 DB에서 Training data 와 Test data 로 나누어 Training data로 모형을 구축하고, Test data로 모형을 평가하여 여러 예측모형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침



- 모형의 평가란, 예측(prediction)을 위해 만든 모형이 임의의 모형(random model)보다 예측력이 우수한지, 고려된 다른 모형들 중 어느 모형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민감도, 특이도,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ROC, Lift Chart 등을 통해 모형의 유의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1인 취약가구

발굴시스템의 경우, 1인 취약가구 위험예측확률이 높은 가구부터 지자체 방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모형 선택의 판단 기준은 Lift Chart 임

- 2015년 12월부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기반으로, 1인 취약가구 관련 추가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잠재적 1인 취약가구 위험 예측모형 개발 및 예측결과 지자체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환류데이터(8만 2천명)의 가구원 정보 결합 데이터에서 1인 취약가구와 1인 비취약가구 비교 분석
 - 장애, 소득상실, 실업 등 고용위험, 복지급여 수급, 주거위기, 건강위험 등 관련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잠재적 1인 취약가구 특성 분석을 통한 초기 예측모형 개발
 - 잠재적 위험확률 정도에 따른 1인 취약가구 유형화 및 정책대상 집단 도출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예측모형 분석으로 도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리스트와 1인 취약가구 발굴대상자 예측모형 분석으로 도출된 1인 취약가구 발굴대상자 리스트를 구분하여 지자체에 제공
 - 1인 취약가구 예측 및 추출결과 제공에 따른 1인 취약가구 발굴 상담 및 1인 취약가구 지원여부 등 조치결과 환류데이터 피드백 및 모형 정교화를 통한 정확도 제고 1인 취약가구 예측모형에서의 발굴대상자 리스트는 복지사각지대 예측모형의 발굴대상자 리스트와 별도로 관리하고, 발굴 및 환류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형 정교화



□ Predictive Risk Modeling(PRM)을 위한 분석 데이터 주요 변수

○ 16종(지역구분, 소득인정액변수 포함) 중 9종 세부정보 포함

- 단전(V1) ⇔ 체납금액(V1_G), 월평균 사용량(V1_H)
- 단수(V2) ⇔ 해당여부 변수만 활용
- 단가스(V3) ⇔ 해당여부 변수만 활용
- 전기료 체납(V4) ⇔ 체납기간(V4_C), 월평균 사용량(V4_E)
- 연금보험료 체납(V5) ⇔ 월 연금보험료(V5_A), 체납기간(V5_D),
체납보험료총액(V5_E)
- 건강보험료 체납(V6) ⇔ 체납기간(V6_C), 체납보험료총액(V6_D),
월 건강보험료(V6_E)
- 의료위기_본인부담경감대상(V8) ⇔ 월 건강보험료(V8_B)
- 의료위기_피부양의무자장기요양수급대상(V9) ⇔ 월 건강보험료(V9_B)
- 주거위기_전세 1억원 이하(V10) ⇔ 세대원수(V10_B), 전세보증금(V10_A)
- 주거위기_월세 30만원 이하(V11) ⇔ 세대원수(V11_C), 보증금(V11_A),
월세(V11_B), 월세전환총액(V11_r)
- 고용위기_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V13) ⇔ 해당여부 변수만 활용

64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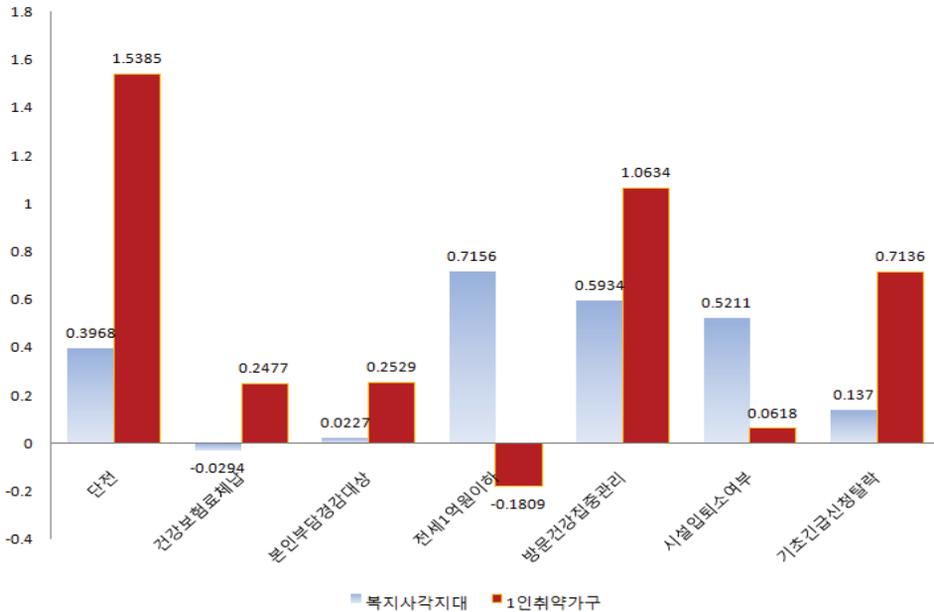
- 방문건강집중관리대상(V15) ☞ 해당여부 변수만 활용
 - 시설입퇴소여부(V22) ☞ 해당여부 변수만 활용
 - 기초긴급신청탈락(V23) ☞ 해당여부 변수만 활용
 - 지역구분(REGION)
 - 소득인정액여부(SS1) ☞ 중위소득대비 소득인정액비율(SS1_A)
- * 자살예방관리대상여부(V18), 응급의료자살시도대상여부(V19), 화재피해여부(V7),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상(V16), 신생아청각선별검사대상(V17), 위기학생여부(V20), 범죄피해여부(V21) 변수는 추후 모형에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 복지사각지대 모델⁴⁾ vs. 1인 취약가구 모델⁵⁾

○ 복지사각지대 모형과 1인 취약가구 모형에서 특정한 요인이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⁶⁾

- 복지사각지대 모형보다 1인 취약가구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으로는 단전, 건강보험료체납, 본인부담경감대상, 방문건강집중관리대상, 기초연금신청탈락 요인임
- 반면, 1인 취약가구 모형보다 복지사각지대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요인으로는 전세1억원 이하, 시설입퇴소 여부 요인임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1인 취약가구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 크기(영향력)가 다르기 때문에 1인 취약가구 모형을 별도로 구축해야 함



4) 복지사각지대 3차 대상자 선정을 위해 1·2차 환류 데이터로 모형 개발

5) 1·2차 환류 데이터에서 1인 가구만 추출하여 모형 개발

6) 위의 도표는 분석데이터 변수 중 복지사각지대와 1인 취약가구 logistic 모형 간 차이가 있는 주요 변수만 표현한 것임

제2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 예측 및 분석결과

□ 모형기반 복지사각지대 위험가구(1인 취약가구⁷⁾ 포함) 3차 제공 리스트⁸⁾ 최종 추출기준 및 집단구분 결과

○ 3차 대상자 연계정보별 세부정보 보유 3,129,153명 (중복 제거)

- 소득인정액 보유 1,147,213명 (36.7%)
- 1인 가구 275,640명

○ 3차 리스트 제공대상 [☞] 51,293명 (중복 제거)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인가구	16,628	32.4	49.5
	2인이상	16,984	33.1	50.5
	합계	33,612	65.5	100.0
결측	행복e음에없는대상자수	17,681	34.5	
	합계	51,293	100.0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1인가구	17세 이하	138	0.8
	18~39	846	5.1
	40~64	1,992	12.0
	65세 이상	13,652	82.1
	합계	16,628	100.0

7) 데이터에서 정의하는 1인 가구는 행복e음의 [소득산정가구원수==1]로, 이는 각 제도의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원수이므로 실제 1인 가구와는 다를 수 있음 (예 : 기초연금)

8) 2016년 7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3차 발굴대상 추출 제공

○ 3차 리스트 제공대상 집단구분 (Group)

- 예측모형에 따른 개별 취약가구의 확률 값에 대한 집단 구분 (1~4)

num(group=1) = 7,951명

☞ 환류 데이터 복지사각지대(y=1) 확률분포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확률값 (0.38388701) 이상을 가지는 대상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인가구	1,671	21.0	27.1
	2인이상	4,499	56.6	72.9
	합계	6,170	77.6	100.0
결측	행복e음에없는대상자수	1,781	22.4	
	합계	7,951	100.0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1인가구	17세 이하	28	1.7
	18~39	59	3.5
	40~64	98	5.9
	65세 이상	1,486	88.9
	합계	1,671	100.0

num(group=2) = 5,908명 (누적: 13,759 명)

☞ 환류 데이터 복지사각지대(y=1) 확률분포 중 상위 5~10% 해당하는 확률값 (0.35691432 ~ 0.38388701)을 가지는 대상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인가구	1,739	29.4	41.8
	2인이상	2,425	41.0	58.2
	합계	4,164	70.5	100.0
결측	행복e음에없는대상자수	1,744	29.5	
	합계	5,908	100.0	

68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1인가구	17세 이하	8	0.5
	18~39	81	4.7
	40~64	184	10.6
	65세 이상	1,466	84.3
	합계	1,739	100.0

num(group=3) = 20,248명 (누적: 34,007명)

☞ 환류 데이터 복지사각지대(y=1) 확률분포 중 상위 10~20%에 해당하는 확률값 (0.33614635 ~ 0.31879054)을 가지는 대상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인가구	10,109	49.9	65.1
	2인이상	5,418	26.8	34.9
	합계	15,527	76.7	100.0
결측	행복e음에없는대상자수	4,721	23.3	
	합계	20,248	100.0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1인가구	17세 이하	26	0.3
	18~39	211	2.1
	40~64	535	5.3
	65세 이상	9,337	92.4
	합계	10,109	100.0

num(group=4) = 8,252명 (누적: 42,359명)

☞ 환류 데이터 복지사각지대(y=1) 확률분포 중 상위 20~80%에 해당하는 확률값 (0.14317880 ~ 0.31879054)을 가지면서 여부변수 합이 3개 이상(신생아청각 선별검사대상여부 제외, 연금보험료체납여부 제외)인 대상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1인가구	2,239	27.1	44.8
	2인이상	2,762	33.5	55.2
	합계	5,001	60.6	100.0
결측	행복e음에없는대상자수	3,251	39.4	
합계		8,252	100.0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1인가구	17세 이하	70	3.1
	18~39	459	20.5
	40~64	1,037	46.3
	65세 이상	673	30.1
	합계	2,239	100.0

제 2 부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제5장 소득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6장 고용서비스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7장 주거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8장 건강행태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9장 정신건강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0장 돌봄안전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1장 결 론: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 1인 취약가구 대응 정책의 현 상황

☞ 1인 취약가구의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기능 미비

-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형성·발전해온 현행 사회보장체계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의 개인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22개 부처 사회보장 내역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가구에 별도 기준과 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1개뿐이며, 지원대상에 1인 가구를 명시한 사업은 14개, 1인 가구를 배제하는 사업은 0개,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지만, 별도 기준이 없는 사업은 272개임(부록 2 참조)
- 2016년 국회 확정예산 기준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현황 검토결과, 정책수혜 대상에서 1인 취약가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재정사업은 23개 부처·청 소관 세부사업 242개로 소득보장, 고용·일자리서비스, 주거, 건강 및 정신건강, 돌봄·안전, 교육 문화 및 기타 정책영역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정책 대상이 1인 취약가구로 특정된 재정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돌봄·안전서비스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사업에 불과함
- 한편, 국가보훈처 소관 사업으로 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사업으로 가사간병지원 및 노인의료용품지원)이 1인 가구를 주 정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라는 특수계층에 대한 지원에 국한됨
- 정책의 수혜대상을 1인 가구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1인 가구의 취약성을 고려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환경부 소관사업으로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정책대상 중 소외계층의 일부로서 독거노인이 포함되며, 복지부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으나 정책대상의 범위가 최종증 장애인 일부에 한정됨
- 그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일부 국토부 소관 주거지원 사업에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음
- 한편, 주거지원 용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1인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있

으나, 실질적인 주거지원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저리 금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

- 이상의 주거·돌봄/안전관련 재정지원 이외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차상위 지원대상 수급자 선정 및 지원수준 산정 시 가구원수가 고려되며, 이에 연계하여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기타 복지급여 또는 조세급여가 지급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가구규모에 따른 위험수준이 제도에 반영되는 상황임
 - 그 밖에 일자리지원, 건강의료, 기타 영역에 걸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1인 가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정도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개인화된 위험을 인식하는 수준에 불과함
 - 즉, 1인 가구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제도적 구분이 없고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나 수혜자 실태와 관련한 정보 관리 또한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와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고립 및 관계 단절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1인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특히, 계층과 세대 등에 따라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의 개념 정의를 통해 정책대상을 설정, 1인 취약가구 유형별로 정책영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각 부처 정책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영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소득계층(중위소득 60%) 및 세대(청년 - 중장년 - 노인) 및 장애와 성별을 고려한 정책집단 대상으로, 소득지원, 주거지원, 고용서비스, 건강행태, 정신건강, 돌봄 및 안전등 6가지 정책영역별로 기존의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포함하여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구성하여 제시함
 - 정책대상 및 영역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Matrix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제안하였으며, 앞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로 제시함

<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 Matrix >



★ 위험요인 분석 ➡ 정책현황 검토 ➡ 정책지원방안 제시(개선/신규)

제 5 장

소득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5

소득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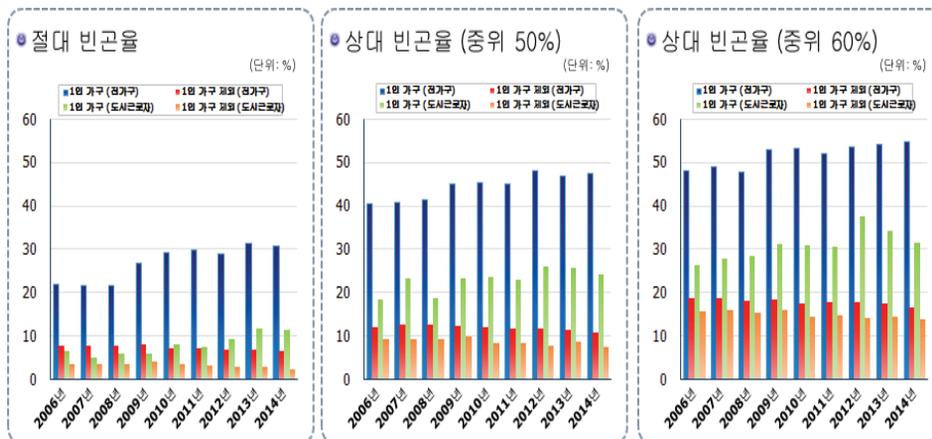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 분석목적

- 경제적 자립 여부에 따라 1인 가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1인 취약가구에 특화된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응
 - 소득수준 및 구성, 중위소득 기준 빈곤여부에 따른 소득보장 관련 정책대상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선대안을 제시함

□ 위험요인

- 1인 가구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요인은 경제적 측면으로,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30%와 50% 수준임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빈곤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가운데 청년층과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 변화 추이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빈곤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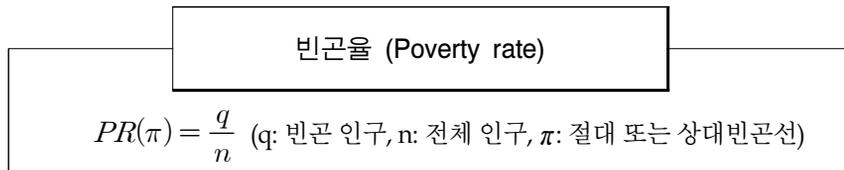
□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에 따른 규모 추정

- 다양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상대빈곤율 및 1인 취약가구 규모를 파악하고, 1인 가구의 연령 및 성별, 지역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여 소득재산 분포를 분석함
- 분석지표 ☞ 중위 30~60% 상대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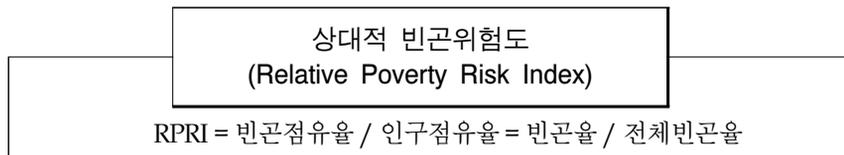
□ 분석내용

○ 1인 가구의 상대빈곤 수준

- 1인 가구의 빈곤수준을 측정하여 1인 취약가구 위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빈곤율, 상대적 빈곤위험도를 활용함
- 먼저, 빈곤율은 앞서 언급한 빈곤 및 소득 개념에 따라 빈곤의 양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특정 집단에서 전체 가구(인구) 중 빈곤 가구(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됨



- 이와 달리,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집단 간 빈곤 가능성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며, 특정 집단의 빈곤 점유율을 인구 점유율로 나누거나 특정 집단의 빈곤율을 전체 빈곤율로 나누어서 측정함(Förster, 2000)



- 이 지표는 특정 집단의 빈곤 점유율과 인구 점유율이 같거나 특정 집단의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1.00로 산출되며, 1.00을 기준으로 빈곤 가능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값이 증가함

-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에 따른 규모 추정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1인 가구(520만 가구) 기준으로 집단별 추정
 - 연령집단, 성별, 지역을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추정
 - 1인 취약가구 유형별 소득·재산과 상대빈곤 분포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소득 2014년 시점, 재산 2015년 3월 시점)
- 조사대상 규모 : 18,031가구, 51,127명
 - 소득 개념 및 주요 집단구분 변수
 - 근로사업소득(WI)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균등조정 근로사업소득
 - 요소소득(FI) = WI + 재산소득 ☞ 균등조정 요소소득
 - 시장소득(MI) = FI + 사적이전소득 ☞ 균등조정 시장소득
 - 경상소득(GI) = MI + 공적이전소득 ☞ 균등조정 경상소득
 - 가처분소득(DI) = GI - 세금 - 사회보험료 ☞ 균등조정 가처분소득
 - 1인 가구 여부 ☞ 1인 가구 vs. 2인 이상 가구
 - 연령집단 ☞ 청년층(18~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 성별 ☞ 남성 vs. 여성 / 지역 ☞ 수도권 vs. 비수도권
 - 소득계층 ☞ 중위 60% 이하

□ 분석결과: 1인 가구 상대빈곤율 Heatmap 및 1인 취약가구 규모

○ 다양한 소득 개념 및 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1인 가구 상대빈곤율 변화

(단위: %)

중위 3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 가구	51.65	49.34	43.82	34.31	31.12
2인 이상 가구	13.16	11.80	10.17	5.66	5.39
전체	19.80	18.28	15.98	10.60	9.83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 가구	53.91	53.08	48.87	43.56	42.27
2인 이상 가구	15.94	15.39	14.13	10.35	9.58
전체	22.49	21.89	20.12	16.08	15.22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 가구	58.05	56.79	53.82	49.98	48.81
2인 이상 가구	20.05	19.33	18.51	14.85	14.51
전체	26.61	25.80	24.61	20.91	20.43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 가구	61.42	60.41	58.19	55.65	54.40
2인 이상 가구	24.36	24.07	23.31	20.88	20.49
전체	30.76	30.35	29.33	26.88	26.34

○ 중위 60% 기준 적용 시 상대적 빈곤위험도

(☞ 집단 빈곤율 / 전체 빈곤율)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 가구	1.997	1.991	1.984	2.070	2.065
2인 이상 가구	0.792	0.793	0.795	0.777	0.778

○ 중위 60% 기준 적용 시 1인 취약가구 규모

- 공적이전 전 시장소득 기준 전체 1인 가구(2015, 등록센서스 기준 520만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 1인 취약가구는 약 58.19%인 약 303만 가구임
- 경상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각각 289만 가구, 283만 가구로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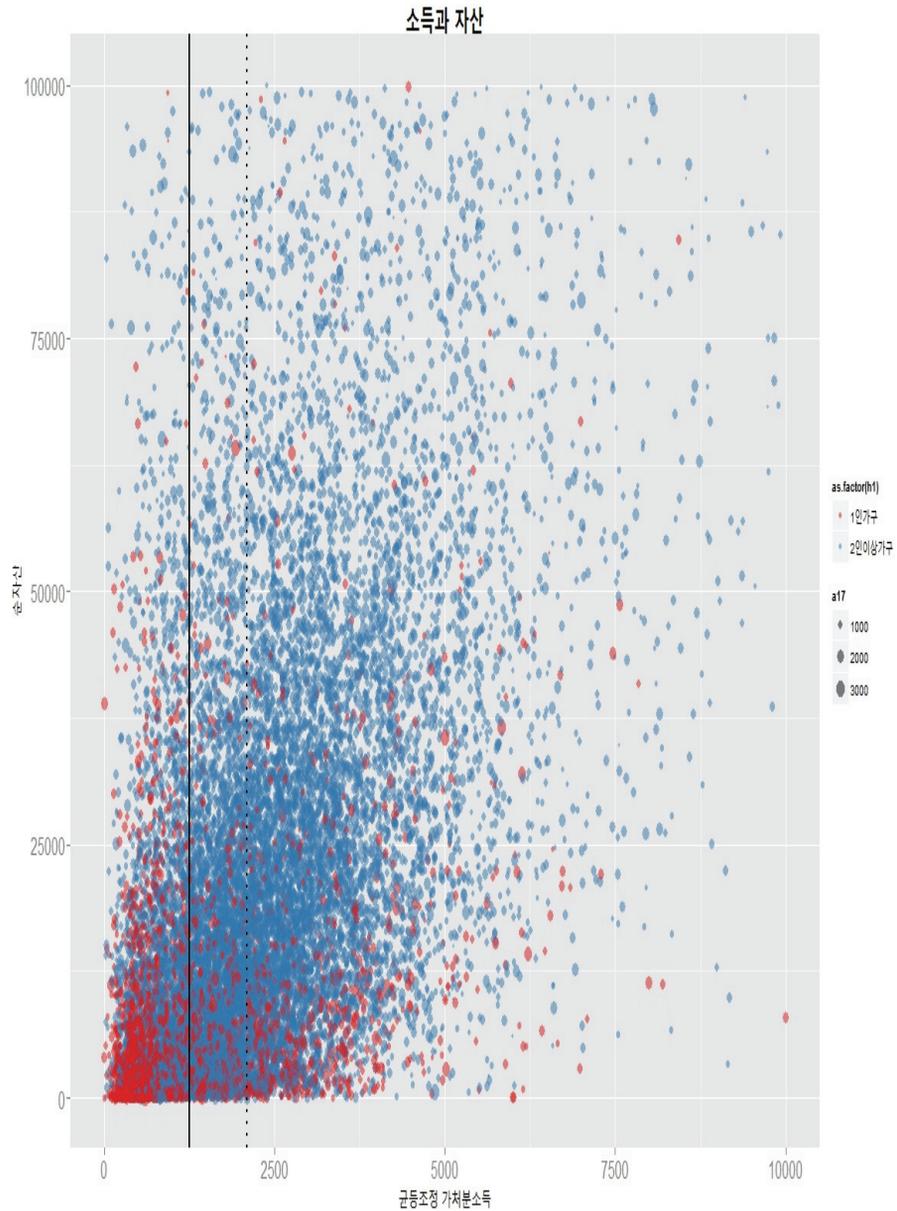
(단위: 만 가구)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 가구	319	314	303	289	283
2인 이상 가구	268	266	258	224	220
전체	588	580	561	514	503

□ 균등조정 경상소득 중위 60% 상대빈곤 기준 적용 시 집단별 1인 취약가구 지원대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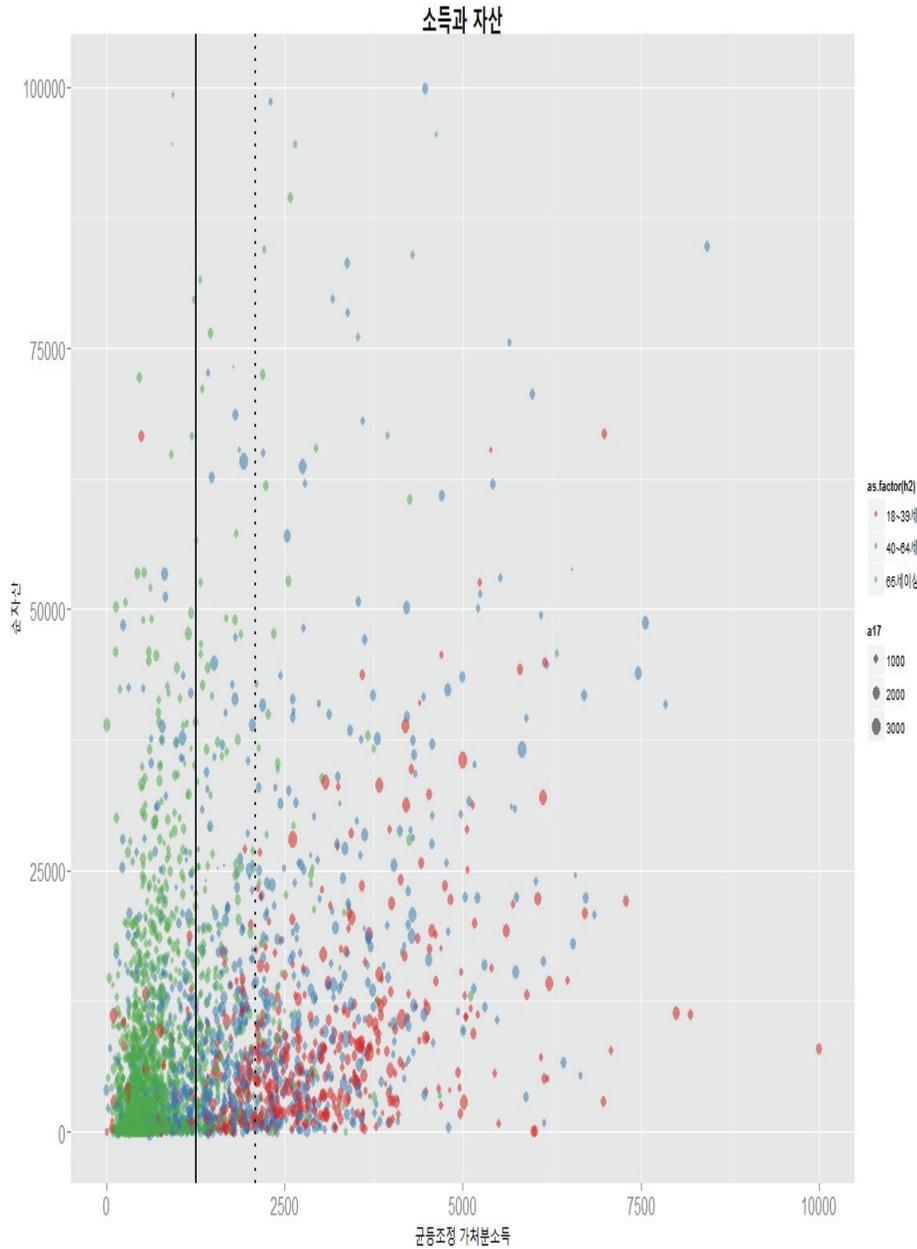
1인 가구 유형	청년층 (18-39세)					중장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합계
	남성 수도권	남성 비수도권	여성 수도권	여성 비수도권	소계	남성 수도권	남성 비수도권	여성 수도권	여성 비수도권	소계	남성 수도권	남성 비수도권	여성 수도권	여성 비수도권	소계	
균등조정 경상소득 중위 60% 초과 비취약가구	6.97%	3.54%	4.48%	2.67%	17.66%	6.59%	5.88%	5.17%	4.01%	21.65%	1.00%	0.97%	1.50%	1.58%	5.04%	44.35%
균등조정 경상소득 중위 60% 이하 취약가구	0.69%	0.31%	0.96%	0.57%	2.52%	2.34%	3.88%	3.42%	5.44%	15.08%	2.51%	3.75%	9.63%	22.17%	38.06%	55.65%
전체	7.66%	3.85%	5.44%	3.23%	20.18%	8.93%	9.75%	8.59%	9.45%	36.73%	3.51%	4.72%	11.13%	23.75%	43.10%	100.00%
1인 취약가구 규모 추정 (만가구)	4	1	5	3	13	12	20	18	28	78	13	19	50	115	198	289

□ 소득재산을 고려한 상대빈곤 및 취약가구 분포 (1인 가구 vs. 2인 이상 가구)



주: 점선은 균등조정 가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실선은 중위소득 60%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원자료

□ 연령집단별 1인 취약가구 소득·재산 분포 (청년, 중장년, 노인)



주: 점선은 균등조정 가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실선은 중위소득 60%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원자료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 소득지원 관련 복지사업 중 제도 자체가 1인 가구 또는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1인 가구를 포함하거나 가구규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개선대안을 통해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수준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함
 - 무자녀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급여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임
 - 대부분 복지사업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을 마련하여 제도별로 1인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하고 있음
- 1인 취약가구 소득지원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책 개선방안 1 ☞ 청년)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연령기준 및 급여체계 확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라, 1인 가구 증가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도입 당시 수립된 중장기 확대 계획보다 앞당겨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한 적용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한 사례임
 - 근로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기 위해 2013년 60세 이상 단독가구에 적용하였으며, 2016년에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 단독가구 대상으로 적용 확대 예정임
 -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를 고려하여,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1인 취약가구에 대하여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2018년부터 18세 이상 청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여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전체 1인 취약가구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적용 추진하거나, 2018년 30세 이상, 2019년 18세 이상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가능
 - 또한, 최저임금 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현행 단독가구에 대한 급여체계(소득기준 및 최대급여액)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소득기준 및 최대급여액 변화

현행 (단위: 만원)					개편 (단위: 만원)					
구분	구간			최대 급여액	구분	구간			최대 급여액	
	점중	평탄	점감			점중	평탄	점감		
무자녀	~600	~900	~1,300	70	단독가구 (연령기준 확대)	~600	~900	~1,300	70	
자녀 1인	~800	~1,200	~1,700	140	가족 가구	출별이	~900	~1,200	~2,100	170
					맞별이	~1,000	~1,300	~2,500	210	
자녀 2인	~900	~1,200	~2,100	170	+					
자녀 3인 이상	~900	~1,200	~2,500	200	CTC	출별이	없음	~2,100	~4,000	1인당
					맞별이	없음	~2,500	~4,000	50	

- 저소득 근로능력가구의 근로활동 참가 등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중구간 확대 및 급여증가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 특히 근로유인 효과가 높은 점중구간의 경계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이와 더불어 급여증가율 및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 개선방안 2 ☞ 청년) 잠재적 청년 1인 취약가구 대상 소득-고용-주거 연계 지원체계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마련

- 가족결손에 따른 소년소녀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전 생애 빈곤위험이 가장 높으며, 소득,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건강(심리 정서 및 사회적응 포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정책지원을 필요로 함
- 법정 성인연령 도달 이후 기존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충격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독립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유지해야 하는 1인 취약가구로 전락할 가능성 매우 높은 '잠재적 청년 1인 취약가구'에 해당함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약 280개 시설 보호아동 약 1만5천명 & 연간 시설퇴소아동 5~6천명
 - 가정위탁아동 ☞ 약 1만1천 가정, 위탁보호 아동 1만5천명 가운데 17세 이상 약 5~6천명
 - 아동그룹홈 거주 아동 ☞ 약 480개 시설, 약 2,500명 중 고등학생 이상 약 700명
- 시설보호 아동의 보호시설 퇴소 요건 완화 및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 교육, 주거, 생계,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 마련 필요
 - 현재는 18세 이후 대학 진학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아동복지법제16조), 연령 기준 상향 또는 취업 이후로 보호기간 연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만 18세 시설보호아동 대상으로 1회성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200~300만원 내외로 매우 낮음
 - 이에 따라, 이러한 잠재적 청년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고용-주거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응 및 경제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 대상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주요 사례관리 대상 집단으로 집중 관리하고, 대학 진학 및 취업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함
 - 주거안정을 위하여 LH 전세임대주택(자기부담금 없이 낮은 이율로 용자하여 월세 부담보다 적도록 지원), 행복주택, 공동주거시설, 기숙사 등 연계 및 입주 우선순위 부여
 - 소득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주거지원과 연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
 - 1회성으로 지원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은 시설퇴소 직전까지 적립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 금융교육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시설 퇴소 이후에도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역시 잠재적 청년 1인 취약가구로 포함하여 가구분리 및 거주지 변경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연계사례관리 실시

○ (정책 개선방안 3 ☞ 노인) 노인단독 빈곤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액 추가 지급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성 제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취약가구 가운데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단독 가구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핵심적 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개념별 노인빈곤(중위 50%)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약 80%에 이르며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이전소득 전후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감소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크지 않음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12.39	12.42	11.81	11.06	10.94
노인단독가구	95.14	93.29	89.66	82.18	80.15
노인부부가구	84.20	79.20	74.95	55.99	54.75
비노인배우자가구	60.85	53.21	51.19	31.51	29.00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40.58	38.22	35.97	24.84	23.89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20.04	19.30	18.64	14.91	14.21
기타	84.39	80.92	78.55	58.31	58.31
전체	26.61	25.80	24.61	20.91	20.4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원자료

- 최근 다양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전체 노인의 80% 대상 30만원으로 확대, 하위 30% 또는 50% 노인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확대 등)이 제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및 향후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기능 강화 등으로 고려할 때 전체 1인 취약가구 가운데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가구 유형 중에서도 1/4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단독 가구 중 빈곤가구 대상으로 아일랜드 사례와 같은 추가급여 형태 또는 노인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급여액 비율 조정을 통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지원 사례>

- 아일랜드의 경우, 만 66세 이상 독신가구의 경우 공적연금, 유족연금, 산재보상금 등의 급여에 대해 2016년 현재 주당 9유로의 추가수당을 지급
- 만 66세 미만 독신가구의 경우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의 급여에 대해 추가금액 지급
- 1인 취약가구는 단독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로 이를 증빙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배제함

○ (정책 개선방안 4 ☞ 청년/중장년/노인) 정책대상별 소득보장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선정 및 급여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

-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가구의 비중이 49.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1인 가구 소득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할 경우 취약계층 보호에 상당한 기여 가능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예를 들어, 공제 확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OECD 가구

균등화지수 조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저소득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대상 선정 및 급여를 확대할 수 있음

-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잠재적인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해야 함

○ (정책 개선방안 5 ☞ 청년/중장년/노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우선순위 부여 및 총 근로기간 연장

-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꾸준하고 예상 가능한 안정적인 소득은 생활 안정의 핵심 요소이나, 저학력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일자리사업은 대체로 단발성의 단기간 사업 중심임
- 저소득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와 더불어,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사업 참여 우선순위 부여 및 근로기간 연장 실시
 - 1인 취약가구는 사회적 위험에 홀로 대응해야 하며, 이 중 실업과 고용불안은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임

○ 1인 가구 소득지원 정책 개선방안 추진 시 고려사항

- 모든 소득지원 방안은 항상 고용서비스 및 주거지원, 그리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1인 취약가구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 추진
- 1인 취약가구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의 경우,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중심으로 고용 및 주거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병행하는 방안 검토
- 특히, 1인 취약가구의 지출부담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주거급여에 선정체계에 있어 소득과 연계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하여 1인 취약가구의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필요

제 6 장

고용서비스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6

고용서비스 영역 1인 취약가구 <<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 개인 혹은 가구를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및 고용서비스는 대상층의 안녕(well-being)을 증진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지님⁹⁾
- 단, 이들은 안녕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고용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취업 혹은 창업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의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에 비해, 복지서비스는 취창업과 같이 일정 수단이 특정되기 보다는 개인의 욕구(need)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참여자의 안녕을 증진하고자 함
- 이 같은 관점에서, 개인 혹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는 대상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거나 유지해 이들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음(길현중, 2016)
 - 단, 취창업에 이르는 과정, 예를 들면 직업훈련 등도 고용서비스의 한 부류로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음
- 본 장은 이 같은 고용서비스 중, 1인 취약가구가 활용 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 보고 이들에게 보다 비용효과적인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먼저 1인 가구 고용현황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함

9) 본 절 서론에서 언급한 고용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는 '길현중(2016)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 미래지향적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대토론회'의 논의에 기반 했음을 밝힘. 구체적인 논의는 원 발표문을 참고바람

- 다음으로 현재 1인 취약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고용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정리하고, 이 사업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1인 취약가구 대상 공공고용서비스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함
- 본 장은 1인 취약가구에 보다 비용효과적인 고용서비스제공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1. 현황 확인을 위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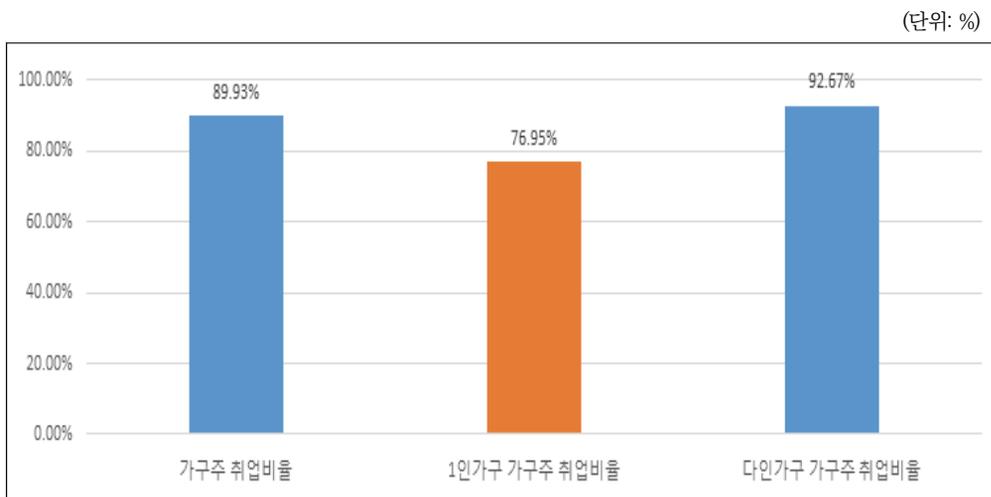
- 본 장의 연구 목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1인 가구 가구주 고용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 이는 고용서비스의 욕구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본 장은 통계청 2015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시행되는 조사임(통계청, 2011)
 - 본 조사에는 가구원 수, 가구원 취업 인원 수, 가구주 취업여부, 소득(경상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가구원수 별 취업상태 및 취약성 등 1인 가구 고용 및 근로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이 가능함

2. 1인 가구와 다인(多人) 가구 취업관련 특성 비교

- 먼저 가구주가 취업해 있는 가구 비율을 가구원수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6-1>과 같음
 - 노인 가구를 제외한 후 1인 가구 전체 중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 비율은 약 77%로, 이는 전체 가구주 취업자 비율인 90%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 같이 1인 가구 가구주의 취업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가구주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할 능력 자체가 낮거나, 구인처를 확보할 만한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취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물론, 1인 가구는 일상생활에 있어 지출 자체가 적어 취업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예: 국가나 가족·친지 등의 지원) 스스로 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이는 심리사회적인 부분이 내재된 요인이기에 양적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림 6-1] 가구원수별 취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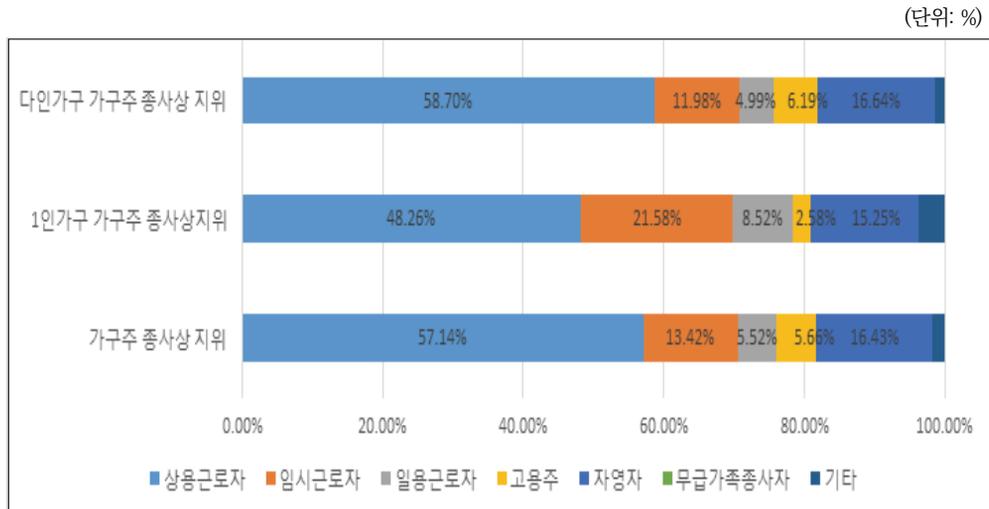
주: 취업가구 비율=가구주 취업 가구/전체 가구; 자영업자도 취업자에 포함
 자료: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다음으로 이들 취업자 중, 가구원수별 종사상지위를 확인해 보면 다음 <그림 6-2>와 같음
 -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가구주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약 48%,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30%임
 - 이를 전체 가구주 혹은 다인가구 가구주의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높음. 즉, 객관적 고용의 질을 나

타내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구주 비율이 1인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방하남 외, 2007)

- 이 같은 차이 역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 1인 가구주 중 많은 인원이 안정된 직장에 근무할 능력 자체가 낮거나,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처리해야 해서 시간제 일자리 등에 취업하게 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출 자체가 적어 상용직을 상대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음

[그림 6-2] 가구원수별 종사상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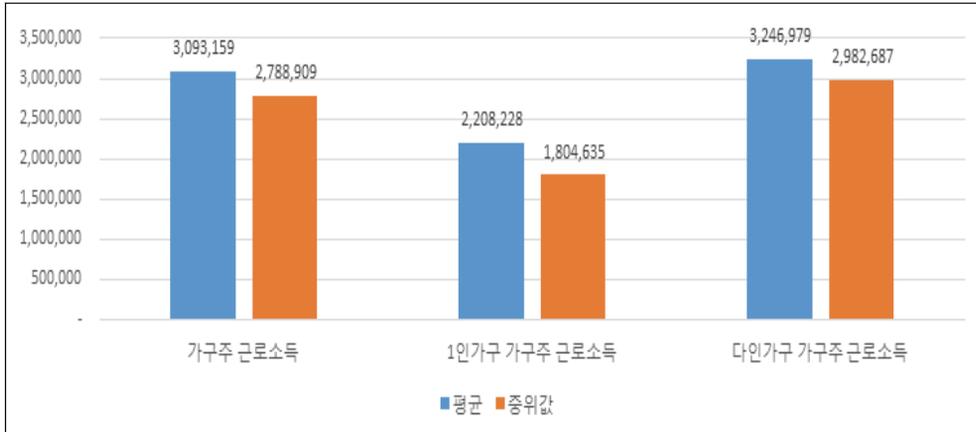
주: 전체=취업자; 자영자도 취업자에 포함
 자료: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다음으로, 위 종사상 지위와 함께 객관적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근로소득을 확인해 보면 다음 <그림 6-3>과 같음(방하남 외, 2007)

- 근로자로 취업한 1인 가구 가구주의 근로소득 평균은 221만원, 중위값은 180만원임. 이는 다인가구 가구주 근로소득 평균과 중위값인 325만원, 298만원 보다 낮은 수치임
- 이 같은 차이 역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원인, 즉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그림 6-3] 가구원수별 근로소득

(단위: 원)



주: 근로자 가구만 포함
 자료: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다음으로, 1인 가구 및 다인가구 가구주가 종사하는 직업 및 근로소득을 비교하면 다음 <표 6-1>과 같음

- 1인 가구 및 다인가구 가구주 직업비율을 비교해보면, 1인 가구 가구주는 다인 가구 가구주에 비해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로 더 많이 일하고 있는 반면, 다인가구 가구주의 경우 관리자, 기능원, 조립종사자로 더 많이 일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를 가구주 평균 근로소득과 비교해 확인해 보면, 전체 평균 근로소득 보다 높은 관리자의 비율이 낮고 평균 근로소득보다 낮은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위 <그림 3>의 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표 6-1〉 가구원수별 종사상 지위와 근로소득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원)

구분	가구주 직업	1인 가구 가구주 직업	다인 가구 가구주 직업	근로소득 평균	근로소득 중위값
관리자	2.40%	1.17%	2.62%	5,530,121	5,128,1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58%	17.25%	21.16%	3,875,935	3,616,214
사무 종사자	22.60%	22.10%	22.69%	3,608,897	3,423,099
서비스 종사자	7.00%	12.73%	6.00%	2,322,203	1,677,398
판매 종사자	5.78%	6.04%	5.73%	2,668,721	2,470,244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23%	0.02%	0.27%	2,549,814	2,326,42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2.42%	7.67%	13.25%	2,817,678	2,618,914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81%	10.79%	15.51%	3,117,598	2,767,608
단순노무 종사자	13.86%	22.24%	12.41%	1,438,676	1,364,186
직업군인	0.31%	0.00%	0.37%	4,201,281	4,259,494
합계	100.00%	100.00%	100.00%	3,093,159	2,788,909

주: 근로자 가구만 포함

자료: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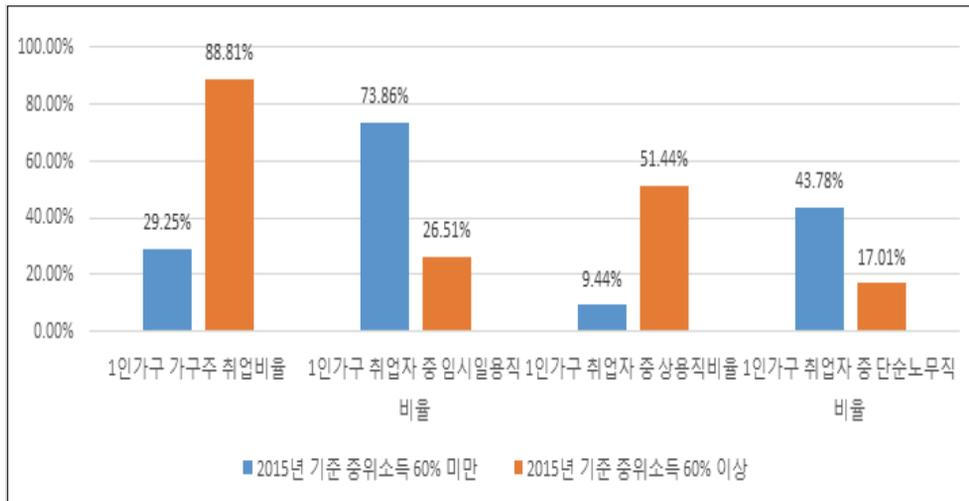
-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가구주의 취업자 비율은 다인 가구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들이 취업하거나 근로하고 있는 일자리의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자료뿐 아니라 다른 양적자료로도 이 같은 차이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어려움. 예를 들면, 부양할 가족이 필요 없거나 적은 지출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취업, 임시일용, 혹은 낮은 근로소득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이 같은 상황에서 위 결과만으로 1인 가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예를 들어, 만약 이러한 결과가 1인 가구 가구주 스스로의 선택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면, 1인 가구에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실제 성과가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덧붙여, 만약 1인 가구주가 다인 가구 가구주에 비해 취업역량자체가 낮다면, 위 결과는 가구 구성원 수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이기에 취업역량이 낮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음

- 단, 이 같은 차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1인 가구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도출되는 문제, 예를 들면, 네트워크 부족으로 현존하는 고용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거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서비스에 참여 자체가 어려운 이유 등에 기인한다면, 1인 가구를 염두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혹은 기존 프로그램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즉, 이 같은 결과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의 적절성이 결정된다고 판단됨
 -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존재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상당한 한계를 보이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의 신설 및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 판단됨. 즉, 1인 가구 자체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를 확인한 후, 현존 프로그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만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해 볼만 함
 - 한편, 본고가 1인 취약가구를 그 주요대상으로 하기에, 위 자료만으로 1인 취약계층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논의자체는 불가능함
- 이에, 본 장의 핵심 대상인 1인 취약가구의 취업자 특성을 확인하면 다음 <그림 6-4>와 같음
- 1인 취약가구, 즉 1인 가구 중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미만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취업한 비율이 약 29%에 불과하며, 취업한 경우라도 임시·일용직 비율이 70%를 상회하며, 단순노무직도 40%이상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상인 1인 가구 가구주의 89%는 취업자이며,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이 전체의 50%를 상회하고, 단순노무직 비율은 17%에 불과함
 -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임. 즉, 일을 하지 않거나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앞서 분석결과와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록 1인 가구 가구주를 특화된 고용 관련 정부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1인 취약가구의 경우 적어도 1)일을 하고자 하는 가구주에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2)1인 가구 가구

주에 보다 질 좋은 일자리(상용직)를 제공하며, 3)보다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1인 취약가구의 소득이 증진되고 궁극적으로 비취약가구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됨. 이는 일반적인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핵심정책 목표와도 동일함

[그림 6-4] 경상소득 기준 1인 취약가구 취업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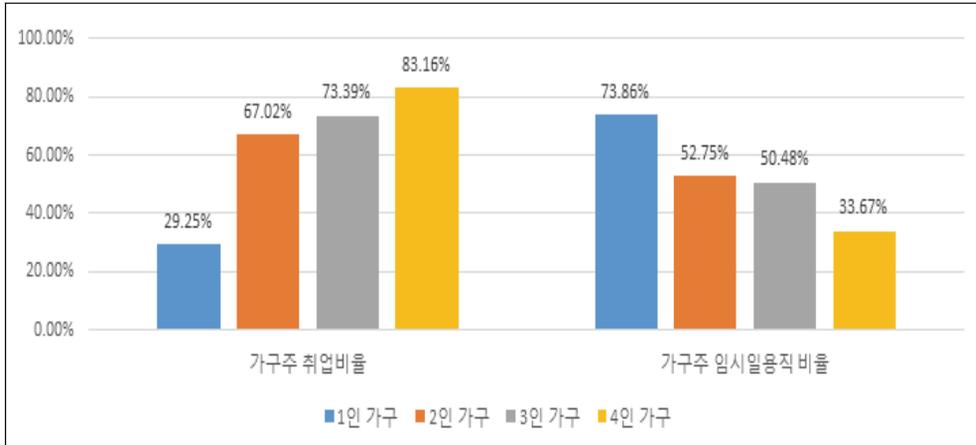


주: 기준 중위소득 60%=937,402원 (황성균, 2015); 가계동향조사 경상소득변수를 활용
 자료: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마지막으로 1인 취약 가구와 다인 취약 가구의 가구주 취업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6-5>와 같음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취약 가구 가구주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으며, 임시·일용직 비율은 가장 높음

[그림 6-5] 취약가구 가구원수별 가구주 취업특성

(단위: %)



주: 기준 중위소득 60% 1인~4인: 937,402, 1,596,118, 2,064,818, 2,533,520 (황성균, 2015); 가계동향조사 경상
소득 변수를 활용

자료: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이 같은 취약가구 가구주 취업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본 자료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인하기 위해,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해 취약가구 간단한 로짓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6-2>와 같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약가구 가구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가구원 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취업의 확률이 높으며, 1인 가구에 비해 다인가구의 가구주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음

<표 6-2> 취약가구 가구주 취업 로짓회귀분석

구분	로짓분석결과		
	승산비	표준편차	유의도
가구주 성별(더미)	0.671	0.142	
가구주 연령(더미)	0.975	0.010	*
가구주 교육	0.845	0.078	
가구원 수(더미)	8.075	1.873	**
N	898		
Chi-square	87.49 (p=0.00)		
Pseudo-R-Squared	0.152		

주: 4인 이하 가구만 포함; ** p<0.01, * p<0.05

- 본 회귀분석은 제한된 자료 범위에서 취약가구의 가구주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으나, 앞서 1인 가구 전체 통계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자료의 한계 상 모든 개인 특성을 포함하지 못했기에 포함된 자료 이외에 1인 가구라는 변수에 개인적 특성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예: 소비가 많지 않아 스스로가 선택 등) 혹은 개인의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예: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상대적 고립) 확인이 어려워, 1인 취약가구에 특화된 고용관련 정부 지원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움. 연구자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 연구는 찾기 어려움.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주요 변수들이 양적으로 측정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됨
- 단 <그림 6-5>에 따르면, 공공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 1인 취약가구 가구주가 다인가구 가구주와 같은 비율로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거나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가구의 소득증대 및 비취약가구로의 전환이라는 정책효과를 다른 다인 가구에 비해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됨. 즉, 1인 취약 가구 가구주의 취업의 성공은 비취약가구로의 전환과 보다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큼
- 이를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1인 취약가구 가구주가 공공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인가구 가구주와 같은 비율로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질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1인 취약가구 가구주가 다인가구 가구주에 비해 얼마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이들이 동일한 참여율, 취업성공률 등을 보이고 있거나 더 높은 참여율, 취업성공률 등을 보이고 있다면, 1인 가구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할 논리적 근거는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음
- 하지만, 1인 가구 가구주의 참여율, 취업성공률 등이 현저히 낮다면, 그리고 이 같은 원인이 1인 가구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1인 가구를 염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현재 프로그램 운영 방향 변화를 고려해 볼만 함. 하지만, 연구자가 확인한 범위에서 공공 고용서비스 취창업 실적을 취약가구원수별로 구분한 활용 가능한 분석결과는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추후 확보한다고 해도 이 차이가 1인 가구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됨

- 이에 더해, 1인 가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 경우라도, 현재 1인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는 그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식, 즉, 1인 가구에만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기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혹은 기존제도의 일부를 보완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필요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임

□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1인 가구 혹은 1인 취약가구 가구주는 다인가구 가구주에 비해 취업 비율, 직업 안정성 등 다양한 고용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1인 취약가구에 적용 가능한 고용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1)일을 하고자 하는 가구주에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2)1인 가구 근로자에 보다 질 좋은 일자리(상용직)를 제공하며, 3)보다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 1인 취약가구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가구의 소득증대 및 비취약가구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매우 높다 판단됨
- 단, 현 시점에서 위 실태의 근본이유 및 현존 정부정책의 가구원수별 효과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위 분석결과만으로 1인 취약가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려움. 즉, 현재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 효과가 1인 가구 가구주에 낮게 나타나고 그러한 이유가 1인 가구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명확할 때만이 1인 가구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판단됨

-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정책 및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본 장 이하에서는 현재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 효과가 1인 가구 가구주에게 낮게 나타나고 그러한 이유가 1인 가구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명확하다 가정하 뒤 논지를 전개하고자 함. 만약, 후속 연구에서 이들 가정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면, 본 장 이하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을 새로이 개발함에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함. 본 장 이하의 내용 역시 이 같은 증명되지 않은 가정에 기인한 것임을 고려, 정책 개선방안 제시에 있어 급진적 개선안 보다는 점진적·단계적 정책개선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 1인 취약가구가 활용 가능한 고용서비스와 그 방향

-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는 대상층 개입시기별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성지미 외, 2016, 미발간)
- 첫째, 개인이 취업과 창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대상층의 신체·사회·심리적 상태를 확인해 근로능력유무 혹은 근로능력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이 고용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근로능력판정 프로그램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본 정부지원 프로그램들은 개인을 분류(classification)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대인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음(Hasenfeld, 1983)
- 둘째, 위 과정을 통해 현재 일을 하지 않지만 일할 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다고 확인된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부는 기본생활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면서 취업과 창업에 이르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즉, 실업에 처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직접적인 취업

알선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결부된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이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한 부류로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통합적 사례관리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이에 포함됨(고용노동부, 2016a). 물론,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상담·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대인서비스 프로그램임

- 셋째, 위 과정을 통해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정부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또한 행하고 있음. 즉,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들도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보육교직원 소통방 운영사업 등이 이에 포함됨(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이 소통방 서비스 역시 대인서비스임
-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서비스 이외에 다른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 등을 추가해 재정지원일자리아업이라는 명칭으로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6b)
- 정부는 본 재정지원일자리아업을 1)직접일자리아업, 2)직업훈련사업, 3)고용서비스사업, 4)고용장려금사업, 5)창업지원사업, 6)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접일자리아업: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고용노동부, 2016b: 73)
 - 직업훈련사업: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고용노동부, 2016b: 74)
 - 고용서비스사업: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사업(보조공학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고용노동부, 2016b: 75)
 - 고용장려금사업: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고용노동부, 2016b: 75)

- 창업지원사업: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 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고용노동부, 2016b: 75)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고용노동부, 2016b: 75)
- 이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앞의 고용서비스와 동일한 분류를 통해 이해한다면, 직접적인 취약업지원에는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고용장려금 사업의 일부가 고용유지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판단됨
- 2016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포함된 중앙정부 사업은 총 198개 임(고용노동부, 2016b)
- 이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2016년 전체 예산규모는 15.8조원임(안주엽, 2016)
 - 예산은 2011~2016년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예산 증가율(3.8%)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임(안주엽, 2016)
 -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고용장려금사업이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사업은 예산 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금지원 사업과 서비스 지원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됨(안주엽, 2016)
 - 198개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2016년 항목별 예산구성은 <부표 1> 및 <그림 6-6>과 같음

[그림 6-6] 200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유형별 구성

(단위: 억 원)



자료: 안주엽 (2016) 청년층 고용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방향. p.15

- 위 198개 사업 중,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틀에서 일정부분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즉,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사람이 사람을 대면에 상담 절차를 거칠 수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 정도의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볼 수 있음
- 이들 사업 중 현물 및 현금중심의 사업 등을 일부 제외한 후, 앞서 제시한 본고의 기준 대상층별로 구분해 보면 <표 6-3> 및 <표 6-4>와 같음. 기준 대상층을 고려함에 있어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분류했음. 예를 들면, 일부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그 대상으로 구분했음
- <표 6-3> 및 <표 6-4>, 그리고 이 분류를 위해 정리한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대상층에 한정된 고용서비스보다는 (근로가능)전체 인구에 제공되는 고용서비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둘째, 청년층, 장년층, 장애인은 복수의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셋째, 노인층 대상의 고용서비스는 사회활동지원 혹은 자원봉사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됨
- 넷째, 운영주체와 관련, 1)직접일자리의 경우 해당 일자리의 직무특성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중앙부처가 해당사업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직업훈련의 경우 일반적 직업훈련 및 전체 직업훈련의 총괄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되(예: 실업자 및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특화된 전문기술을 요하는 훈련은 해당 훈련에 전문성을 지닌 중앙부처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취업지원의 경우 일반 근로가능인구, 일반청년·중장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되(예: 직업안정기관운영, 중장년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 특화된 계층(예: 제대군인, 탈북자, 장애인 등)은 해당계층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중앙부처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으며(단, 장애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부 담당), 4) 창업지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 다섯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이나 탈북, 출소, 제대군인, 경력단절, 장애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이들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나 실업자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한정된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는 자활사업,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의 일부사업과, 취약계층 우선참여 요건이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등 정도임. 특히, 일정 가구 수만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자가 파악한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비록 취약계층 조건에 가구당 소득이 있어 그 요건중 하나로 가구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구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취약계층 중심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매우 소수이며, 다인가구 역시 일정소득기준이 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함. 이는 고용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소득 등의 생애취약성 기준보다 고용관련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표 6-3〉 고용서비스 사업을 대상층을 기준으로 구분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고용부	보조공학기지원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용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보)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복지부	노인일자리운영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농림부	가족위생방역본부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운영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농진청	농가경영개선택진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복지부	증증장애인지업개발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할머니)			증기청	장애인지업육성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문화재청	공능방재 시스템 구축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 (R&D)	문화재청	문화재재단안전관리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보훈처	특기.복합직질관찰전유공자 복지지원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보훈처	체대군인사회복지지원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문화부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클ubs배치 지원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운영비지원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출연수지원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미래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산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GTEP)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주: 고용노동부(2016b)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대상층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은 위크넷 일자리/복지 통합검색(www.work.go.kr) 자료를 주로 활용했음. 복수의 제검과정을 거쳤으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표 6-4〉 (근로가능)연령 전체에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고용부	간실업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국토부	U-City인력양성	미래부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법무부	직업훈련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기재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보훈처	취업지원	중기청	창업지원 확대		
고용부	기술·가능인력양성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보훈처	취업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고용부	능력개발시설장비용대부 (용자)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복지부	방과후돌봄서비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및 지원체계운영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지특)	농림부	농업인교육훈련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복지부	지역자활행사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 원		
고용부	지역일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해수부	어업협정이행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제주)	농진청	귀농귀촌교육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행정부	국가기록물정리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농진청	농업인대학	산림청	숲가꾸기	행정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용부	중소기업핵심직무 능력향상지원	문화부	MICE산업육성지원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	행정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육성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행정부	정보화마을 조성(경상)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행정부	지역공동체일자리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문화부	문화콘텐츠인재양성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생물자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반)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지특)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특화교육)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 프라구조축(물산업)
교육부	배움터지킴이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여가부	청소년사회인진만구조축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 인프라구조축(화학물질관리)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화부	한국문화예술포교육진흥원지원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환경부	환경지킴이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미래부	방송콘텐츠진흥	중기청	여성기업육성		

주: 고용노동부(2016b)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대상층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위크넷 일자리/복지 통합검색(www.work.go.kr) 자료를 주로 활용했음; 특수한 제검과정을 거쳤으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1인 가구 가구주 관점에서 이상의 고용서비스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음
 - 고용취약성이 인정된 특정계층의 경우, 해당 계층에 특화된 사업이나 전달체계를 통해 고용서비스가 제공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1인 가구 가구주는 이 특정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즉, 현재까지 1인 가구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나 전달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 하지만, 비록 고용취약성이 인정된 계층이 아니더라도, 1인 가구 가구주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즉, 1인 가구 가구주는 근로가능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정 연령층에 특화된 프로그램, 이에 더해 고용취약성이 인정된 계층일 경우 해당 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까지 복수의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1인 취약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신설은 매우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함. 즉, 1인 가구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면 이는 고용서비스분야에서 매우 새로운 시도라는 점, 이미 기존에 1인 가구 가구주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1인 취약가구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이 같은 고용서비스 도입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됨
 - 이 같은 상황에서, 1인 가구가 고용에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1인 취약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정부지원 정책이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적 가정은 아마도 고립으로 인한 네트워크 부족, 여기에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등이라 판단됨. 즉, 이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는 종류는 많지만 1인 가구 가구주가 그 고용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개인 여건 상 이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고용서비스의 1인 가구 가구주에 대한 정책효과성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논리가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논리라면, 이 역시 1인 가구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충분

하지 못하다 판단됨. 이는 앞서 언급한 가정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현재의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임. 즉, 앞서 제기한 문제들은 기존 고용서비스의 일부 보완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볼 만한 문제일 수 있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서의 가정만으로는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다른 프로그램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기도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함

○ 더군다나, 현실적으로도 1인 가구에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던 일선 전달주체 또한 없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가 마련된다고 해도 보다 효과적인 일선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일선 운영에 있어 다른 계층 혹은 일반 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될 가능성도 큼

○ 즉, 1인 가구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서비스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고용서비스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1인 가구 가구주대상 고용서비스의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적 변화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만약 이 같은 시도를 통해서도 정책효과성의 제고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재확인한 후 1인 가구 특화 서비스를 설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됨

□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현 시점에서 1인 취약가구 가구주는 해당 계층만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서비스 활용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선택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1인 취약가구 가구주를 고용취약층으로 새롭게 고려해 볼 수 있는 핵심이유가 인적·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혹은 개인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 등에 있다면,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보다 기존 고용서비스의 일부 보완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됨

2. 1인 취약가구 정부지원 사업의 개선방향

- 앞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선방향은 기존 고용서비스를 1인 취약가구가 1)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2)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여러 장애를 해소하며, 3)부수적으로 고용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용 및 복지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강화) 복지서비스기관과 고용서비스 기관 간 일선 전달체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복지+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 간 이용자 중심의 보다 강화된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기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인 취약가구를 확인했을 경우, 이들을 고용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에 연계해 고용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덧붙여, 대상층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여러 현실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담당자 간 사례중심의 유기적 연계 강화가 필요
 - 구체적으로, 복지허브화사업 진행 및 고용복지+센터 확산에 있어 지역 내 공공고용서비스와 공공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강화를 핵심 중 하나로 설정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복지허브화사업은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더 나아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 보다는 사업의 전국적 확산에 보다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판단됨(예: 보건복지부, 2016d). 실제로, 고용복지+센터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예: 길현종 외, 2015). 하지만, 이들 전달체계 개편의 궁극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용복지+센터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함

- (고용서비스 제공 연계 급여의 신설 혹은 확대) 고용서비스를 받는 1인 취약가구 주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거나 자신이 욕구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연계된 급여의 신설 혹은 확대
 - 비록 사업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나, 상당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업훈련과정 동안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가 어려움. 만약 정부에서 제공되는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1인 취약가구 가구주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이에 더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면접비, 숙박비 등 직업훈련 및 구직 활동에 있어서도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1인 취약가구 가구주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자신이 원하거나 국가에서 일정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예를 들면, 고용서비스의 대표적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현재 2단계 교육훈련 참여수당이 최대 4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고용노동부, 2016a), 생계안정을 위해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많은 참여수당의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할 경우 면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www.yhf.kr), 1인 취약가구를 포함한 일부 취약계층에는 고용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와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전(全)과정에서 집단상담 등 인적 네트워크 확대 프로그램 강화) 1인 가구주의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소외감을 최소화하고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전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예로, 고용서비스 초기면담 과정에서 1인 가구 가구주에게는 집단상담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 다른 예로,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같은 과정에 수강하는 훈련생 간의 교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해 추후 공동창업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1인 취약가구 관점에서는 바람직함

-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면접훈련 등에서 구직자 간 상호 환류 (feedback)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등 1인 가구주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인적네트워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인지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강화) 1인 취약가구 가구주가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홍보강화가 필요
 - 앞서 언급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정보가 포함된 일자리 관련 홈페이지의 홍보를 강화해(예: 일모아, ilmoa.go.kr, 워크넷 일자리/복지 통합검색, www.work.go.kr),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고용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잠재적 참여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손쉽게 개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인 취약가구에 고용서비스 전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제공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물론, 이 정보는 잠재적 이용자 뿐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1인 취약가구 고용서비스 혹은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일선 고용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가 1인 취약가구의 특성을 인지하고 이들에 효과적 고용 혹은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인 가구 고용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확산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1인 취약가구 가구주를 발굴해 고용서비스에 연계하고,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취창업에 성공한 개인 혹은 전달체계 차원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의 고용-복지 전달체계 담당자 및 중앙부처 담당자에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일선 서비스 공급자의 1인 취약가구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고용-복지 연계 전달체계의 고도화, 홍보자료 개선 등 1인 취약가구 대상의 고용서비스 전반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1)전달체계 측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강화를 시도하고, 2)고용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생활안정 및 부대비용보전을 위해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혹은 수당의 확대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3) 집단상담, 교육훈련생 간의 교류, 취업지원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 1인 취약가구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4)고용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의 개편 및 홍보자료 발간 등을 통해 1인 취약가구 가구주 등이 고용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4)1인 취약가구 대상 고용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확보 및 확산해 일선의 개입역량 및 중앙차원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본 장은, 고용서비스 영역 1인 취약가구의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음.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 혹은 1인 취약가구 가구주는 다인가구 가구주에 비해 취업 비율, 직업 안정성 등 다양한 고용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1인 취약가구에 적용 가능한 고용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1)일을 하고자 하는 가구주에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2)1인 가구 근로자에 보다 질 좋은 일자리(상용직)를 제공하며, 3)보다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실제로, 1인 취약가구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가구의 소득증대 및 비취약가구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높다 판단됨
- 단, 현 시점에서 위 실태의 근본이유 및 현존 정부정책의 가구원수별 효과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위 분석결과만으로 1인 취약가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려움. 즉, 현재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 효과가 1인 가구 가구주에 낮게 나타나고 그러한 이유가 1인 가구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명확할 때만이 1인 가구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용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판단됨. 단, 기존연구 및 본 연구에서 정리한 현황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움

- 만약 언급한 내용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확인된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지는 현재 활용 가능한 정부정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1인 가구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발현한 구체적인 원인 경로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고용관련 정부지원 사업 효과가 1인 가구 가구에 낮게 나타나고 그러한 이유가 1인 가구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명확하다 가정한 후, 1인 취약가구 가구가 활용가능한 고용서비스 전반을 확인함
- 전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1인 취약가구 가구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용서비스 활용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선택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1인 가구 가구를 위한 특화 서비스나 전달체계는 없으나, 근로가능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정 연령층에 특화된 프로그램, 이에 더해 고용취약성이 인정된 계층일 경우 해당 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까지 복수의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1인 취약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신설은 매우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함. 즉, 1인 가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면 이는 고용서비스분야에서 매우 새로운 시도라는 점, 이미 기존에 1인 가구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1인 취약가구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이 같은 고용서비스 도입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됨
- 이 같은 상황에서, 1인 가구가 고용에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1인 취약 가구에 기존 정부지원 정책이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적 가정은 아마도 고립으로 인한 네트워크 부족, 여기에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등이 1인 가구 가구의 고용서비스 사업 참여율을 낮추거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라 판단됨. 즉,

이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는 종류는 많지만 1인 가구 가구주가 그 고용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개인 여건 상 이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고용서비스의 1인 가구 가구주에 대한 정책효과성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만약 이같은 가정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논리라면, 이 역시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충분하지 못하다 판단됨. 이는 앞서 언급한 가정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현재의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임. 즉, 앞서 제기한 문제들은 기존 고용서비스의 일부 보완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볼 만한 문제일 수 있음
- 즉, 1인 가구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서비스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고용서비스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1인 가구 가구주대상 고용서비스의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적 변화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만약 이 같은 시도를 통해서도 정책효과성의 제고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재확인한 후 1인 가구 특화 서비스를 설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연구는 총 네 가지의 정책개선방향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1)전달체계 측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강화를 시도하고, 2)고용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생활안정 및 부대비용보전을 위해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혹은 수당의 확대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3) 집단상담, 교육훈련생 간의 교류, 취업지원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 1인 취약가구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4)공공고용서비스 정보 홈페이지의 개편 및 홍보자료 발간 등을 통해 1인 취약가구 등이 고용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4)1인 취약가구 대상 고용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확보 및 확산해 일선의 개입역량 및 중앙차원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보다는 다양한 가정에 근거해 1인 취약가구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했음
- 1인 취약가구와 고용실태와 그 근본원인,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의 효과성대해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본 장에서는 다양한 가정에 기반해 논지를 전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음
- 이 결과, 본 장에서는 급진적 개선안 보다는 점진적·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 이상에서 제안한 개선안이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이에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본 장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실제 정책개선안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만약, 본장에서 언급된 다수의 가정에 대해 향후 추가적 연구가 지속된다면, 보다 정교한 1인 가구 대상 고용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대상, 즉, 1인 취약가구 가구주의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 7 장

주거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7

주거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1. 1인 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 생애주기/지역/소득계층별 주거실태 분석을 토대로 1인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을 도출
 - 하위집단 구분
 - 생애주기 :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 지역 : 수도권(서울)/비수도권, 도시/농촌
 - 소득계층 : 전체/중위소득 이하 가구/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주거실태 분석 항목
 - 주거수준 : 주거사용면적, 주택유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하·반지하·옥상·쪽방 거주비율, 건축년도, 주택상태, 주거환경만족도
 - 주거안정성 : 점유형태(자가/전세/월세), 평균 거주기간, 이사이유
 - 주거비부담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주거지원 정책수요
 - 가구특성 분석 항목
 - 성별, 연령, 소득·자산, 근로형태
 - 이용자료: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 1인 가구 비율

-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14년 26.8%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는 '15년 20.9%로 일반가구에 비해서는 낮음
 - 1인 가구 비율(인구주택총조사) : '00년 15.5%, '05년 20.0%, '10년 23.9%, '15년 27.2%
- 1인 가구는 중년층 36.9%, 노년층 32.4%, 청년층 30.7%로 구성되나,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57.8%로 남성가구주(42.2%) 보다 높음

〈표 7-1〉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의 1인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 중 1인 가구 비율		26.8(100.0)	20.9(100.0)
생애주기	청년층	34.0(30.7)	15.5(3.4)
	중년층	18.0(36.9)	18.0(41.6)
	노년층	40.6(32.4)	24.3(55.0)
지역	수도권	24.6(44.3)	19.9(39.9)
	서울	27.4(20.5)	22.6(17.5)
	비수도권	28.9(55.7)	21.6(60.1)
	도시	26.1(80.4)	21.3(74.6)
	농촌	30.3(19.6)	19.8(25.4)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29.3(54.7)	23.0(88.9)
	중위소득 50% 이하	45.7(31.8)	28.3(62.1)
성별	남성가구주	14.8(42.2)	11.9(43.6)
	여성가구주	66.4(57.8)	49.8(56.4)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거사용면적

-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전체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보다 약 1.4~1.5배 정도 크게 나타남
- 1인 가구는 노년층 > 중년층 > 청년층 순으로 평균 주거면적이 작아지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농촌보다 도시가 평균 주거면적이 작음

- 1인 중위소득 이하가구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에 비해 평균 주거면적이 작음

〈표 7-2〉 1인 가구 평균 주거면적

(단위 : m²)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 가구(1인당 주거면적)		33.5	33.8
1인 가구		48.6	50.7
생애주기	청년층	36.9	42.3
	중년층	49.3	44.6
	노년층	59.6	55.8
지역	수도권	44.4	44.2
	서울	40.4	38.4
	비수도권	52.0	55.0
	도시	46.0	47.9
	농촌	59.5	58.9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49.7	50.3
	중위소득 50% 이하	48.4	48.9
성별	남성가구주	41.5	45.0
	여성가구주	53.8	55.1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택유형

-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 비율이 낮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1인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노년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음
- 1인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표 7-3〉 (일반가구) 1인 가구 주택유형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전체가구		37.5	49.6	3.4	6.2	1.0	2.2	100.0
1인 가구		54.8	27.0	3.1	7.8	1.2	6.2	100.0
생애주기	청년층	48.9	22.2	2.2	12.7	0.8	13.3	100.0
	중년층	51.0	31.1	3.5	7.3	1.9	5.2	100.0
	노년층	64.2	27.3	3.4	3.6	0.9	0.5	100.0
지역	수도권	45.8	25.3	4.9	11.7	0.9	11.4	100.0
	서울	47.7	23.7	3.3	11.7	1.4	12.1	100.0
	비수도권	47.7	23.7	3.3	11.7	1.4	12.1	100.0
	도시	49.8	29.6	3.3	9.0	1.1	7.2	100.0
	농촌	75.4	16.3	2.2	2.8	1.6	1.7	100.0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61.9	24.3	3.2	6.1	1.4	3.0	100.0
	중위소득 50% 이하	65.3	22.7	3.5	5.8	0.9	1.8	100.0
성별	남성가구주	55.3	22.3	2.7	10.6	1.1	8.0	100.0
	여성가구주	54.5	30.4	3.3	5.8	1.3	4.8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7-4〉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택유형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전체가구		43.8	41.6	4.7	7.4	1.4	1.1	100.0
1인 가구		52.2	31.0	3.4	9.0	1.8	2.7	100.0
생애주기	청년층	44.7	19.4	3.3	16.2	8.1	8.2	100.0
	중년층	43.2	35.1	4.2	11.6	1.5	4.4	100.0
	노년층	59.5	28.6	2.8	6.6	1.5	1.0	100.0
지역	수도권	42.5	33.2	6.3	11.3	2.4	4.3	100.0
	서울	51.4	28.1	1.5	12.7	1.5	4.9	100.0
	비수도권	58.7	29.5	1.4	7.5	1.3	1.6	100.0
	도시	42.7	37.8	4.2	11.2	1.6	2.4	100.0
	농촌	80.2	10.7	0.8	2.6	2.3	3.3	100.0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52.7	30.9	3.8	8.8	1.5	2.3	100.0
	중위소득 50% 이하	54.9	31.1	3.4	7.9	0.9	1.9	100.0
성별	남성가구주	45.5	29.8	3.7	12.4	3.5	5.1	100.0
	여성가구주	57.5	31.8	3.1	6.4	0.4	0.8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임대주택유형

- 1인 임차가구 중 민간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88.3%로 전체 임차가구(85.8%)보다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특히 청년층 임차가구의 장·단기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은 1.4%로 중년층(13.5%) 및 노년층(21.8%)에 비해 매우 낮음
- 1인 가구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음

〈표 7-5〉 (일반가구) 1인 가구 임대주택유형

(단위 : %)

구분		민간임대	장기공공임대	단기공공임대	기타임대	계
전체가구		85.8	9.9	1.9	2.4	100.0
1인 가구		88.3	8.6	1.0	2.2	100.0
생애 주기	청년층	96.8	1.0	0.4	1.8	100.0
	중년층	84.0	11.9	1.6	2.6	100.0
	노년층	75.9	20.7	1.1	2.2	100.0
지역	수도권	89.2	6.5	1.0	3.3	100.0
	서울	88.2	6.4	1.7	3.7	100.0
	비수도권	87.2	10.9	1.0	0.9	100.0
	도시	88.4	8.6	0.9	2.1	100.0
	농촌	86.5	9.0	2.1	2.4	100.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82.2	14.1	1.4	2.3	100.0
	중위소득 50% 이하	78.2	18.9	1.0	1.9	100.0
성별	남성가구주	90.5	6.6	0.7	2.2	100.0
	여성가구주	86.0	10.7	1.3	2.1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132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표 7-6〉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임대주택유형

(단위 : %)

구분		민간임대	장기공공임대	단기공공임대	기타임대	계
전체가구		62.9	28.5	5.3	3.3	100.0
1인 가구		60.2	32.8	4.0	2.9	100.0
생애 주기	청년층	70.6	16.6	4.4	8.4	100.0
	중년층	57.9	34.0	5.5	2.5	100.0
	노년층	62.1	32.9	2.0	3.0	100.0
지역	수도권	65.5	27.5	4.8	2.2	100.0
	서울	67.0	25.2	6.6	1.1	100.0
	비수도권	54.7	38.4	3.2	3.8	100.0
	도시	59.3	33.2	4.3	3.1	100.0
	농촌	69.2	29.0	0.7	1.1	100.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58.3	35.0	3.8	2.8	100.0
	중위소득 50% 이하	55.4	37.2	4.2	3.2	100.0
성별	남성가구주	61.9	31.0	4.1	3.1	100.0
	여성가구주	58.3	35.0	3.9	2.8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높게 나타남
- 1인 일반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아짐
 - 청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인 일반가구에서 4.6%로 낮게 나타나지만 1인 장애인가구에서 24.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여성 가구주보다 남성가구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음

〈표 7-7〉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가구		5.4	8.6
1인 가구		8.7	14.2
생애주기	청년층	4.6	24.2
	중년층	8.3	15.5
	노년층	12.9	12.5
지역	수도권	6.6	12.8
	서울	10.7	13.5
	비수도권	10.2	15.1
	도시	6.9	12.0
	농촌	15.8	20.7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13.0	14.6
	중위소득 50% 이하	14.9	14.2
성별	남성가구주	9.6	18.0
	여성가구주	7.9	11.3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6인이하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구함

주3 : 장애인가구 청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본수는 10건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지하·반지하·옥상, 쪽방,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옴막·기타 거처 거주비율
 - 지하·반지하·옥상, 쪽방,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옴막·기타 거처 등의 거주비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1인 일반가구에 비해 1인 장애인가구가 높음
 - 1인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지하·반지하·옥상, 쪽방,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옴막·기타 거처 등에서 거주비율이 높음

〈표 7-8〉 1인 가구 지하·반지하·옥상/쪽방/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옴막·기타 거처 거주비율

(단위 : %)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지하·반지하·옥상 거주비율	쪽방 거주비율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옴막, 기타 거처 거주비율	지하·반지하·옥상 거주비율	쪽방 거주비율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옴막, 기타 거처 거주비율	
전체가구	2.8	0.3	0.3	3.5	0.6	0.8	
1인 가구	5.1	0.9	1.0	8.7	2.6	1.9	
생애주기	청년층	4.3	1.7	1.9	-	1.6	7.7
	중년층	7.0	0.8	1.0	10.3	3.9	2.8
	노년층	4.0	0.3	0.3	7.9	1.6	0.9
지역	수도권	11.0	1.7	2.0	20.2	2.8	3.1
	서울	15.2	3.7	4.0	26.3	2.3	2.7
	비수도권	0.4	0.2	0.3	1.0	2.4	1.1
	도시	6.3	1.1	1.1	11.5	1.9	1.5
소득계층	농촌	0.2	-	0.7	0.2	4.4	3.3
	중위소득 이하	5.1	1.3	1.5	9.3	2.3	1.9
	중위소득 50% 이하	5.3	0.7	0.7	9.7	2.3	1.6
성별	남성가구주	6.0	1.5	1.7	10.3	4.3	3.8
	여성가구주	4.5	0.4	0.6	7.4	1.2	0.5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건축년도

○ 건축년도가 30년 초과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높았으며, 1인 일반가구에 비해 1인 장애인가구가 높았음

- 1인 가구의 건축년도 30년 초과 주택에 거주비율 : 일반가구 24.5%, 장애인가구 33.0년

○ 1인 가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수도권과 농촌에 거주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가 건축년도가 30년 초과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7-9〉 (일반가구) 1인 가구 건축년도

(단위 : %)

구분		3년 미만	3~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계
전체가구		4.6	7.1	14.5	15.8	19.8	13.8	8.8	15.6	100.0
1인 가구		6.1	6.1	11.9	11.9	16.6	13.0	10.1	24.5	100.0
생애 주기	청년층	16.2	15.2	25.5	13.5	13.3	5.9	5.3	5.1	100.0
	중년층	3.7	4.0	9.4	13.8	21.0	16.7	11.6	19.8	100.0
	노년층	0.8	1.9	4.8	9.1	14.6	14.4	12.0	42.4	100.0
지역	수도권	8.5	7.1	13.6	16.8	15.5	12.6	13.3	12.5	100.0
	서울	12.7	2.3	13.5	19.5	11.4	14.0	12.7	13.9	100.0
	비수도권	4.5	5.5	10.7	8.8	17.2	13.2	8.0	32.0	100.0
	도시	7.2	6.8	13.5	12.6	16.2	14.8	11.7	17.3	100.0
	농촌	2.0	3.6	5.6	8.9	18.1	6.3	4.2	51.3	100.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2.7	3.2	6.9	9.5	17.2	15.0	11.3	34.2	100.0
	중위소득 50% 이하	3.4	2.8	6.2	8.6	16.4	14.7	10.3	37.5	100.0
성별	남성가구주	9.7	7.3	17.5	13.1	14.9	11.3	8.7	17.5	100.0
	여성가구주	3.8	5.4	8.3	11.1	17.6	14.0	10.9	28.8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7-10〉 (장애인가구) 1인 가구 건축년도

(단위 : %)

구분		3년 미만	3~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초과	계
전체가구		5.1	6.8	10.3	11.4	17.2	16.4	7.2	25.5	100.0
1인 가구		5.1	5.1	9.0	8.0	15.3	17.5	7.0	33.0	100.0
생애 주기	청년층	2.0	13.8	2.5	3.4	8.7	45.5	6.5	17.6	100.0
	중년층	5.7	5.5	10.8	9.2	18.8	21.2	5.8	23.0	100.0
	노년층	4.8	4.6	7.8	7.2	13.0	13.9	7.8	40.9	100.0
지역	수도권	6.2	4.9	10.9	9.1	19.8	21.5	5.9	21.8	100.0
	서울	5.8	1.4	6.3	6.9	18.0	24.7	3.4	33.3	100.0
	비수도권	4.5	5.3	7.9	7.3	12.7	15.2	7.6	39.6	100.0
	도시	3.6	4.8	9.3	7.3	18.5	21.9	7.6	27.0	100.0
	농촌	9.4	5.9	8.1	9.8	6.5	5.2	5.3	49.7	100.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4.7	4.8	7.4	7.6	15.0	18.1	6.8	35.5	100.0
	중위소득 50% 이하	4.0	5.2	5.4	6.9	16.4	18.9	7.1	36.0	100.0
성별	남성가구주	6.3	7.2	8.7	7.8	13.7	20.2	6.8	29.3	100.0
	여성가구주	4.2	3.7	9.1	8.1	16.5	15.6	7.0	35.7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택상태

- 현재 거주하는 주택상태에 대한 양호도는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1인 일반가구에 비해 1인 장애인가구가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도시가 농촌보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함

〈표 7-11〉 (일반가구) 1인 가구 주택상태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전체가구		3.11	3.02	3.17	3.20	3.16	2.69	3.14	3.04
1인 가구		3.00	2.91	3.04	3.02	2.97	2.66	3.01	2.88
생애 주기	청년층	3.24	3.12	3.24	3.07	3.02	2.64	3.09	2.98
	중년층	2.96	2.91	3.02	2.99	2.91	2.58	2.99	2.88
	노년층	2.82	2.71	2.88	3.00	2.98	2.76	2.93	2.79
지역	수도권	3.05	2.99	3.15	3.00	2.95	2.64	3.02	2.94
	서울	3.08	3.04	3.16	2.95	2.88	2.67	3.00	2.89
	비수도권	2.97	2.85	2.96	3.04	2.99	2.67	2.99	2.84
	도시	3.06	2.96	3.08	3.02	2.96	2.62	3.02	2.89
	농촌	2.76	2.72	2.88	3.03	3.02	2.81	2.96	2.83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2.88	2.76	2.91	2.96	2.91	2.66	2.92	2.79
	중위소득 50% 이하	2.80	2.64	2.83	2.91	2.85	2.64	2.87	2.72
성별	남성가구주	3.05	2.95	3.08	2.99	2.93	2.60	3.00	2.88
	여성가구주	2.97	2.88	3.02	3.04	3.00	2.70	3.01	2.89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4점 척도로, 1점 불량, 2점 조금 불량, 3점 조금 양호, 4점 양호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7-12〉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택상태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 부터의 안전성
전체가구		2.94	2.93	3.05	3.12	3.09	2.87	3.12	3.06
1인 가구		2.71	2.73	2.87	2.92	2.88	2.73	2.90	2.87
생애 주기	청년층	2.88	3.00	3.01	2.97	2.99	2.83	2.99	3.00
	중년층	2.74	2.74	2.90	2.94	2.89	2.64	2.90	2.85
	노년층	2.68	2.70	2.84	2.91	2.86	2.79	2.90	2.87
지역	수도권	2.64	2.66	2.92	2.80	2.70	2.59	2.83	2.80
	서울	2.62	2.72	2.88	2.72	2.68	2.56	2.82	2.78
	비수도권	2.76	2.77	2.84	3.01	3.00	2.82	2.96	2.91
	도시	2.77	2.77	2.92	2.92	2.85	2.67	2.92	2.87
	농촌	2.53	2.61	2.71	2.93	2.96	2.92	2.86	2.85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2.70	2.71	2.86	2.91	2.87	2.72	2.89	2.86
	중위소득 50% 이하	2.68	2.67	2.82	2.92	2.87	2.71	2.88	2.85
성별	남성가구주	2.63	2.67	2.84	2.80	2.76	2.66	2.81	2.78
	여성가구주	2.77	2.77	2.89	3.02	2.97	2.79	2.98	2.94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4점 척도로, 1점 불량, 2점 조금 불량, 3점 조금 양호, 4점 양호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낮으며, 1인 일반가구에 비해 1인 장애인가구가 낮게 나타남

〈표 7-13〉 1인 가구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전체가구		2.92	2.86	2.84	2.85
1인 가구		2.82	2.79	2.66	2.72
생애 주기	청년층	2.91	2.83	2.78	2.76
	중년층	2.80	2.77	2.62	2.71
	노년층	2.76	2.77	2.67	2.73
지역	수도권	2.80	2.80	2.58	2.72
	서울	2.80	2.82	2.50	2.72
	비수도권	2.84	2.78	2.71	2.73
	도시	2.84	2.81	2.68	2.77
	농촌	2.74	2.69	2.59	2.6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2.75	2.76	2.65	2.72
	중위소득 50% 이하	2.70	2.73	2.66	2.71
성별	남성가구주	2.83	2.77	2.60	2.69
	여성가구주	2.82	2.80	2.70	2.76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4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 2점 약간 불만족,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점유형태

- 1인 가구의 월세비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고, 자가비율은 낮게 나타남
- 1인 가구는 청년층 > 중년층 > 노년층 순으로 월세비중이 낮아지고 자가비율은 증가함
- 1인 가구의 월세비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도시가 농촌에 비해 높으며, 서울의 월세 비율(일반가구 52.6%, 장애인가구 63.5%)이 상당히 높음
- 1인 남성가구주는 월세비율이, 1인 여성가구주는 자가비율이 높음

140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표 7-14〉 (일반가구) 1인 가구 점유형태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전체가구		53.6	19.6	23.9	2.8	100.0
1인 가구		31.4	17.8	46.0	4.8	100.0
생애 주기	청년층	6.8	22.8	67.1	3.3	100.0
	중년층	28.8	17.0	50.3	3.9	100.0
	노년층	58.3	14.4	19.9	7.4	100.0
지역	수도권	22.0	25.4	49.2	3.4	100.0
	서울	17.2	28.2	52.6	2.0	100.0
	비수도권	39.0	11.7	43.4	5.9	100.0
	도시	23.7	21.0	51.7	3.6	100.0
	농촌	63.2	4.9	22.4	9.5	100.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39.5	15.0	39.7	5.8	100.0
	중위소득 50% 이하	39.6	17.5	35.4	7.4	100.0
성별	남성가구주	19.5	17.9	58.3	4.4	100.0
	여성가구주	40.2	17.8	36.9	5.1	100.0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월세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7-15〉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점유형태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전체가구		58.5	11.0	22.8	7.7	100.0
1인 가구		32.7	12.6	42.0	12.7	100.0
생애 주기	청년층	5.1	1.9	65.6	27.5	100.0
	중년층	19.3	13.0	57.2	10.5	100.0
	노년층	44.6	12.9	29.0	13.5	100.0
지역	수도권	21.7	21.4	48.7	8.2	100.0
	서울	14.5	19.1	63.5	2.9	100.0
	비수도권	40.0	6.7	37.5	15.8	100.0
	도시	24.3	15.9	50.2	9.7	100.0
	농촌	57.6	2.9	17.7	21.9	100.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32.5	12.8	41.2	13.5	100.0
	중위소득 50% 이하	32.7	14.6	39.2	13.5	100.0
성별	남성가구주	20.8	10.2	56.5	12.5	100.0
	여성가구주	41.9	14.4	30.7	12.9	100.0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월세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평균 거주기간

- 현 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짧고, 1인 일반가구(6.3년)에 비해 1인 장애인가구(9.13년)가 긴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거주기간은 노년층 > 중년층 > 청년층 순으로 짧아지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농촌에 비해 도시가 짧음
- 1인 가구는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고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의 거주기간이 길

〈표 7-16〉 1인 가구 평균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가구		7.74	12.03
1인 가구		6.30	9.13
생애 주기	청년층	1.36	2.93
	중년층	5.44	6.16
	노년층	12.11	11.75
지역	수도권	4.71	7.48
	서울	4.21	7.68
	비수도권	7.57	10.22
	도시	4.98	7.69
농촌	11.70	13.33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8.53	9.40
	중위소득 50% 이하	9.42	10.03
성별	남성가구주	4.70	8.09
	여성가구주	7.47	9.93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이사이유

○ 일반가구가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는 전체가구에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24.9%)’가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에서는 ‘계약 만기로 인해서(27.6%)’가 가장 높음

〈표 7-17〉 (일반가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1인 가구	생애주기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결혼으로 인한 새집 마련	1.2	0.9	2.0	0.5	0.6
세대 독립을 위한 분가	2.3	3.6	5.5	2.6	3.6
가구의 자가주택마련을 위해	17.2	8.0	1.1	8.0	14.0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4.7	1.1	0.3	1.2	1.7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8.8	14.9	11.4	17.0	14.6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5.0	7.9	2.5	7.6	13.0
계약 만기로 인해서	17.9	27.6	32.5	28.9	21.8
재개발로 인해서	2.4	2.8	0.2	1.9	6.4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24.9	21.9	21.0	19.8	25.9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주택규모 확장)	24.2	10.9	7.4	10.4	14.9
주택규모를 더 줄이려고(주택규모 축소)	5.4	8.9	4.0	11.0	10.0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5.3	5.1	1.5	4.1	9.6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변동 때문에	18.1	24.4	44.7	24.8	6.0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19.6	22.7	29.5	22.5	16.5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7.7	1.0	1.4	0.4	1.3
편익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5.3	5.5	6.6	5.2	5.1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19.2	16.1	12.0	16.3	19.4
기타	10.8	16.8	16.3	17.9	15.6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박스표시는 강제성 이사 항목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7-18〉 (일반가구) 1인 가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구분	지역					소득계층		성별	
	수도권	(서울)	비수도권	도시	농촌	중위 소득 이하	중위 소득 50% 이하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결혼으로 인한 새집 마련	1.2	1.8	0.7	0.9	0.8	1.0	0.5	0.9	0.9
세대 독립을 위한 분가	4.0	4.0	3.3	3.7	2.9	3.3	3.4	3.0	4.3
가구의 자가주택마련을 위해	6.3	5.3	9.6	7.2	13.0	10.1	8.4	5.5	10.4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1.2	1.4	1.0	1.3	0.0	1.0	0.9	0.9	1.3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15.9	16.9	13.9	14.9	14.4	18.1	19.7	14.9	14.8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7.8	8.1	7.9	8.2	6.0	11.9	12.6	7.0	8.7
계약 만기로 인해서	30.9	32.4	24.6	29.5	15.9	27.5	25.1	28.8	26.5
재개발로 인해서	2.5	3.6	3.0	2.9	2.1	4.5	5.9	1.9	3.6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20.8	26.0	23.0	21.3	25.8	24.4	26.3	20.6	23.2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주택규모 확장)	9.4	7.6	12.4	10.1	16.4	11.6	11.7	10.1	11.7
주택규모를 더 줄이려고(주택규모 축소)	9.6	9.2	8.2	8.9	8.4	10.1	9.7	8.7	9.0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4.3	3.1	5.9	4.5	8.7	6.8	8.1	3.0	7.1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변동 때문에	24.8	19.7	24.0	24.5	23.4	9.7	7.3	31.7	17.5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23.1	28.2	22.3	24.6	10.7	19.2	19.1	23.3	22.1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0.6	0.9	1.3	1.1	0.0	1.5	1.5	1.1	0.9
편의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3.1	2.3	7.7	5.6	4.6	6.1	5.5	4.1	6.8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14.4	11.1	17.7	14.8	24.5	16.9	17.6	14.4	17.7
기타	20.1	18.4	13.7	15.9	22.4	16.4	16.8	20.1	13.6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박스표시는 강제성 이사 항목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가구가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는 전체가구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32.7%)’이 가장 높았고, 1인 장애인가구에서는 ‘집세가 비싸서(28.0%)’ 가장 높았음

〈표 7-19〉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1인 가구	생애주기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소득이 줄어서	15.6	26.8	4.7	27.5	27.0
내 집 마련을 위해	32.7	13.7	0.6	9.3	18.9
집세가 비싸서	14.6	28.0	21.8	33.4	22.6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서	13.1	20.7	6.4	22.8	19.2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 사정에 의해서	2.0	2.9	0.0	2.1	3.8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2.6	0.6	0.0	0.9	0.3
주택 및 시설이 노후화 되어	8.6	8.9	0.0	6.7	11.7
보다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	29.8	11.5	4.0	9.1	14.3
독립하기 위해서	1.8	3.6	30.9	3.5	2.5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5.6	4.5	12.6	4.1	4.6
가구원 수가 변해서	4.2	6.0	3.4	5.6	6.6
직장변동(취직, 전근 등) 때문에	7.3	6.6	21.1	8.6	3.8
교통 때문에	4.4	3.7	26.3	2.5	4.0
교육여건 때문에	2.8	0.3	0.0	0.0	0.6
집 주변에 편익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3.5	1.5	3.4	1.4	1.5
재개발로 인해서	2.7	2.5	0.0	2.8	2.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장애인이 생활하기 불편해서	1.7	1.0	2.2	1.5	0.4
장기 입주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고	9.4	15.0	8.2	14.9	15.3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0.6	0.9	0.0	0.9	0.9
기타	4.4	7.0	17.4	6.9	6.7
없음	32.6	34.3	36.9	35.4	33.1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박스표시는 강제성 이사 항목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7-20〉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구분	지역					소득계층		성별	
	수도권	(서울)	비수도권	도시	농촌	중위 소득 이하	중위 소득 50% 이하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소득이 줄어서	25.7	30.7	27.8	28.5	19.6	26.7	28.6	26.6	27.0
내 집 마련을 위해	12.2	6.9	15.0	12.0	21.0	14.2	15.0	12.3	15.4
집세가 비싸서	30.3	26.5	25.9	30.4	17.6	28.6	30.9	29.8	25.9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서	26.1	40.0	15.9	23.9	6.6	22.4	22.0	22.0	19.2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 사정에 의해서	4.1	4.1	1.9	3.3	1.0	3.3	3.9	1.3	4.8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0.8	0.0	0.4	0.5	0.8	0.6	0.0	0.9	0.2
주택 및 시설이 노후화 되어	5.5	5.5	12.0	7.0	17.4	9.2	9.0	6.7	11.6
보다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	10.0	6.3	12.7	10.0	17.9	10.9	11.0	9.0	14.5
독립하기 위해서	2.2	2.6	4.8	3.0	5.9	3.7	4.3	3.9	3.2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4.7	3.0	4.4	4.1	6.3	4.4	3.6	4.1	5.1
가구원 수가 변해서	4.5	5.5	7.3	6.6	3.4	5.6	6.2	4.6	7.7
직장변동(취직, 전근 등) 때문에	5.8	4.8	7.3	4.9	14.0	3.8	1.7	10.9	1.4
교통 때문에	3.7	3.7	3.8	4.4	1.1	3.7	3.6	3.2	4.5
교육여건 때문에	0.0	0.0	0.6	0.4	0.0	0.4	0.5	0.0	0.7
집 주변에 편의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0.5	0.7	2.4	1.7	0.7	1.5	1.6	1.2	1.9
재개발로 인해서	4.6	8.0	0.6	2.7	1.7	1.9	1.1	3.5	1.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장애인이 생활하기 불편해서	0.1	0.2	1.8	1.2	0.3	1.1	1.1	1.4	0.5
장기 입주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고	15.4	9.6	14.6	16.2	9.3	16.4	16.3	13.8	16.4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0.0	0.0	1.6	1.0	0.6	1.0	1.5	0.9	0.9
기타	5.9	7.4	8.0	6.4	9.6	7.7	6.5	7.8	6.0
없음	37.7	34.4	31.3	31.9	45.2	32.8	31.4	36.2	32.1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박스표시는 강제성 이사 항목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다소 높으며, 1인 일반 가구에 비해 1인 장애인가구가 높음
- 1인 가구는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며, 1인 일반가구는 1인 장애인가구보다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비율이 높음
 - 1인 노년층의 경우 일반가구 RIR은 40.0%, 1인 장애인가구 RIR은 31.2%임
- 1인 가구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도시가 농촌보다 주거비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특히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높음

〈표 7-21〉 1인 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가구		20.3	24.1
1인 가구		21.6	29.9
생애 주기	청년층	18.9	24.1
	중년층	19.3	27.4
	노년층	40.0	31.2
지역	수도권	26.0	35.5
	서울	29.3	38.4
	비수도권	25.8	23.0
	도시	22.0	30.4
	농촌	21.5	30.0
소득 계층	중위소득 이하	41.7	31.2
	중위소득 50% 이하	46.8	30.0
성별	남성가구주	18.6	25.4
	여성가구주	32.3	32.2

주1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임대료의 중위수 /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100

주2 : 2014년 전월세 전환율 연 9.36% 활용 `14년 8월(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 월세이율)

2015년 전월세 전환율 연 7.3% 활용 `15년 8월(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

주3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거지원 정책수요

- 1인 일반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27.0%)’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꼽아, 전체가구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1.5%)’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차이를 보였음
- 1인 가구 생애주기별로는 청년층은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중노년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거주지역별로 도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로 하나, 농촌에서는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
-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이하 및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남성가구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지원’을 여성가구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표 7-22〉 (일반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

(단위 : %)

구분	전체	1인 가구	생애주기				지역				소득계층		성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수도권	비수도권(사할)	도시	농촌	중위소득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월세보조금 지원	6.5	12.4	14.5	10.9	11.7	12.8	12.8	12.1	13.4	7.8	13.4	15.1	13.0	11.9
전세자금대출지원	19.1	23.8	38.0	22.5	6.9	29.7	30.9	18.4	26.7	10.6	18.1	10.7	29.1	19.3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31.5	17.5	18.8	20.2	11.1	14.0	14.1	20.7	18.1	14.7	14.4	11.7	19.1	16.1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12.2	10.2	2.0	6.7	27.4	3.8	1.8	16.1	4.7	35.9	16.5	20.1	5.4	14.3
공공임대주택 공급	20.1	27.0	22.3	30.4	28.0	31.0	31.8	23.3	29.0	17.3	27.1	29.3	26.1	27.8
공공분양주택 공급	5.8	4.1	3.2	5.2	3.5	5.6	6.4	2.6	4.7	1.4	3.3	3.1	4.2	4.0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4.8	5.0	1.2	4.0	11.2	3.0	2.2	6.8	3.5	11.9	7.1	9.9	3.0	6.6
기타	0.2	0.1	-	0.2	0.1	0.2	-	-	0.0	0.4	0.0	0.1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 1순위만 분석

주2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1인 장애인가구는 ‘주거비 보조(31.3%)’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꼽아, 전체 장애인가구와 차이가 없었음
 - 1인 장애인가구의 경우 생애주기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주거비 보조’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전세자금 저리 용자’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표 7-23〉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1

(단위 : %)

구분	전체	1인 가구	생애주기			지역					소득계층		성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수도권	(서울)		도시	농촌	중위 소득 이하	중위 소득 50% 이하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비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구입자금저리용자	15.7	8.5	8.5	10.3	6.9	9.5	2.9	7.7	8.0	9.9	7.1	6.4	6.3	10.4
전세자금저리용자	13.1	14.0	28.0	16.2	11.0	15.0	19.4	13.3	16.2	7.4	13.3	11.2	18.3	10.4
주거비보조	31.3	38.6	29.4	33.2	44.2	32.0	24.0	43.5	35.1	49.4	40.4	42.5	33.9	42.6
주택개조 비용, 저리용자, 현물지원	15.1	11.4	5.4	9.4	13.6	6.9	4.6	14.7	8.3	20.8	11.4	11.9	11.4	11.4
장애인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7.9	9.4	8.4	10.1	8.8	11.7	16.1	7.7	11.0	4.5	9.7	10.5	10.0	8.8
장애인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의 주택공급	3.1	2.9	1.0	2.8	3.0	3.0	6.6	2.8	3.0	2.5	3.3	3.2	3.0	2.8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10.8	13.4	8.0	16.0	11.5	18.8	20.6	9.4	16.2	4.9	13.3	12.7	14.1	12.7
일반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2.7	1.8	11.2	2.0	0.8	2.9	5.4	0.9	2.2	0.4	1.3	1.6	2.8	0.9
기타	0.2	0.1	-	0.0	0.2	0.2	0.6	0.1	0.2	0.0	0.2	0.1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 1순위만 분석

주2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또한, 1인 장애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기타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40.8%)’,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26.9%)’ 순으로 나타남

〈표 7-24〉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

(단위 : %)

구분	전체	1인 가구	생애주기				지역				소득계층		성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수도권	(사읍) 비 수도권	도시	농촌	중위 소득 이하	중위 소득 50% 이하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편의시설 무료설치	16.0	16.8	19.7	19.2	14.6	20.4	25.3	14.2	19.4	9.4	17.0	15.3	18.9	15.0
전구교환 등 간단한 주택관리	6.9	8.6	14.0	7.6	9.1	8.7	5.4	8.6	7.6	11.5	8.3	7.5	7.2	9.8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	26.4	26.9	22.7	25.8	28.2	17.9	25.8	33.3	24.4	34.1	26.6	29.3	23.8	29.5
개조 및 주거이동 등 정보제공 및 상담	9.0	6.7	0.5	7.2	6.8	5.5	3.5	7.7	5.4	10.6	5.8	5.7	7.6	6.0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	41.4	40.8	43.0	40.2	41.2	47.5	40.1	36.1	43.2	34.0	42.1	42.2	42.4	39.5
기타	0.2	0.1	-	-	0.2	-	-	0.1	-	0.3	0.1	0.1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 1순위만 분석

주2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소득

○ 1인 일반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일반가구 평균 소득(280.7만원)의 약 절반 수준인 146.4만원으로 나타남

- 1인 일반가구 생애주기별로는 청년층(203.7만원), 중년층(168.0만원), 노년층(69.3만원)의 순으로 노년층의 평균 소득은 청년층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소득이 낮음

○ 1인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76.1만원)은 전체 장애인가구 평균 소득(183.5만원)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 1인 장애인가구 생애주기별로는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 중년층 > 노년층의 순으로 평균 소득이 높았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1인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이 매우 낮게 나타남

〈표 7-25〉 1인 가구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가구		280.7	183.5
1인 가구		146.4	76.1
생애주기	청년층	203.7	117.1
	중년층	168.0	94.4
	노년층	69.3	59.6
지역	수도권	181.1	87.0
	서울	178.8	88.6
	비수도권	119.2	68.9
	도시	158.8	75.1
	농촌	96.1	78.8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62.6	57.0
	중위소득 50% 이하	41.1	44.3
성별	남성가구주	189.4	93.5
	여성가구주	115.2	62.7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순자산

- 1인 가구의 순자산은 전체가구의 절반 이하이며, 일반가구가 장애인가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순자산은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가 많았음

〈표 7-26〉 1인 가구 순자산

(단위 : 만원)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가구		18,284.7	12,507.6
1인 가구		8,328.9	6,144.6
생애주기	청년층	5,207.7	3,524.5
	중년층	8,972.2	6,195.0
	노년층	10,712.3	6,253.8
지역	수도권	10,235.7	9,738.9
	서울	11,425.1	5,035.1
	비수도권	6,839.1	2,289.5
	도시	8,575.3	3,714.7
	농촌	7,312.6	13,752.5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6,438.1	3,437.6
	중위소득 50% 이하	5,307.9	3,348.5
성별	남성가구주	7,856.4	5,151.5
	여성가구주	8,673.7	7,288.3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근로형태

- 1인 일반가구의 가구주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비율이 48.3%로 가장 높으나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29.1%로 전체가구 15.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 생애주기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73.7%로 매우 높으나, 노년층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52.0%, 41.2%로 높아 생애주기별로 근로형태에 차이를 보임
 - 1인 중위소득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주의 경우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5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3.6%에 불과함
 - 1인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가구주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비중이 높음

〈표 7-27〉 (일반가구) 1인 가구 가구주 근로형태

(단위 : %)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봉사자	계
전체가구		56.5	15.3	7.5	20.4	0.3	100.0
1인 가구		48.3	29.1	3.7	18.7	0.2	100.0
생애주기	청년층	73.7	14.9	2.9	8.5	-	100.0
	중년층	38.4	37.8	5.0	18.6	0.2	100.0
	노년층	4.8	41.2	1.4	52.0	0.6	100.0
지역	수도권	56.3	26.3	5.7	11.5	0.3	100.0
	서울	59.9	24.6	6.3	8.9	0.3	100.0
	비수도권	40.2	32.0	1.7	26.1	0.1	100.0
	도시	54.1	28.7	4.4	12.7	0.1	100.0
	농촌	19.0	31.1	0.5	48.8	0.5	100.0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15.8	54.7	0.5	28.8	0.2	100.0
	중위소득 50% 이하	3.6	56.7	-	39.3	0.4	100.0
성별	남성가구주	56.1	25.2	4.4	14.1	0.2	100.0
	여성가구주	40.3	33.1	3.1	23.4	0.2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1인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근로형태는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46.1%로 가장 높아 1인 일반가구와 차이가 있음
 - 1인 장애인가구의 모든 연령층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노년층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3.2%로 매우 낮음

〈표 7-28〉 (장애인가구) 1인 가구 가구주 근로형태

(단위 : %)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봉사자	계
전체가구		32.1	29.7	6.0	31.2	1.1	100.0
1인 가구		21.5	46.1	4.5	27.6	0.2	100.0
생애주기	청년층	33.8	42.9	-	23.3	-	100.0
	중년층	31.0	44.5	7.1	17.4	-	100.0
	노년층	3.2	49.5	1.5	45.0	0.7	100.0
지역	수도권	27.0	52.7	10.1	10.2	-	100.0
	서울	33.5	54.8	8.2	3.5	-	100.0
	비수도권	17.5	41.3	0.5	40.3	0.4	100.0
	도시	26.4	50.5	2.4	20.3	0.4	100.0
	농촌	10.4	36.3	9.3	44.0	-	100.0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9.1	55.5	2.2	32.9	0.4	100.0
	중위소득 50% 이하	1.3	55.1	0.7	41.9	0.9	100.0
성별	남성가구주	25.7	46.0	6.2	21.8	0.4	100.0
	여성가구주	13.8	46.4	1.5	38.3	-	100.0

주1 : 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만 분석

주2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연령

- 1인 일반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52.3세로 전체가구 51.4세에 비해 다소 높으며, 1인 장애인가구 가구주 평균연령은 65.4세로 나타남
 - 1인 일반가구의 경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으며, 특히 농촌 거주가구의 평균연령은 65.0세로 도시 거주가구 49.2세와 비교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1인 일반가구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 또한 65.0세로 매우 높게 나타남
- 1인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의 연령이 약 10세 이상 높음

〈표 7-29〉 1인 가구 가구주 연령

(단위 : 세)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전체가구		51.4	62.6
1인 가구		52.3	65.4
생애 주기	청년층	29.2	34.1
	중년층	52.0	54.6
	노년층	75.2	75.5
지역	수도권	48.8	64.5
	서울	46.0	64.4
	비수도권	55.0	66.0
	도시	49.2	64.0
	농촌	65.0	69.6
소득계 층	중위소득 이하	61.2	66.6
	중위소득 50% 이하	65.0	68.0
성별	남성가구주	44.6	58.5
	여성가구주	57.8	70.8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성별

- 1인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별 분포는 여성(57.8%)이 남성(42.2%)보다 높으나, 전체가구의 경우 남성(76.7%)이 여성(23.3%)에 비해 높음
 - 1인 일반가구는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으며, 노년층의 경우 여성가구주 비율이 81.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1인 일반가구의 경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도시에 비해 농촌이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1인 중위소득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 비율이 각각 70.5%, 74.4%로 높음

〈표 7-30〉 1인 가구 가구주 성별

(단위 : %)

구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장애인가구)		
		남	여	계	남	여	계
전체가구		76.7	23.3	100.0	76.4	23.6	100.0
1인 가구		42.2	57.8	100.0	43.6	56.4	100.0
생애주기	청년층	58.5	41.5	100.0	79.1	20.9	100.0
	중년층	49.6	50.4	100.0	66.2	33.8	100.0
	노년층	18.3	81.7	100.0	24.4	75.6	100.0
지역	수도권	46.8	53.2	100.0	48.2	51.8	100.0
	서울	49.1	50.9	100.0	53.7	46.3	100.0
	비수도권	38.7	61.3	100.0	40.7	59.3	100.0
	도시	45.6	54.4	100.0	46.5	53.5	100.0
	농촌	28.5	71.5	100.0	35.2	64.8	100.0
소득계층	중위소득 이하	29.5	70.5	100.0	40.1	59.9	100.0
	중위소득 50% 이하	25.6	74.4	100.0	34.7	65.3	100.0

주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2.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쪽방 거주비율, 비주택 거주비율, RIR 등을 토대로 주거측면에서 취약한 1인 가구가 어떤 집단인지 살펴봄
- 자가가구의 경우 노년층의 주거수준이 청년층 및 중년층에 비해 열악하고,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노년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임차가구의 경우에도 노년층이 주거수준 및 임대료 부담 측면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취약하나, 도시 거주 노년층의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이, 농촌 거주 노년층의 경우에는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자가는 주거수준, 임차는 주거수준 및 임대료 부담 측면에서 취약
- 저소득 임차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모두 주거수준 및 임대료부담 측면에서 취약하나, 특히 청년층의 상황이 더욱 열악함

- 저소득 청년 임차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0.1%, 쪽방 및 비주택 거주비율이 각각 3.5%로 나타나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도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저소득 노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로 도시 거주가구는 임대료 부담(44.2%), 농촌 거주가구는 미달가구 비율(23.1%)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임대료 부담(44.5%), 남성은 미달가구비율(23.5%)이 상대적으로 높음
- 1인 장애인가구의 경우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의 상황이 더 열악하며, 임차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장애인 임차가구 전체와 중위소득 이하인 임차가구간에 차이가 크지 않아, 임차로 거주하는 장애인가구가 대부분 주거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7-31〉 (1인 일반가구) 계층별 주거상황

(단위 : %, 만원)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쪽방 거주비율	비주택 거주비율	RIR (중위수)	소득	순자산	
1인 가구		8.6	0.9	1.0	21.6	146.4	8,328.9	
자가	전체	8.4	-	0.2	-	121.0	16,527.3	
	중위소득 이하	11.6	-	0.3	-	62.1	12,591.0	
	중위소득 50% 이하	16.3	-	0.4	-	41.8	9,703.2	
임차	전체	8.4	1.2	1.4	21.6	160.9	4,588.0	
	중위소득 이하	13.4	2.0	2.2	41.7	64.2	2,455.7	
	중위소득 50% 이하	12.9	0.8	0.8	46.8	40.8	2,457.4	
자가	청년층	-	-	0.8	-	257.2	18,254.6	
	중년층	2.6	-	0.4	-	174.7	17,596.6	
	노년층	12.6	-	0.1	-	76.1	15,724.5	
	도시(남성 20.7%, 여성 79.3%)	5.3	-	-	-	88.7	2,1985.8	
	농촌(남성 11.0%, 여성 89.0%)	19.9	-	0.1	-	63.5	9,362.7	
청년층	전체	5.0	1.7	1.9	18.9	199.8	4250.5	
	중위소득 이하	11.2	5.3	5.3	49.8	65.4	2,043.1	
	중위소득 50% 이하	10.1	3.5	3.5	62.5	34.9	1,868.6	
중년층	전체	10.4	1.0	1.3	19.3	164.5	5333.3	
	중위소득 이하	15.9	1.2	2.0	27.0	74.7	2,091.2	
	중위소득 50% 이하	14.6	-	-	32.5	42.0	2,098.4	
임차	노년층	전체	12.9	0.5	0.4	40.0	61.0	3,986.6
		중위소득 이하(94.7%)	13.2	0.2	0.2	39.4	52.4	3,242.2
		도시(89.3%)	12.1	0.3	0.3	40.0	52.4	3,364.6
		농촌(10.8%)	23.0	-	-	33.9	52.0	2,230.1
		남성(21.9%)	22.5	-	-	39.0	56.5	3,969.3
		여성(78.1%)	10.7	0.3	0.3	41.2	51.2	3,034.4
		중위소득 50% 이하(74.5%)	13.7	-	-	42.4	42.9	2,991.0
		도시(88.8%)	12.5	-	-	44.2	42.9	3,195.6
		농촌(11.2%)	23.1	-	-	35.7	43.5	1,369.6
		남성(19.9%)	23.5	-	-	36.0	44.7	4,575.8
		여성(80.1%)	11.3	-	-	44.5	42.5	2,590.6
		도시(89.5%)	11.8	0.6	0.4	42.3	61.6	4,156.1
		농촌(10.5%)	22.3	-	-	32.5	55.7	2,545.6
남성(23.6%)	21.2	1.4	0.6	35.7	76.9	5,405.7		
여성(76.4%)	10.3	0.3	0.3	40.8	56.1	3,540.6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비주택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고시원 등)이 포함됨
 주3 : 임차는 무상을 제외하고 분석
 주4 : 임차 노년층 중위소득 50% 이하 농촌 표본수는 88건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7-32〉 (1인 장애인가구) 계층별 주거상황

(단위 : %, 만원)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쪽방거주 비율	비주택 거주비율	RIR (중위수)	소득	순자산	
1인 가구		14.2	2.6	1.9	29.9	76.1	6,144.6	
자가	전체	10.5	-	1.7	-	76.8	16,468.7	
	중위소득 이하	11.0	-	1.4	-	55.7	10,624.8	
	중위소득 50% 이하	10.9	-	0.7	-	42.4	9,407.0	
임차	전체	14.3	2.6	1.6	29.9	78.5	710.9	
	중위소득 이하	14.7	2.2	1.8	31.2	58.2	535.0	
	중위소득 50% 이하	15.9	2.6	2.1	30.0	45.7	826.2	
자가	청년층	(87.4)	-	-	-	(198.8)	-	
	중년층	3.4	-	4.6	-	120.3	-	
	노년층	12.3	-	0.8	-	61.6	-	
임차	청년층	중위소득 이하	32.1	2.2	16.1	30.2	84.7	-
		중위소득 50% 이하	(63.3)	(8.0)	(57.7)	(41.7)	(50.1)	-
	중년층	중위소득 이하	16.9	3.1	1.7	27.3	60.9	35.7
		중위소득 50% 이하	18.1	3.8	1.6	30.0	47.2	119.2
	노년층	중위소득 이하	10.8	1.1	0.8	31.2	53.0	1,594.4
		중위소득 50% 이하	12.5	1.3	1.0	29.1	47.2	2,048.1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비주택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고시원 등)이 포함됨

주3 : 임차는 무상을 제외하고 분석

주4 : 자가 청년층 표본수는 4건, 임차 청년층 중위소득 50% 이하 표본수는 11건으로 해석의 주의를 요함

주5 : 순자산에서 자가 청년층 표본수는 2건, 자가 중년층 표본수는 28건, 임차 청년층 중위소득 이하 표본수는 5건, 임차 청년층 중위소득 50% 이하 표본수는 1건으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

- 1인 자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의 경우 ‘주택개량·개보수 프로그램(55.1%)’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인 임차 중위소득 이하가구 및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로 함
- 1인 임차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중·노년층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청년층의 경우 ‘월세 보조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응답함

〈표 7-33〉 (1인 일반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단위 : %)

구분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 금대출 지원	주택구 입자금 대출 지원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기타	계	
1인 가구		12.4	23.8	17.5	10.2	27.0	4.1	5.0	0.1	100.0	
자가	전체	0.9	3.3	24.1	41.8	13.2	3.6	12.6	0.5	100.0	
	중위소득 이하	1.0	1.9	17.3	51.3	12.1	1.8	14.5	0.1	100.0	
	중위소득 50% 이하	0.2	1.1	12.7	55.1	11.0	1.3	18.5	0.2	100.0	
임차	전체	16.0	29.6	15.3	1.5	30.8	4.2	2.6	-	100.0	
	중위소득 이하	19.0	25.3	13.0	2.1	33.1	4.0	3.5	-	100.0	
	중위소득 50% 이하	23.5	16.1	11.0	2.3	38.4	4.1	4.7	-	100.0	
자가	청년층	-	6.0	27.4	23.6	34.9	8.1	-	-	100.0	
	중년층	1.6	4.6	37.5	26.9	13.9	4.8	9.7	1.0	100.0	
	노년층	0.5	2.0	14.4	54.6	9.9	2.1	16.4	0.2	100.0	
	도시(남성 20.7%, 여성 79.3%)	1.4	4.2	22.4	39.3	16.9	4.7	10.5	0.5	100.0	
	농촌(남성 11.0%, 여성 89.0%)	-	0.6	9.6	63.7	5.7	0.6	19.9	-	100.0	
청년층	전체	15.5	39.3	18.2	0.9	21.9	2.9	1.3	-	100.0	
	중위소득 이하	17.3	40.0	19.7	1.6	20.0	1.2	0.3	-	100.0	
	중위소득 50% 이하	27.5	25.6	19.0	-	27.3	0.3	0.3	-	100.0	
중년층	전체	13.5	27.1	15.4	1.6	34.4	5.3	2.7	-	100.0	
	중위소득 이하	16.1	27.9	13.4	2.0	31.6	4.9	4.1	-	100.0	
	중위소득 50% 이하	23.1	16.7	11.5	2.9	35.8	5.4	4.7	-	100.0	
임차	전체	전체	23.0	12.1	7.6	2.6	45.1	4.9	4.8	-	100.0
		중위소득 이하(94.7%)	23.4	12.0	7.6	2.7	44.6	4.8	4.9	-	100.0
	노년층	도시(89.3%)	22.1	11.3	7.6	2.6	46.7	5.2	4.6	-	100.0
		농촌(10.8%)	35.5	18.7	7.8	3.4	25.5	1.1	8.1	-	100.0
		남성(21.9%)	20.8	15.0	8.7	2.0	42.8	6.1	4.5	-	100.0
		여성(78.1%)	24.2	11.1	7.3	2.9	45.2	4.3	5.1	-	100.0
		중위소득 50% 이하(74.5%)	21.7	12.2	7.9	2.7	44.6	4.6	6.3	-	100.0
		도시(88.8%)	20.6	11.6	7.7	2.7	46.5	5.0	5.9	-	100.0
		농촌(11.2%)	31.6	17.8	9.1	2.4	27.8	1.3	10.0	-	100.0
		남성(19.9%)	19.5	14.9	5.7	1.8	46.1	5.2	6.8	-	100.0
	여성(80.1%)	22.3	11.5	8.4	2.9	44.2	4.5	6.2	-	100.0	
	도시(89.5%)	21.6	11.4	7.6	2.5	47.2	5.3	4.4	-		
	농촌(10.5%)	35.5	18.7	7.8	3.4	25.5	1.1	8.1	-		
	남성(23.6%)	20.5	13.8	9.0	1.8	44.1	6.6	4.1	-	100.0	
여성(76.4%)	23.8	11.5	7.1	2.9	45.4	4.3	5.0	-	100.0		

주1 :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으로 정의

주2 : 임차에는 무상 제외

주3 : 임차 노년층 중위소득 이하 농촌 표본수는 55건, 여성 표본수는 88건, 임차 노년층 중위소득 50% 이하 농촌 표본수는 46건, 여성 표본수는 61건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1인 장애인가구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에서, 자가와 임차 모두 구분 없이 '주거비 보조'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나타남

- 1인 장애인가구 자가 중위소득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에서는 주거비 보조 다음으로 '주택 개조 비용·저리융자·현물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 1인 장애인가구 임차 중위소득 이하 및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에서는 주거비 보조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를 필요로 하였음

〈표 7-34〉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1

(단위 : %)

구분	주택 구입 자금 저리 융자	전세 자금 저리 융자	주거비 보조	주택 개조 비용, 저리 융자, 현물 지원	장애인 전용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설계 기준의 주택 공급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일반 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기타	계	
1인 가구	8.5	14.0	38.6	11.4	9.4	2.9	13.4	1.8	0.1	100.0	
자가	전체	6.9	18.0	33.5	4.8	12.7	2.7	18.8	2.5	0.2	100.0
	중위소득 이하	9.7	4.8	48.7	25.2	2.5	4.0	4.6	0.4	0.0	100.0
	중위소득 50% 이하	9.9	4.6	51.9	23.1	1.1	5.1	3.8	0.5	0.1	100.0
임차	전체	6.4	14.9	48.0	12.4	7.9	2.3	6.9	1.3	-	100.0
	중위소득 이하	6.3	17.2	35.2	4.9	13.2	3.1	18.3	1.7	0.2	100.0
	중위소득 50% 이하	5.6	14.4	36.3	5.4	15.6	2.4	18.2	2.1	0.1	100.0

주 : 1순위만 분석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1인 장애인가구는 주거지원 프로그램2에서, 자가의 경우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를, 임차의 경우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장애인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 다음으로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으며,
- 1인 장애인가구 임차가구에서는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편의시설 무료설치'를 필요로 함

〈표 7-35〉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2

(단위 : %)

구분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편의시설 무료설치	전구교환 등 간단한 주택관리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	개조 및 주거이동 등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 서비스	기타	계
1인 가구		16.8	8.6	26.9	6.7	40.8	0.1	100.0
자가	전체	8.7	9.9	38.5	8.1	34.6	0.3	100.0
	중위소득 이하	9.3	9.2	36.9	6.9	37.3	0.3	100.0
	중위소득 50% 이하	4.0	7.2	41.1	5.7	41.5	0.5	100.0
임차	전체	21.7	7.8	20.5	6.1	43.9	-	100.0
	중위소득 이하	22.0	7.6	20.4	5.1	45.0	-	100.0
	중위소득 50% 이하	21.9	6.5	21.7	5.0	44.9	-	100.0

주 : 1순위만 분석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 주거지원 정책 현황

-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및 금융관련 지원(수요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7-36〉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구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지원 유형	수요자 보조	주거급여(임차, 자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 가정 등)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6

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은 1순위 자격이 주어짐
 - 국가유공자와 수급자인 신혼부부의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이며,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음**

〈표 7-37〉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공급대상		세부자격	자산기준
일반 공급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입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적용하지 않음
	2순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자동차: 2,494만원 이하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공급물량의 10%) 신혼부부(공급물량의 10%)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 귀한국군포로(시·도지사가 결정)	적용하지 않음 (세부 배점은 시·도 조례로 결정)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222

○ (임대료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지별로 임대료 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건설원가 및 주변 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여 시세의 30% 수준에서 최초 임대료를 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탈락시 임대료가 할증 부과되어, 수급 1차 탈락시 임대료의 30%, 수급 2차 탈락시 추가 30%, 3차 탈락시 추가 40%가 할증되며 이후 계속하여 수급 탈락시에는 계약갱신(2년마다)시 마다 임대료가 20%씩 할증됨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자산: (토지 및 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 (일반공급)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면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및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가 유리함
- 동일한 순위 시에는 미성년자인 자녀 수, 공급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의 수,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짐

- (우선공급)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및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음

〈표 7-38〉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공급대상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 공급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거 주자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 (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단독세대주는 40㎡이하만 신청가능 중증장애인은 50㎡미만까지 가능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 (2순위) 청약저축 5회이상 납입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 (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 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 이내로 혼인기간에 임신중 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로 국민임 대 입주자격 해당자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임양)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임양)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공급물량의 10%) 장애인 등(공급물량의 20%): 소득 50%이하(50㎡이하만)→장애등급→배점순서로 공급 3자녀 이상(공급물량의 10%) 국가유공자 등(공급물량의 10%)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공급물량의 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공급물량의 2%) 신혼부부(공급물량의 30%): 소득 50%이하(50㎡이하만)→청약순위→주택건설지역 거 주자→자녀수	

주: 상기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에 대한 배점기준(세대주 나이: 3점/부양가족수: 3점/거주기간: 3점/노부모 부양: 3점/
미성년자녀수: 3점/청약저축횟수: 3점/중소제조업종사자: 3점/사회취약계층: 3점/건설공제부금적립: 3점)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225

□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2013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임

- (입주대상) 자산·소득기준 및 계층별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자에 한해 평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본인)을 충족해야 함
 - 사회초년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야 함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 인근 직장에 재직 또는 대학생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결혼 5년 이내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노인계층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거주기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짧은층의 경우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표 7-39〉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최대 거주기간

공급대상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젊은 계층	대학생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6년
	사회 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6년
	신혼부부	인근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6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인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20년
노인계층		해당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6년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233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지방공사 및 LH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입주대상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전월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장애인
- (임대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30~4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로 공급

〈표 7-4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대상	입주대상	임대조건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임대기간: 2년단위 계약(최장 20년) 임대보증금: m ² 당 89,620원(약 450만원)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을 제 외한 금액(약10만원)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임대기간: 2년단위 계약(횟수제한 없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무료를 원칙, 자체 운영기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가능
	쪽방·비닐 하우스	일정소득·자산 이하의 쪽방·비닐하우스 및 고시원·여인숙·노식인 복지시설 거주 자 중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범죄피해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임대기간: 2년단위 계약(최장 20년) 쪽방, 고시원, 여인숙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을 제 외한 월세환산액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영세민 전세임대와 동일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중 적정성심사 완료 후 시·군·구청장이 LH에 통보한 자	임대기간: 2년단위 계약(최장 20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227

- (지원절차) 입주대상자가 시·군·구청에 신청, 지방공사 및 L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군·구의 추천대상자를 입주시킴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거나 이러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출신인 대학생 등에게 주어짐
 - 그 밖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

〈표 7-4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유형별 자격요건 및 주요 특징

구분	일반	소년소녀가정 등	신혼부부	대학생 전세임대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생활권내 장기 안정적인 주거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등을 지원	대학생 주거비 부담 해소
임대사업자	지자체(혹은 지방공사), LH			LH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단위 9회 재계약 (최장 20년)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최장 6년)
주택규모	85㎡ 이하 (1인 거주시에는 50㎡ 이하)			65㎡ 이하
입주자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혼인 5년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대학 소재지 외 타지 시군 출신 재학생 및 신입생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대학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주택도시보증금의 연2% 수준	만 20세까지 무상지원 만 20세 이후 전세금의 연2% 수준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기금의 연2%수준	임대보증금: 1~2백만원 수준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228

-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1인 거주시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이어야 함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고, 해당 주택의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 혹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는 지자체 혹은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됨

나. 주거비 및 금융관련 지원¹⁰⁾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하여 2015년 7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됨
-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함
 - 임차가구에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함
- (지원방법) 임차가구는 전액 현금 지급하며 자가구는 전액 현물 지급함
 - 임차가구의 최저 임차급여는 1만원이고, 자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차등 지원함
-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지원)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추가 지원)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을 추가로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 (고령자 지원)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지원 공통항목) 출입문의 통과너비 확대, 여유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및 조작이 편리하도록 출입문 손잡이 설치 및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연락장치 등(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한 항목)

10)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재정리함

□ 주거안정월세대출

-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시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금리) 금리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금리 우대 : 없음
- (대출 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임대인 통장에 지급시 연단위(최대 36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2회 연장시는 대출 최종 잔액 기준 20% 상환, 3회는 30% 상환(미상환시 기한연장 불가)

〈표 7-42〉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세부조건

구분	세부조건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만 35세 이하자 부모 또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거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 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이 불허/중단되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 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허용
대상주택	주거형태는 제한없음(단, 무허가/불법건물과 고시원을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액 60만원 이하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금리	연 1.5%
추가 금리우대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차 대출 이용시,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 0.2%p 금리 우대
지원한도	매월 30만원(720만원 한도, 최장 2년)
상환방법	3년 만기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235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대출은 기존의 전세자금 지원 제도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제도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통합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됨
- (지원대상)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보증금 및 연소득에 따라 연 2.3% ~ 2.9%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다자녀/신혼가구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노인 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 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종 10년 가능)

〈표 7-4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세부조건

구분	세부조건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임차 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대출한도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수도권은 1억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 및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2.5%~3.1% 차등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1%p 우대하고, 다자녀 0.5%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에 0.2%p를 우대하 되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1%p우대와 다자녀 등의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함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234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 우대형 보증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상품임
-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
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③ 대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간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음에 해
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봄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
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 100㎡)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연 2.3%~3.1%
 - 다자녀가구(연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신혼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연 0.2%p) 금리 우대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의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을 활용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특화하고 있음
 - 여기에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실버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행복주택을 활용한 창업지원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활용한 대학생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및 고령층용 전세임대 등이 있음
 - 또한, 이외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대학생,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청년임대리츠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공공실버주택¹¹⁾

- (정의 및 목적)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

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3.25. 및 2016.04.28.)의 내용을 재정리함

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공공실버주택: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1~2층은 복지관, 3층이상은 주거공간으로 복합 건축
- 복지관에는 건강측정 기구를 갖춘 건강관리실, 식당, 옥상 텃밭 등이 설치되고, 사회복지사·간호사가 배치되어 편리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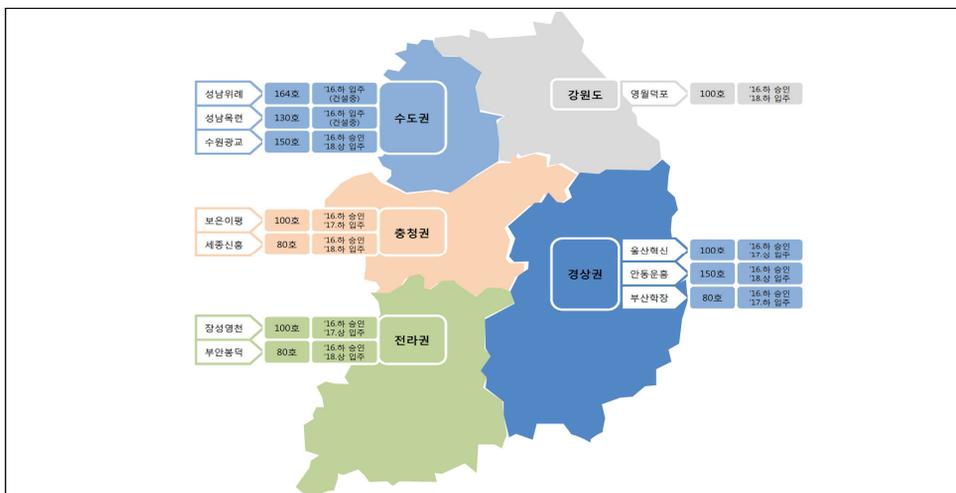
○ (입주대상)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수준의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함

-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고령자·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함

○ (특징) 민간기부금과 정부 재정을 공동 활용하여 독거노인 등 고령자를 위하여 신규로 도입('15.9.2 대책)

- 지자체로부터 사업지를 제안 받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7-1] 공공실버주택 사업 현황도(2016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2.04.)

- (향후계획) 2016년 당초 계획(8개소, 650호)보다 확대하여 11개소(1,200여호)*를 공급하고, '17년까지 공급물량도 16개소(1,300호) → 20여개소(2,000여호)로 확대할 예정임

*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 창업지원주택 12)

- (정의 및 목적) 정부는 4.28대책(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하여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입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하도록 함
- (입주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며,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특징) 지자체로부터 부지 등을 제안받는 방식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건설 중인 공공임대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창업지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신규 부지 등을 지자체가 제안하도록 함
 - 2016년 하반기부터 300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에 따라 물량을 확대할 예정임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4.28. 및 2016.06.27)의 내용을 재정리함

□ 대학생 전세임대¹³⁾

- (정의 및 목적) 대학생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학 소재지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입주대상)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수급자·보호대상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지원한도액)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이며,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해당액임
- (거주기간)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가능하며 대학생이 졸업 또는 취업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함
-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 4.28대책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함

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4.28 및 2016.6.22)의 내용을 재정리함

-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복학예정자 및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며,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
- (공급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 대학생 : 주택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인접 시·군 지역까지로 확대
- 취업준비생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함(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고령층용 전세임대¹⁴⁾

- (공급목적)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공급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호수) 2,000호(2016년 기준)
-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함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¹⁵⁾

- (정의 및 개요) 집주인이 정부의 세제 혜택과 저리 용자 등의 지원을 받아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을 허물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본인이 사는 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위탁을 주고, 시세보다 싸게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임
-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용자해주는 사업임

14) 2016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1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5.30. 및 2016.06.13.)의 내용을 재정리함

- 집주인이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
- 집주인은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용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음
- (임주대상) 무주택자로서 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함
 - (임차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 3년 이내인 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시행하여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고, 2순위 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함
- (임대료 산정 기준)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며,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함

□ 청년임대리츠¹⁶⁾

- (정의 및 목적)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아파트(60㎡ & 3억원 이하) 1천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하되 청년층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함
 - 청년리츠는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16년 1천호)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함
- (임대기간) 최장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함
 - 일반매각으로 결정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결혼 후에도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4.28. 및 2016.06.28.)의 내용을 재정리함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징) 정부는 리츠방식을 활용하여 재정투입 없이 기금 출·용자만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함
 - 리츠방식을 통해 최저소득계층 대상, 다가구·다세대 주택 위주의 매입임대 프로그램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소형 아파트로 확대할 수 있음

〈표 7-44〉 기존 다가구 매입임대와의 비교

구분	기존 다가구 매입임대	신혼부부 및 청년매입임대
지원계층	소득 2분위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 (전체 물량 일부를 신혼부부 및 청년 등에 우선공급)
주택유형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형 아파트
재원	재정 45% / 기금 50% / 입주자 5%	기금 50% / 입주자 50%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4.28.)

□ 주거비 및 금융관련 지원

- (주거급여) 2015년 7월 개편된 주거급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시 최대 380만원을 추가로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금융 관련 지원) 현재 시행 중인 주택금융 관련 지원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유리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1인 가구가 활용할 수 있음
 - (주거안정월세대출)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과 사회초년생(취업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 대학생 포함됨)인 경우 지원대상이 됨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단독세대주도 지원대상이 되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정책

□ 역세권 2030청년주택(서울시)¹⁷⁾

- (정의 및 목적)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 서울시는 2016년 3월,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세대에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행복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임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임
 - '2030 청년주택'은 20~30대 청년층을 의미하며, 2030년까지 30%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있음
 -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됨
- (주요내용)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 간소화 및 법률적 규제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임
 -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임
 -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무기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됨

17)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young_house_background/young_house_basic) 및 서울시 보도자료(2016.03.24.)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2030세대에 청년주택 대량 공급”의 내용을 재정리함

- 공공임대주택(시가 공급) : 전용 45㎡ 이하, 주변시세 60~80%
 - 준공공임대주택(민간이 공급) : 전용 85㎡ 이하, 임대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
-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 미소유자에 한하여 공급할 예정임
- 입주자 모집공고시 차량 미소유자만 가능하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입주 후라도 차량 구매시 퇴거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 (공급규모)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임대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0% 이내이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 이하, 주변시세의 60~80% 임대주택임

[그림 7-2] 역세권 2030주택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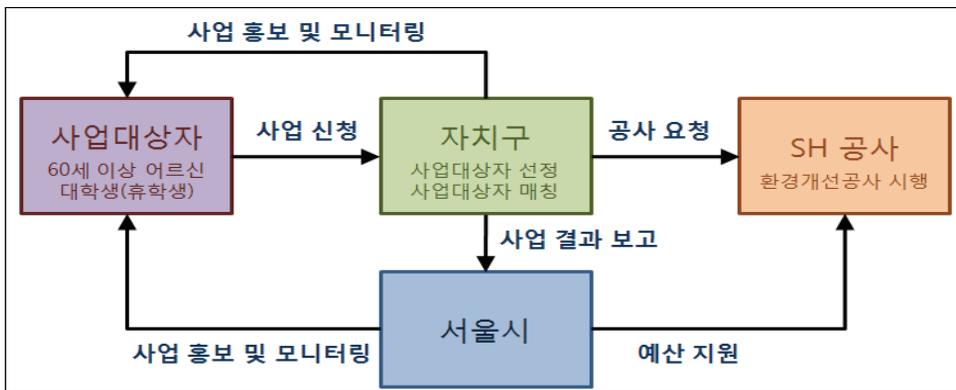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 세대융합형 룸세어링(한지봉세대공감, 서울시)¹⁸⁾

○ (정의 및 목적) 고령화와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60세 이상)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프로그램으로,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매칭, 입주 대학생이 어르신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어르신의 생활 편의를 돕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공유(Homeshare) 사업임(2014년 11월 시행)

- 어르신은 남는 방을 시세의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에 제공하고, 대학생은 청소, 장보기, 스마트기기 학습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됨

[그림 7-3] 세대융합 룸세어링의 사업방식



자료: 서울시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현황보고(2015.6)

- (입주대상) 서울시내 소재 대학의 재학 및 휴학생으로 고령자에 대한 일정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
- 자치구에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자치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 : 초기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으나 더 많은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2015년 6월 소득기준 적용이 폐지되었음

18) 서울시 보도자료(2013.02.06.),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한지봉세대공감’ 추진” 의 내용을 재정리함

- (특징) 참여요건은 서울 시내 대학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자가 혹은 전세주택 등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생에 임대 가능한 독립된 방(화장실, 거실, 주방 등은 공동 사용 가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함
 - 다만, 재가요양 등 특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됨
- (지원내용) 장년층에게 임대수입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 어르신 : 1실 당 50만원(2015년 6월 이후 1실당 100만원 이내로 강화됨) 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 공사 시행
 - 대학생 :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만원 내외 거주공간 제공
 - 임대료 및 추가 발생 비용(전기료, 수도세 등)은 주거상태 등을 감안하여 어르신과 대학생 상호간 협의에 의해 조정함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1년으로 어르신과 대학생 상호간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이 가능함
- (추진현황 및 실적)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음
 - 6개 자치구에서는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사업으로 진행중이며 4개 자치구에서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음

〈표 7-45〉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사업 추진실적(2015.6 기준)

자 치 구	현황		누계		시작년도
	어르신	학생	어르신	학생	
성 북	17	24	-	-	2015
동 작	2	3	-	-	2015
노 원	21	28	57	69	2013
광 진	10	12	18	20	2014
서 대 문	7	8	10	12	2014
동 대 문	3	3	-	-	2015
총 계	60	78	85	101	-

자료: 서울시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현황보고(2015.6)

□ 원룸형 임대주택(서울시)

○ (정의 및 목적) SH공사가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하는 원룸임대주택사업을 시행

- 원룸형 임대주택(매입형)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책' 중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급의 하나로, '12년부터 총 2,464호(134동)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함(15년 3월 기준)

○ (입주대상)

- 일반공급 : 입주 신청일 현재 1인 단독가구 무주택 세대주
 -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50%이하 소득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70%이하 소득자
-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일 현재 만 20세~40세미만의 중소기업체 청년근로자(임원제외)로서 중소기업체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
 - 1순위, 2순위 기준은 위 일반 공급기준과 동일함
 - 중소기업체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임대료 수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면적 등에 따라 상이함

〈표 7-46〉 서울시 원룸형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구분	보증금	임대료	전용면적
방화동	1,513만원~2,573만원	14.55만원~24.7만원	13㎡~23㎡
역삼동	1,993만원	12.18만원	12㎡
문정동	2,255만원	15.08만원	14㎡
사당동	(중소기업체 청년근로자) 1,389만원~1,531만원	11.59만원~12.37만원	12㎡~14㎡
	(대학생) 100만원	17.16만원~19.21만원	12㎡~14㎡

자료: SH공사 홈페이지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참조(<http://www.i-sh.co.kr/index.do>)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서울시)¹⁹⁾

- (정의 및 목적) 대학생 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매입, 건설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임(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
- (입주대상) 서울시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지방캠퍼스 불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외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 1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 2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 4순위: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4년)
- (임대가격 현황)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나, 임대료는 지역·면적 등에 따라 상이함

19) SH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www/m_157/wpge/lease_wish_intro.do) 참조

〈표 7-47〉 희망하우징 임대가격 수준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수급자)	임대료(비수급자)	비고	
다가구형	100만원	(평균) 8만원	(평균) 9.5만원	1인 1실 (평균전용 9㎡)	
원룸형		정릉동	5.81만원	6.97만원	2인 1실 (1인당 전용 7㎡)
		연남동	13.33만원	16.0만원	1인 1실 (전용 13.4㎡)
		공릉동	(평균) 7.95만원	(평균) 9.53만원	1인 1실 (평균전용 10.62㎡)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public/6442411>)

- (공급실적)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038실(원룸형 270실, 다가구형 768실)이 공급됨

〈표 7-48〉 희망하우징 공급실적(2015.9월말 기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9월	계
공급량	218	146	166	347	131	30	1,038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public/6442411>)

□ 공동체주택(서울시)

- (정의 및 목적)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와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임
 - 서울시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을 ‘공동체주택’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종류의 주택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시민들 스스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를 바꿔나가는 생활밀착형 주거모델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등에 의해 자가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었으며, SH공사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동체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남원석·박은철, 2014)

- 2014년 12월말 기준 9개 조직이 공급한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입주가구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400여 가구를 웃돌고 있음

〈표 7-49〉 서울시 소재 1인 가구 대상 공동체주택 공급현황

주택명	공급주체	가구특성	공급방식	가구수	최초공급
달팽이집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1인 가구	임차 후 재임대	13가구 (2동)	2013년
共家	두꺼비하우징	1인 가구	임차 후 재임대	7가구	2014년
함께주택	함께주택 협동조합	1인 가구	매입 후 임대	10가구	2014년
새동네	가좌330	1인 가구	건설 후 임대	6가구	2013년
우주(WOOZOO)	WOOZOO주택	1인 가구	임차 후 재임대	249가구 (15동)	2013년
통의동 집, 위드셈싱	서울소셜스탠다드	1인 가구	임차 후 재임대 / 건설후 재임대	11가구 (2동)	2013년
만리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SH공사	가족단위, 1인 가구	건설 후 임대	29가구	2015년
홍은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SH공사	1인 가구	매입 후 임대	32가구	2014년
두레주택 (세어하우스)	SH공사	가족단위, 1인 가구	매입 후 임대	8가구	2013년

자료: 남원석·박은철(2014). '1인 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p.4

- (공급방식 및 점유형태) 공동체주택은 공급방식과 거주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라 자가소유형, 사회임대형, 공공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남원석·박은철, 2014)
 - 자가소유형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자가형태로 거주하는 유형으로 '소행주'가 해당됨
 - 사회임대형은 민간이 건설, 매입, 임대를 통해 주택을 확보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유형으로 '함께 주택', '가좌330', '달팽이집', '공가(共家)', '우주(WOOZOO)', '통의동 집' 등이 포함됨
 - 주로 1인 가구, 청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고 세어하우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임
 - 공공임대형은 공공이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유형으로 홍은동, 만리동에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두레주택' 등이 이에 속함

-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하나로 공급되며,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임차인의 주택관리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7-50〉 공동체주택 유형별 주요 내용

유형	공급 및 운영	해당 주택
자가소유형	건설 후 가구별 구분 소유 계획 및 건설단계부터 입주 예정자가 참여 가구별 주거공간+커뮤니티 공간	소행주
사회임대형	건설/매입/임차 후 임대 주로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 세어하우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함께주택, 가좌330, 달팽이지, 공가(共家), 통의동 집, 우주(WOOZOO)
공공임대형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 조합이 참여 매입 후 세어하우스로 운영(두레주택)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홍은동, 만리동), 두레주택(방학동)

자료: 남원석·박은철(2014). '1인 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p.8

○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 (정의 및 목적)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입주자들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주택과 공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만3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입주대상) 만 19세 이상 ~ 35세 이하의 1인 무주택(단독세대주)인 청년
 - 1인 단독세대주 : 단독 세대주는 세대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이 분리가 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2인가구로 인정되어, 2인 이상 가구는 신청이 불가함
- (거주기간)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조합원으로 의무 미이행시 갱신계약이 불가능 함(계약기간 중 소득, 자산 기준은 충족되어야 함)
- (특징)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자는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상호 협력하여 주택협동조합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는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 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됨
- 현재 화곡동(15호) 및 홍은동(32호)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있으며, 올해 신정동에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51호가 공급될 예정임

○ 두레주택

- (정의 및 목적)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1~2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대에 맞춰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임
- 세어하우스 :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유형
- (입주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로서 세대원 전체 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10%이하이고 부동산보유기준과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을 모두 만족하며, 두레주택의 입주자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특징) 주방, 거실, 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입주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욕실 겸 화장실은 세대별 배치하고, 각 세대별 전용공간을 축소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선정된 입주자의 의견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 조성
 - 입주자간 스스로 정한 생활규약을 통해 운영하여 자율적인 주거공동체 형성
- 2013년 1월 도봉구 방학동에 두레주택 1호가 8가구에게 공급되었으며, 2015년 금천구에 홀몸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두레주택이 공급됨

□ 따복하우스(경기도)²⁰⁾

○ (정의 및 목적)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임

-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만호가 공급되며, 전체 공급물량의 70%는 신혼부부에게 공급
-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주거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음

[그림 7-4] 경기도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및 목표



자료: 경기도.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브리핑자료(2016.5.17.)

○ (입주대상)

- 대학생(안양동 따복하우스 입주자격 기준)
 -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복학 예정인 자

20) 경기도 보도자료('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2016.05.17.)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ico.or.kr/business/welfare/ddabok02.do>) 참조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무주택자
- 미혼인 자
- 자산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5항제1호의 요건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을 충족
- 사회초년생(안양동 따복하우스 입주자격 기준)
 - 경기도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인 자
 - 무주택자
 - 미혼인 자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일 것
 - 자산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5항제1호의 요건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을 충족

○ (임대조건) 안양동 따복하우스 임대조건 기준

- 임대료 : 임대보증금 360만원, 월임대료 27만원(대학생) / 29만원(사회초년생)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요건 충족시 2년 단위 재계약)
- 대학생 최대거주기간 : 6년 (다만, 입주 후 사회초년생 자격을 갖춘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사회초년생 최대거주기간 : 6년

○ (특징) 경기도는 모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며, 출산장려를 위해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전액을 지원하며, 따복하우스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가구(5만호)에게도 적용함

- 또한, 파복하우스 입주기간을 기본 6년에서 1자녀의 경우 8년, 2자녀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급계획) 신혼부부 전용 7,000호, 대학생·사회초년생·고령자 3,000호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파복하우스 1만호 공급 예정

다.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요약

- 중앙정부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을 활용하여 공급물량의 일부를 1인 가구 대상으로 특화하고 있음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실버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행복주택을 활용한 창업지원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활용한 대학생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및 고령층용 전세임대 등이 있음
 - 또한, 이외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대학생,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청년임대리츠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지방정부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서울시의 역세권2030청년주택, 세대융합형 룬세어링, 원룸형 임대주택,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공동체주택 및 경기도의 파복하우스 등을 들 수 있음

〈표 7-51〉 현행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개요

구분	1인 청년	1인 노인	1인 중년	비고	자산 및 소득 기준	
행복주택	●	●	-	(청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층) 65세 이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	●	(청년층) 청년 전세임대(대학생, 취업준비생) - 장애인가구 2순위 (노년층) 고령층용 전세임대(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실버주택	-	●	-	(노인층)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수급자 소득 수준의 국가유공자 1순위	○	
창업지원주택	●	-	-	(청년층) 1인 창조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	●	-	(청년층) 대학생 (노인층)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청년임대리츠	●	-	-	(청년층) 만 39세 이하	○	
주거안정 월세대출	●	△	●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포함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역세권 2030청년주택(서울시)	●	-	-	(청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	
세대융합형 룸세어링(서울시)	●	-	-	(청년층) 서울시내 소재 대학의 재학 및 휴학생	×	
원룸형 임대주택(서울시)	●	●	●	저소득 1인 가구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서울시)	●	-	-	(청년층) 서울시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 재학생 중 저소득가구	○	
공동체 주택	청년 협동조합 공공주택	●	-	-	(청년층) 만19세 이상~35세 이하의 1인무주택(단독세대주)인 청년	○
	두레 주택	●	●	●	무주택 1~2인 가구	○
따복하우스(경기도)	●	-	-	(청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3. 1인 가구 정책지원 방안

- 저소득 1인 청년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보조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청년 임차가구의 경우 중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 쪽방 및 비주택 거주 가구비율이 각각 3.5%로 보다 높고, 특히 소득수준은 34.9만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임대료부담 수준(RIR)은 62.5%로 가장 높음
 - 1인 임차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청년층의 경우 ‘월세 보조금 지원’(27.5%), ‘공공임대주택 공급’(27.3%)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응답함
- (정책 개선방안 1 ☞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청년 임차가구를 주거급여 특례가구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이들에 한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 (정책 개선방안 2 ☞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경기도는 모든 파복하우스(1만 가구) 및 행복주택(5만 가구) 입주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의 40%(신혼부부와 자녀 1명 출산 60% 지원, 2명 이상 출산 100% 지원)를 지원할 계획임.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정책 개선방안 3 ☞ 청년) 저소득 청년에게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공급
 - 서울시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은 비영리 민간임대주택의 성격을 지니며, 주로 1인 가구, 청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됨.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고 세어하우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임(함께주택, 가좌330, 달팽이집, 共家, 통의동집, 우주).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가구들의 주거안정 지원 역할
 - 현재의 공급주체는 대개 영세하며 사업자금 조달 및 저렴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렴한 임대료 부과 및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
 - 국토부는 2016년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해 임대주택(사회적 주택) 500가구 공급 계획 발표. 입주대상으로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검토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가 될 전망

- 국토부의 사회적 주택은 ①LH 매입임대주택 운영을 사회적 주체에 맡기는 방식(250가구) ②사회적 주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250가구)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것임
- 주택도시기금 활용, 공공토지 등 공공소유자산의 활용기회 제공, 토지임대료 인하 등을 토대로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공급(건설/매입/임차) 확대 방안 검토(단, 이와 같은 지원은 입주자격, 임대료수준 및 인상을, 임대기간 등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시행)
 - 특히 임차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계약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움. 따라서 최소 8년 이상의 임대기간(현재 국토교통부 공공지원주택의 임대기간 기준)을 보장하는 집주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혹은 주택개량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농촌 거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주택개량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관련 서비스 제공

- 농촌 거주 자가 노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9.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농촌 거주 자가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개량보수지원'(63.7%), 다음으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19.9%)로 나타남
- 농촌 거주 임차 노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2.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RIR도 32.5%(도시 42.3%)로 낮은 편은 아님. 농촌 거주 임차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월세보조금 지원'(35.5%),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25.5%)로 나타남

○ (정책 개선방안 4 ☞ 노인) 농촌 거주 자가 노년층에게는 주택개량지원과 함께 주택개량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와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혹은 민간의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간의 정합성 제고 방안 마련

- 국토부의 마이홈 상담센터, LH의 주거복지센터, SH의 주거복지센터, 비영리 민간 주거복지센터 등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센터들 간의 역할정립 혹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행정복지센터(2016.5)의 주거복지기능 강화 혹은 이러한 조직들의 네트워킹 강화, 그리고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검토

○ (정책 개선방안 5 ☞ 노인) 서비스가 통합된 공공실버주택 공급대상 지역 확대 및 민간자금 확보

- 공공실버주택은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1~2층은 복지관, 3층이상은 주거공간으로 복합 건축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복지관에는 건강측정 기구를 갖춘 건강관리실, 식당, 옥상 텃밭 등이 설치되고, 사회복지사·간호사가 배치되어 편리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수준의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함
 -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고령자·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
- 민간기부금과 정부 재정을 공동 활용하여 독거노인 등 고령자를 위하여 신규로 도입('15.9.2 대책)하였고, 지자체로부터 사업지를 제안 받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 중
 - 2016년 당초 계획(8개소, 650호)보다 확대하여 11개소(1,200여호)*를 공급하고, '17년까지 공급물량도 16개소(1,300호)→20여개소(2,000여호)로 확대할 예정

*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 SK에서 제공한 기부금(1,000억)을 토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조성이 관건이라 판단됨

□ 저소득 장애인 임차가구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 필요

- 장애인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의 상황이 더 열악하며, 임차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장애인 임차가구 전체와 중위소득 이하 및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임차로 거주하는 장애인가구가 대부분 주거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장애인 임차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일 14~16%, 쪽방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비율이 4~5%로 높고, RIR도 30% 수준으로 높은 편임
- 장애인 임차가구의 경우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1)은 ‘주거비보조’(48.0%), 주거지원(2)는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유지서비스’(43.9%)로 나타남

○ (정책 개선방안 6 ☞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임차가구 위한 ‘지원주택’ 공급방안²¹⁾ 마련

- 현재 지원주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의 유력한 방안인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지원(개인제공 혹은 운영기관 위탁),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주택제공, 아직은 계획단계의 수준이지만 지원주택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등은 지원주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모두 제약되는 측면을 지님
 - 개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제공은 서비스의 결합제공에서 큰 약점을 가지며 대상자로 장애인 범주가 누락되어 있는 등 적용대상이 매우 제약되어 있음
 - 기존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제공은 주택의 속성에 비추어 입주자 개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 휴먼서비스의 집중성이 약하다는 점, 대상으로서 장애인 범주 누락 등 적용대상이 제한적임

21)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중 일부 내용 참조

-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택제공 방식은 대상자가 포괄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공간 지원이므로 주택제공이라 할 수 없고, 입주자 개인계약이 설정되지 못함
- 기존의 지원주택 프로그램 계획은 공급물량의 증장기적인 할당이 불확실하며, 운영기관과 관련된 예산 등 책임 부서를 '자활지원과'로만 명시하여 사실상 노숙인 이외의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방침이나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내용적으로는 적용대상 범주의 확장, 지원주택을 위한 주택공급물량의 별도 설정, 주택으로서 입주자 개인계약의 적용, 관련된 복지서비스 주체를 포함한 운영기관의 설정, 공동공간의 설정 가능성 등 서비스 결합을 위한 방안의 마련 등이 고안되어야 함

제 8 장

건강행태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8

건강행태 영역 1인 취약가구 <<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1. 배경 및 목적

-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1인 가구의 취약한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은 다인 가구에 비해 낮으며, 이는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나타남(강은나와 이민홍, 2016)
 - 만성질환율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흡연율 및 음주율 역시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높게 나타남(강은나와 이민홍, 2016)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의 차이는 중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청년층은 흡연과 음주율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다수의 기존 연구가 1인 가구를 노년층에 초점을 두어 노년층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에 대해 살펴봄. 청년층이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임
 - 청년층과 장년층의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활동 부족은 만성질환 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30대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들이 장년층과 노년층에 초점을 두고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층, 특히 취약 1인 가구인 청년층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들 역시 필요함

- 생애주기에 따라 1인 가구가 다인 가구 간 어떠한 건강수준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 현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한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대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만성질환은 질환 발생 전 건강에 유익한 행동들을 실천하고 질환 발생 후 꾸준한 약물 복용, 식이조절과 운동 등 질환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개인 및 사회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 국내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은 각 30.8%, 10.5%정도이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뇌혈관 질환, 안과적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함
 - 고혈압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율은 60%정도에 불과. 이로 인해 고혈압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혈압 및 혈당 조절율은 각 42.9%, 28.5%로 보고됨(질병관리본부, 2014)

- 현재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의 초점은 고혈압과 당뇨병임. 1인 가구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 현황과 질환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 역시 제한적임

- 본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관리 수준 비교를 통하여 1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수준에의 취약성 파악
 - 1인 가구 내에서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수준에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지원 대상을 타겟화하고자 함

 - 국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중 1인 가구 지원을 구체화(specify)하는 정책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국내 정책지원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장은 위에 언급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함

○ 1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정책지원 현황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 검토

- 국내외 1인 가구 대상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 검토 실시

○ 통계자료 분석

- 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현황을 1인 가구와 다인가구 간 차이와 생애주기별(만 19~39세, 만40~64세, 만 65세 이상) 차이로 분석하였음
 - 모든 분석은 bivariate level에서 실시하였으며,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특성에서의 연령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2010년 주민등록인구를 바탕으로 연령표준화를 실시하였음
-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지표는 <표 8-1> 참조
 - 건강행태 중 만성질환 예방과 연관성이 높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차이 분석, 1인 가구 내 생애주기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 현재 국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관련 제도들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예.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따라서 본 장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수준을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표 8-1〉 건강행태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건강 행태	흡연	현재흡연율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을
	음주	월간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을
		고위험 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을
		월간 폭음률	최근 1년 동안 월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분을
	신체활동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을
		유산소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실천율	유산소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천한 분을
		근력운동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분을
		걷기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을
	활동제한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분을
	건강인지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성 질환 관리	고혈압	고혈압 유병률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을(만30세 이상)
		고혈압 인지율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을(만30세 이상)
		고혈압 치료율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을(만30세 이상)
		고혈압 조절율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을((만30세 이상)
	당뇨병	당뇨병 유병률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분을(만30세 이상)
		당뇨병 인지율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을(만30세 이상)
		당뇨병 치료율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를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분을(만30세 이상)
		당뇨병 조절율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을(만30세 이상)

○ 1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정책지원 현황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수시 개최

2.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관리 특성 분석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흡연율이 높고, 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월간 폭음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1인 가구의 활동제한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흡연과 음주는 만성질환 발생과 질환 관리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1인 가구의 흡연과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

〈표 8-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 차이

(단위:%)

구분		1인 가구(n=573)	다인 가구(n=5,402)
현재 흡연 (예)		35.1	22.5
음주 행동	월간 음주율 (1달 1회이상)	61.1	58.0
	고위험 음주율	22.4	16.3
	월간 폭음율	39.5	29.7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8.9	56.9
신체활동	근력운동 실천율	20.0	21.0
	유산소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실천율	16.4	15.6
	걷기 실천율	44.5	41.2
삶의 질	활동제한율	13.4	6.2
	주관적 건강인지율	28.8	31.6

주1: 205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하였음

주2: 가중치(weight)을 적용한 비율

○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만성질환 관리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당뇨병 유병률은 낮지만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율을 함께 살펴보면 다인 가구와 비율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또한 1인 가구는 질환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치료율과 조절율에서 다인 가구보다 낮게 나타남

- 고혈압 유병률은 당뇨병과 달리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고혈압 치료율과 조절율은 당뇨병과 유사하게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조절율은 약물복용과 식이조절, 신체활동 등 질환 관리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1인 가구의 질환 관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약물 복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고혈압과 달리 당뇨병은 식이조절과 신체활동 등 질환 관리가 더욱 중요한 질환임. 당뇨병을 가진 1인 가구의 당뇨병 조절율이 23.2%로 다인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p < .05$) 나타나므로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²²⁾

〈표 8-3〉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만성질환 관리 특성 비교

(단위:%)

구분		1인 가구(n=573)	다인 가구(n=5,402)
고혈압 유병률	정상	34.5	52.7
	고혈압 전단계	25.4	24.9
	고혈압	40.1	22.4
고혈압 인지율 (예)		66.7	65.4
고혈압 치료율 (예)		61.9	62.1
고혈압 조절율 (예)		41.6	49.4
당뇨병 유병률	정상	59.1	70.4
	공복혈당장애	27.3	21.0
	당뇨병	13.7	22.4
당뇨병 인지율 (예)		69.6	66.4
당뇨병 치료율 (예)		57.1	59.8
당뇨병 조절율 (예)		23.2	29.7

주1: 가중치(weight)을 적용한 비율임

- 추가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관리에 중요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신체활동 실천을 비교해 보았을 때, 1인 가구인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들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근력운동 실천율 및 걷기 실천율이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남

22) 고혈압 조절율의 경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표 8-4〉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의 신체활동 실천 차이

(단위:%)

구분	고혈압		당뇨병	
	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2.4	49.9	48.8	48.7
근력운동 실천율	16.6	22.2	15.6	21.1
걷기 실천율	38.6	34.4	28.6	38.6

주1: 가중치(weight)을 적용한 비율임

□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관리 특성 분석

○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를 비교한 결과 생애주기별로 다른 건강행태를 보임

-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월간 폭음율은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활동제한율과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노년층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흡연과 음주비율은 청년층에 비해 낮으나 질환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짐을 알 수 있음
-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개입이 필요함.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며, 노인가구의 신체활동실천을 개선하고 활동제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 노년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음

〈표 8-5〉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단위:%)

구분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현재 흡연(예)		45.2	35.2	9.7
음주	월간 음주율 (1달 1회이상)	75.8	61.6	23.4
	고위험 음주율	27.8	23.6	5.6
	월간 폭음율	52.5	39.5	7.6
신체활동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68.5	58.5	36.5
	근력운동 실천율	25.5	20.0	6.6
	유산소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실천율	22.8	15.5	3.3
	걷기 실천율	47.9	44.0	37.8
삶의 질	활동제한율	4.6	17.9	21.0
	주관적 건강인지율	30.3	33.0	12.2

주1: 205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하였음

주2: 가중치(weight)을 적용한 비율

○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관리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당뇨병 유병률은 노인 1인 가구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장년층보다 치료율과 조절율이 높게 나타남. 장년층인 1인 가구는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율이 노인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특히 조절율의 경우 노인 1인 가구의 약 절반 정도의 수준임. 병 질환 관리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혈압 역시 당뇨병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노인 1인 가구의 고혈압 유병율,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장년층의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은 노인 1인 가구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8-6〉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관리 특성 비교

(단위:%)

구분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당뇨병 유병률	정상	78.3	46.3	55.1
	공복혈당장애	19.8	36.3	23.8
	당뇨병	1.9	17.4	21.2
당뇨병 인지율 (예)		NA	65.0	80.7
당뇨병 치료율 (예)		NA	49.1	70.4
당뇨병 조절율 (예)		NA	15.6	33.0
고혈압 유병률	정상	58.5	33.6	16.8
	고혈압 전단계	28.0	28.5	20.7
	고혈압	13.5	37.9	62.6
고혈압 인지율 (예)		NA	40.7	85.1
고혈압 치료율 (예)		NA	38.9	82.2
고혈압 조절율 (예)		NA	23.9	57.9

주1: 가중치(weight)을 적용한 비율임

주2: 청년층의 당뇨병과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은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자수가 각 1명, 9명으로 사례수가 작아 해석하는게 무리가 있어 'NA'로 표시하였음

- 이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보유한 장년층인 1인 가구가 이들 질환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비율도 낮고 약물순응, 식단 조절, 꾸준한 신체 활동 등 질환을 관리하는 비율도 낮은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장년층인 1인 가구가 자신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 정책현황

□ 만성질환 예방 관련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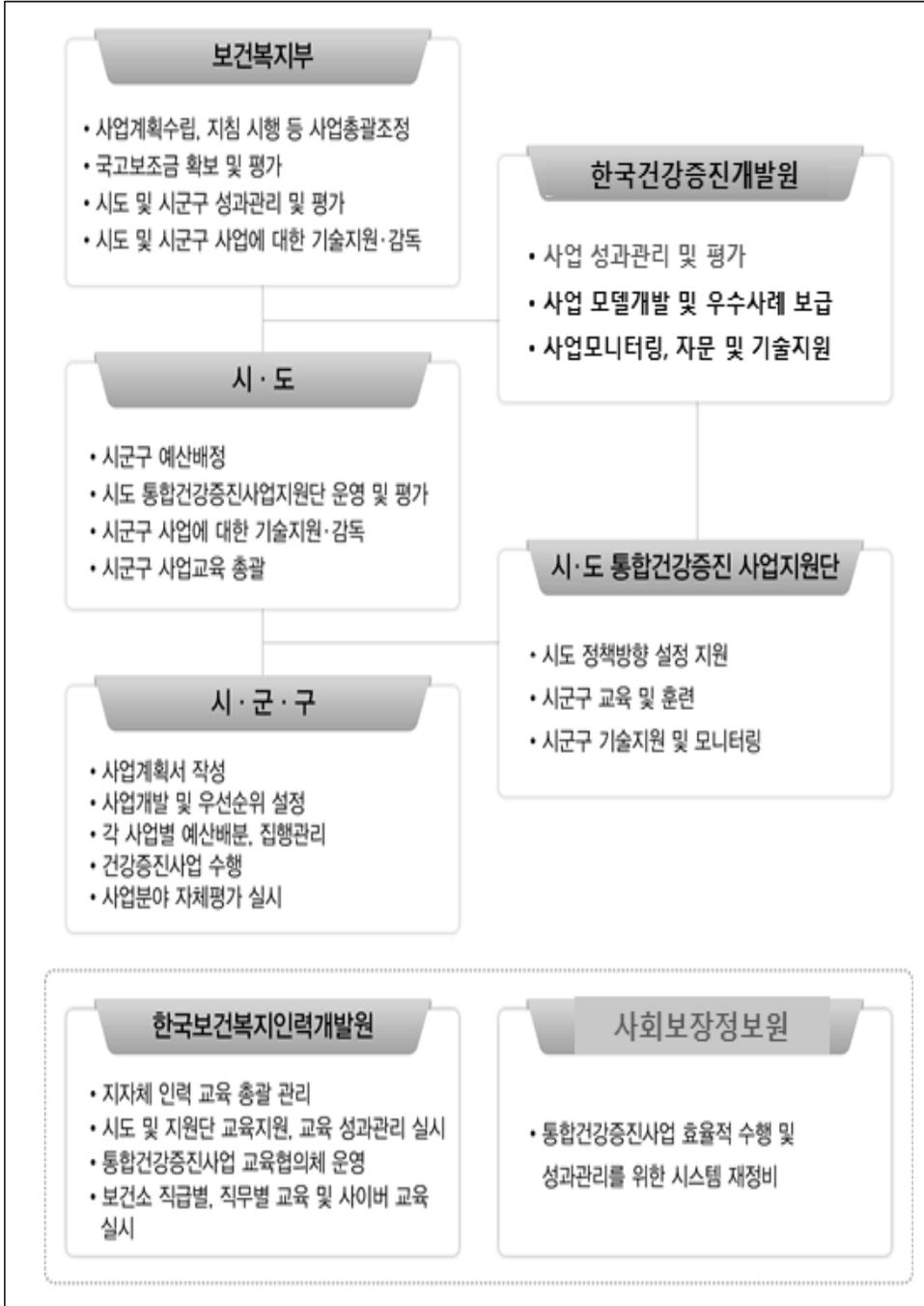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²³⁾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분야: 13개 영역²⁴⁾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1)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2)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3) 치매검진사업은 필수사업임
 - 사업방법: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문제를 선정하여 사업영역과 사업량을 선택함. 기본 개별사업 간 경계를 없애고 개인별, 생활별, 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성 부여함. 지자체(보건소)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추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과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기초 지자체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음

23)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설명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함

24)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그림 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설명회 자료집. p7에서 발췌함

- 사업들을 살펴보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영양관리 사업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건강식생활 사업과 치매검진사업임. 청년층과 장년층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음
- 실버건강식생활 사업은 식품구입과 조리 등을 소홀히 하기 쉬운 독거 노인에게 영양교육 등 식생활관리서비스(공동부엌 실습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및 과일, 우유 등의 건강간식도시락 제공하는 것임
- 치매검진사업은 치매 검진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치매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 위험노인에 대해 검진을 강화하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등에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구강검진 등을 시행함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부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수령한 뒤 검진기관에서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됨. 1차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 결과가 통보된 뒤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또는 만 70세, 만 74세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판정자를 대상으로 2차 건강검진이 실시됨

〈표 8-7〉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1차 건강검진	2차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 및 상담, 문진 - 계측검사(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 및 혈압측정) - 건강위험평가(HRA) - 흉부방사선 촬영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구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혈압검사(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검사(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인지기능장애(70세, 74세 1차 수검자(문진) 중 고위험군 대상)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생애전환기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40세와 66세인 대상자에 한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구강검진 등 B형 간염,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실시함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로 지출됨

〈표 8-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항목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학적검사: 건강상태 등 - 혈압, 신체검사 - 진단의학검사(HDL콜레스테롤 등 12항목)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등 - 골다공증 검사(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 암검사: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건강진단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생활습관 검사: 평가 및 처방 - 우울증검사(1차 수검자(문진) 중 고위험군 대상 설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KDSQ-C(66세 1차 수검자(문진) 중 고위험군 대상 설문) -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 보건교육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율을 보면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2008년 50.6%에서 2014년 73.6%로 증가하였으며,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2008년 58.5%에서 2014년 78.1%로 증가하였음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1인 가구를 특화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님. 하지만 1인 가구의 건강검진 수검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건강검진의 목적이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하는 것이므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집단을 파악하고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별 수검율 외에 가구형태별 수검율 파악이 필요함

□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정책 현황²⁵⁾

○ 국내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정책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있음. 그 외에도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수가 시범사업’ 등이 있음

- 비록 만성질환수가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1인 가구와 같은 의료이용자에게 혜택이 가게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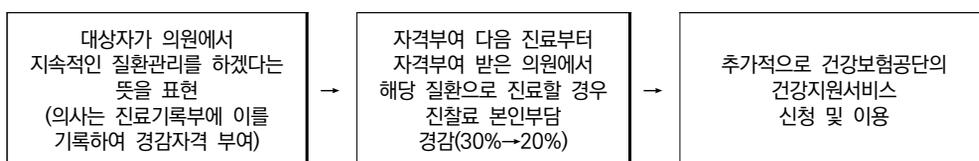
○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사업 내용: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본태성고혈압), 당뇨병(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찰료 본인부담을 줄여주고 의료기관 대상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업임

25)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박은자 외(2016). 만성질환 의료이용 분석과 개선방안: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함

-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 → 20%으로 조정되어 약 920원 가량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됨
- 이용 절차: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질환관리 의사를 밝힌 다음 해당 질환으로 해당 의원을 이용할 시에 적용되는 서비스로서, 별도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가 제공됨
- 2014년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30건 이상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63.7%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전체 고혈압 및 당뇨 진료건의 31.7%가 만성질환 관리제 참여로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2)²⁶⁾

[그림 8-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이용절차



자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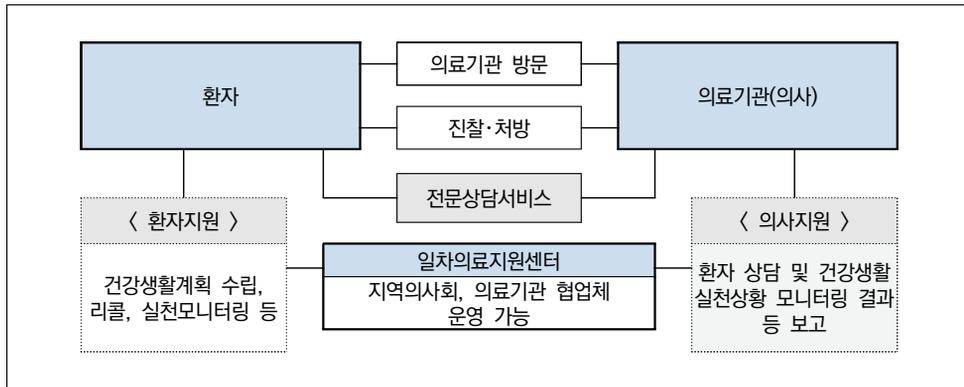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사업 내용: 일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치료과정에서의 역할과 참여수준을 강화하고 환자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함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모형은 다음과 같음(그림 8-3참조) 의사는 진찰, 처방과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²⁷⁾를

26) 보건복지부(2012).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현황 및 실적

통한 추가적인 건강교육상담이나 동기강화 상담이 제공됨

-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일차의료기관 의사에게 등록급여, 교육상담급여, 연계급여(센터의뢰시), 종합상담 급여가 제공되며, 의사의 예방교육 및 상담에 최초로 수가가 부여되는 사업형태임

[그림 8-3]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모형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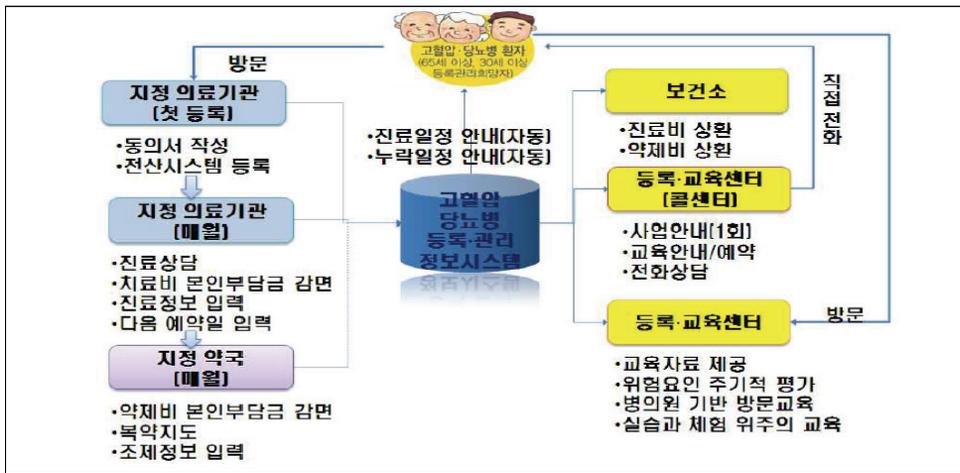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2007년에 수립함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를 향상시키고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중증질환 발병시기 지연,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함
- 대구광역시(2007년), 광명시(2009년)의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사업 지역이 확대된 사업으로 2015년 19개 자치단체 25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음
- 병의원에서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개인별로 전산등록하면,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병원방문 예약일, 혈압 및 혈당 조절 상태, 보건교육 일정 등을 안내함

27) 지역의사회가 운영 주체로서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개인별 맞춤형 보건교육 제공, 합병증 발생, 거동장애로 인해 장기간 병의원 방문 어려울 시, 보건소를 통한 개별 전화상담과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의료기관에서 등록관리.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등록관리 시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3500원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함. 30-64세 환자 대상 별도 본인부담금 지원은 없음

[그림 8-4] 비용상한 및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절차 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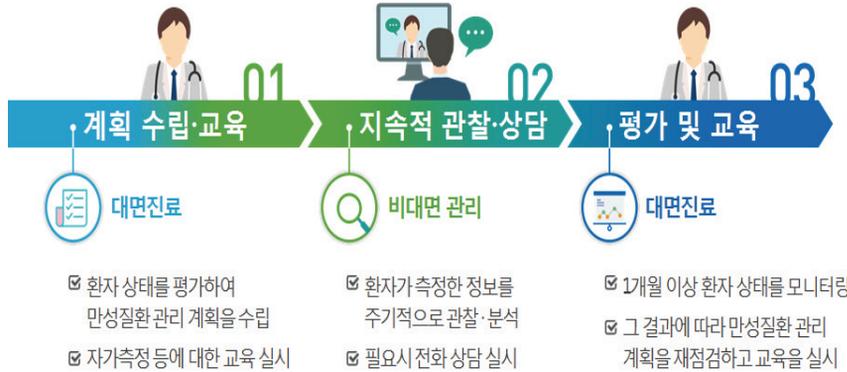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6). 2016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p.23.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사 수가를 참조하여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수가 지급 계획
- 계획수립·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전화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횟수 등에 따라 수가는 1만원~3.4만원 수준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 본인부담 없음



○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정책들은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각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선정방식, 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약물처방과 관련하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약값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약값 역시 지원됨
- 또한 이 제도들은 약물 처방과 검사 이외에 혈압 및 혈당체크, 식단관리 및 신체활동 등 신체활동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서도 차이가 있음.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 의사에게 이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보건소에 이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모든 시범사업들은 만성질환, 특히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음

○ 대다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님. 일부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연령 기준이 있으나 가구형태나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님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65세 미만의 청년 및 중장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혜택이 가는 구조임
- 하지만 동일한 의료기관이 두 개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임. 예를 들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의료기관이지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함.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65세 미만 환자는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2. 정책 지원 방안

- (정책대안 1 ☞ 청년/중장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1인 취약가구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확대
- 청년과 중장년 1인 취약가구 대상 1:1 맞춤형 금연·금주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대학 내 금연 클리닉과 금주 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보건소와 연계 체계 구축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직장이 있는 1인 가구 대상 토요일에 운영되는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 금주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금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확대 운영
- 중장년 만성질환 보유 1인 취약가구 대상 1:1 맞춤형 신체활동 및 영양 상담 및 교육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장년층 고혈압, 당뇨병 유병 1인 가구의 고혈압,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이 노년층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질환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신체활동 및 영양 관련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 있음

□ (정책대안 2 ☞ 청년/중장년/노인) 1인 취약가구 대상 건강검진수검률 증진 및 건강검진 수진 이후 만성질환 관리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성

○ 현재 가구 형태별로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수검률이 파악되지 않음. 1인 가구 내 어떤 집단의 수검률이 낮은지 파악하여 수검률 증진을 위한 접근방법 모색 필요

- 1인 가구 내 수검률이 낮은 집단 및 지역 파악 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특화사업’과 같은 전국 모형 개발 및 보급

○ 건강검진 후 의료기관으로의 의뢰체계가 없어 건강검진과 질병치료·관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김윤, 2013)

- 1인 가구의 건강검진수검률을 확인하여, 1-2차의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당뇨병 확인 시 이후 보건소, 공단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으로 연계 후 관리하는 체계구축

□ (정책대안 3 ☞ 청년/중장년) 만 30세 이상 64세 이하 청년 및 중장년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인 1인 취약 가구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혹은 당뇨병 관리 시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일부 감면

- 앞서 정책 위험요인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30-64세 청년 및 중장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질환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중 1인 취약 가구로 한정하여 치료비 및 약제비를 일부 지원하고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관리 교육 및 서비스로의 우선적 연계

- 30-64세 청년 및 중장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등록 환자의 경우 이미 약 920원의 진료비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의

원급 만성질환 관리제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고혈압과 당뇨병은 본인부담금 중 약제비의 비중이 높은 질환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달리 약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64세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1인 취약가구 대상 약제비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함

□ (정책대안 4 ☞ 노인) 만성질환 보유 저소득 및 차상위 재가 허약노인 1인 가구 대상 보건-복지 통합 프로그램 제공 모형 개발 및 운영

○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이 없고 만성질환을 보유한 저소득 및 차상위 재가 허약노인 1인 가구 대상 보건-복지 통합 프로그램(Adult day healthcare) 제공 모형 개발 및 운영

- 미국의 PACE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면서 중증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adult day healthcare를 제공함. Medicaid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Medicare 대상자는 비용의 20% 본인부담이 있음. 주간보호와 달리 PACE 프로그램은 시설 내 closed community clinic 이 설치되어 있으며 primary care physician이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함. 안과, 치과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PACE 소속 의사들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

- 미국 PACE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은 1인 가구임

○ 보건소와 노인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 내 노인 관련 유관 자원과 연계 체계 구축

제 9 장

정신건강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9

정신건강 영역 1인 취약가구 <<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우울수준 역시 매우 높음. 하지만 그동안 1인 가구의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통계청의 2015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5)
 - 4주간의 우울감의 경우 29개국 평균이 10.7%인 반면, 한국인의 경우 13.2%로 나타남
- 자살사망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0년 21.2명에서 2014년 27.3명으로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의 대다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 노인의 우울, 자살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며, 청년층이나 장년층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임
-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노년층의 1인 가구형태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들(예를 들면,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증, 그리고 자살 생각)에 취약하다고 보고함(한삼성 외, 2012)
 - 한삼성, 강성욱, 그리고 정성화 (2012)의 연구에서 부부노인과 비교하여 독거노인의 경우 4배정도 높은 확률로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3배정

도 높은 확률로 자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다수의 연구들이 청년층의 취업,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높은 자살사망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김남순 외, 2013), 장년층의 육아나 실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 연구 역시 1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님
 - 정신건강 문제에서 1인 가구는 다인가구와 달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정신건강문제를 가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인 가구에 특화된 정신건강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현재의 정신건강증진 정책들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들은 매우 제한적임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주택, 생활 불편이나 치안과 관련된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음(변미리, 2014)
 - 서울시의 1인 가구 정책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 관련 제도와 정책도 고려를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1인 가구의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1인 가구 지원정책은 노인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신건강 영역에 있어서 1인 가구의 특성(성별, 생애주기별, 학력, 소득)을 파악하여 특히 취약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신보건 관련 정책은 부족함
 - 1인 가구의 정신건강 문제 파악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정책 현황들을 파악한 후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 비교를 통하여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에서의 취약성을 파악
 - 1인 가구 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지원 대상을 타겟화하고자 함
- 국내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중 1인 가구 지원을 구체화(specify)하는 정책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국내 정신건강증진 정책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장은 위에 언급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함

-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 및 정책지원 현황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 검토
 - 국내외 1인 가구 대상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 검토 실시
- 통계자료 분석
 - 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 현황을 분석하였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 제6기 (2013-2014)」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을 분석하였음. 본 연구는 19세 이상의 성인 총 5,976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분석은 기본적으로 1인 가구와 다인가구 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을 생애주기별(만 19~39세, 만40~64세, 만 65세 이상)로 분석하였음. 또한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분석 역시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표들을 고려하였음

〈표 9-1〉 정신건강 지표와 정의

변수	정의
스트레스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
우울증상 경험율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적이 있습니까
우울장애유병률	우울증선별도구(PHQ-9) 총점이 10점 이상인 비율
자살생각율	최근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
자살계획율	자살을 생각한 사람 중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살시도율	자살을 생각한 사람 중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 차이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경험율 및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율, 자살계획률, 자살시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남. 일부 지표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함. 즉,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표 9-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 차이

(단위: %)

구분	1인 가구	다인가구
스트레스 인지율(2014)	29.7	25.0
우울증상 경험율(2013)	15.2	10.2
우울장애 유병률(2014)	13.1	6.1
자살 생각률(2013)	10.6	4.2
자살 계획율(2013)	35.1	23.6
자살 시도율(2013)	11.5	8.6

주1: 연령표준화를 통하여 산출한 유병률임. 2013년도의 1인 가구(n=531) / 비1인 가구 (n=5,582). 2014년도의 1인 가구(n=573) / 비1인 가구(n=5,402)

주2: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의 경우 연도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문항이 달라 지표마다 측정된 연도를 제시하였음

□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울증상경험율, 우울장애 유병률은 노년층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률은 장년층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다른 지표들과 달리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비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신건강 문제들이 상호 연관성이 높기는 하지만 1인 가구는 생애주기별로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상별 개입 내용들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상 치료와 같이 현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우울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함

〈표 9-3〉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단위: %)

구분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스트레스 인지율(2014)	39.0	25.3	20.8
우울증상 경험율(2013)	4.6	21.0	23.0
우울장애 유병률(2014)	10.7	13.2	19.0
자살 생각률(2013)	3.8	15.6	11.6

주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의 경우 연도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문항이 달라 지표마다 측정된 연도를 제시하였음

주2: 가중치(weight)을 적용한 비율

주3: 자살계획률과 자살시도율은 적은 수의 관측치로 인해 생애주기별 차이를 비교하지 않았음

- 1인 가구의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여성일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상경험율,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이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1인 가구를 타겟화하여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만함
- 다만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1인 가구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므로, 우울과 자살에 대한 개입과 달리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및 관리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함

<표 9-4>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신건강 수준

(단위: %)

구분		스트레스 인지율(2014)	우울증상 경험률(2013)	우울장애 유병률(2014)	자살생각률(2013)
성	남성	29.9	11.7	11.4	10.1
	여성	26.1	21.4	17.1	11.0
교육수준	중졸이하	23.9	25.5	22.3	11.5
	고졸	26.9	11.0	8.1	12.0
	대졸이상	34.9	5.7	6.8	7.6
소득수준	하	27.9	24.5	27.2	13.8
	중하	22.1	17.0	7.0	10.8
	중상	31.4	10.9	3.1	4.5
	상	32.4	1.6	4.2	5.3

주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의 경우 연도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문항이 달라 지표마다 측정된 연도를 제시하였음

주2: 가중치(weight)을 적용한 비율

주3: 자살계획률과 자살시도율은 적은 수의 관측치로 인해 성별,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지 않았음

○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자살사망률과 고령화율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시군구의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중 노인 1인 가구의 자살예방 사업에 보다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²⁸⁾

28) 이 표는 1인 가구 비율에 따라 제시된 것이므로 자살사망률과 고령화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기에는 제한점이 있음

〈표 9-5〉 지역별 1인 가구 비율, 고령화율, 그리고 자살 사망률

시도	시군구	전체 세대수	1인세대수	1인 가구 비율(%)	고령화율 (%) ¹⁾	자살사망률 (10만명당) ²⁾
인천광역시	옹진군	11,310	6,315	55.84	21.3	20.5
경상북도	울릉군	5,362	2,944	54.90	19.7	17.2
강원도	화천군	13,448	7,258	53.97	17.8	15.3
강원도	고성군	15,050	7,785	51.73	23.3	32.7
전라남도	신안군	22,262	11,291	50.72	30.7	33.4
서울특별시	관악구	251,398	126,630	50.37	12.5	26.7
부산광역시	중구	23,274	11,702	50.28	20.1	32.8
전라남도	함평군	17,559	8,734	49.74	31.4	11.3
경상남도	의령군	14,380	7,034	48.92	33.1	24.3
강원도	정선군	19,522	9,463	48.47	22.6	47.2
서울특별시	종로구	73,034	35,100	48.06	15.3	19.7
경상남도	산청군	18,162	8,721	48.02	32.0	24.7
경상북도	영덕군	20,150	9,671	48.00	31.3	23.2
강원도	영월군	20,045	9,579	47.79	24.3	25.5
강원도	양구군	11,129	5,311	47.72	16.9	14.7
전라남도	보성군	22,417	10,687	47.67	32.6	35.6
전라남도	곡성군	14,990	7,138	47.62	31.5	26.0
경상남도	합천군	24,255	11,516	47.48	34.4	26.5
전라남도	장흥군	20,221	9,566	47.31	28.6	34.6
강원도	삼척시	34,142	16,145	47.29	20.5	38.1

자료1: 강원통계정보 홈페이지(stat.gwd.go.kr), 서울특별시 통계(stat.seoul.go.kr), 2015전남통계연보(전라남도, 2015), 2015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인천광역시, 2015), 경상북도 통계포털(www.gb.go.kr),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area.busan.go.kr), 경남통계(stat.gyeongnam.go.kr)를 바탕으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제시함

자료2: 중앙자살예방센터홈페이지(www.spckorea.or.kr)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 정책 현황

□ 국내 정신건강증진 사업 개요²⁹⁾

- 국내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우호적 환경조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과 증진, 중증 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음

29)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하였음

- 2016년 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주요 사업은 다음의 표 참조
 -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에서는 1인 가구 등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표 9-6〉 정신건강 종합대책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일반 국민을 위한) 총총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17년)를 받을 수 있음 □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도록 할 계획임 □ 범부처 TF를 구성(16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할 계획임 □ 일생 동안 한 번은 꼭 짚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아동·청소년·청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 및 심리상담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함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조기 집중치료로 원래상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본인부담률을 낮추고(30~60% → 20%),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17년)함 □ 의료급여 환자도 보다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과 이외에 타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신체적 질병을 치료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임
(만성 환자의)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입원이 가진 인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 입원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 □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 제한격려·강박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6년)하는 한편, 강제 입원시 「민법」상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앞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
중독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회복을 지원함.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확대(40대 이상 → 20대 이상, '17년)함 □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gate keeper)' 양성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적인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수단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함(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등) □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약 25배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해 응급실 기반 심리지원을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를 예방(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후

구분	주요 내용
	관리 실시) □ 위기 상담전화 인력 확충, 경찰(112)-소방(119)과의 연계 강화 등 24시간 응급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내실화 함 * 위기상담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0199(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자료: 전진아 외(2016).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에서 발췌함

○ 정신보건 기관 및 시설 현황

-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52개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표 9-7〉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기관수	주요기능	
계	2,052		
정신건강증진센터	224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 기초 209(국비 184, 지방비 25) 광역 15(국비 14, 지방비 1)	
정신 의료기관	국·공립	18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민간	1,384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사회복귀시설	333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자료: 보건복지부. (2016a). 정신건강 사업안내

- 2015년 기준 시도 단위로 보면 정신의료기관은 서울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귀 시설 역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

〈표 9-8〉 시·도별 정신보건기관·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정신건강 증진센터		자살예방 센터 ¹⁾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정신요양 시설	사회복지 시설	정신의료기관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국공립	민간
계	15	209	6	10	50	59	333	18	1,384
서울	1	25	1	2	4	3	120	2	345
부산	1	16	1		4	3	12	1	112
대구	1	8			2	3	16	1	75
인천	1	9	1		5	2	11		66
광주	1	5	1		5	4	10	1	46
대전	1	5			3	4	25	1	61
울산	1	5			2	1	2		25
세종		1			-	1	3		2
경기	1	35	1	6	7	6	43	5	294
강원	1	16	1		3	0	5	1	34
충북	1	12			1	4	13		41
충남	1	14		1	2	10	24	2	47
전북	1	10		1	2	4	21	1	49
전남	1	16			2	4	4	1	42
경북	1	11			2	5	16		62
경남		19			4	4	4	2	69
제주	1	2			2	1	4		14

자료: 보건복지부. (2016a) 정신건강 사업안내

- 본 절에서는 국내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일컬어지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사업,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예방, 치료 및 관리 사업³⁰⁾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함
 -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의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서부터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까지 다양하나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전달체계를 구분하는데 모호함이 있어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분리하여 살펴보았음

30) 국내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은 보건복지부, 식약처(약물중독), 문화체육관광부(도박중독), 미래부와 여가부(인터넷 중독)에서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중독 예방, 치유, 관리사업들을 살펴보았음

- 국내 정신건강증진사업 간 연계 현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 역시 일부 다루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

○ 국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음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건강증진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또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음

-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직접 서비스는 24시간 핫라인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통한 상담 및 고위험군 위기 대응 체계 조정업무임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중증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에 대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조기발견체계를 구축, 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인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우울증상경험률, 그리고 우울장애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 가구에 초점을 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는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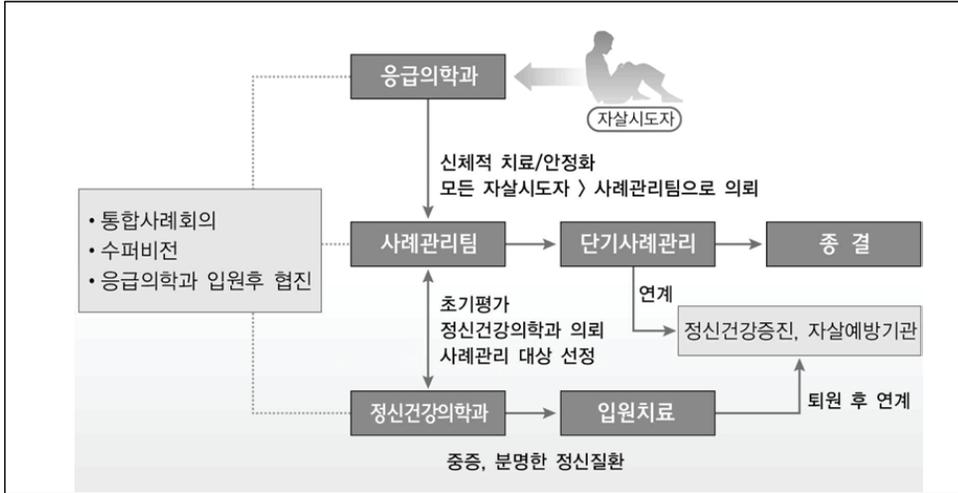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특정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살예방사업³¹⁾

- 자살예방사업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센터 혹은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성, 자살예방 교육, 자살관련 통계 분석,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홍보, 자살 유해정보 및 미디어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함
-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여 한국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실시를 통한 게이트 키퍼 양성
 - 중앙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생명지킴이 교육 강사 850여명 양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군 간부, 교사, 직장 간부 등 2015년 말 16.5만명 생명지킴이로 양성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 ‘응급실-사례관리팀-정신건강의학과-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심리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임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초기 개입 이후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현재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은 전국 27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음

31) 자살예방사업으로 중앙심리부검센터 운영도 있음. 심리부검이란 유족이나 주변인들 진술을 통해 고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재구성하여 높은 가능성을 지닌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것임. 이 사업의 경우 1인 가구 대상 지원과는 연관성이 낮아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음

[그림 9-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프로세스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24에서 발췌함.

○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 시범사업

- 이 사업은 노인의 자살사망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와 보건 영역의 노인 자살 예방 관련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시작된 것임
- 70대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이 높게 나타남. 2014년 전체 평균 자살사망률 27.3명에 비해 70대 노인은 약 2배 이상, 80대 이상은 약 3배 이상 자살사망률이 높게 나타남

<표 9-9> 대한민국 연령별 10만명 당 자살자 수(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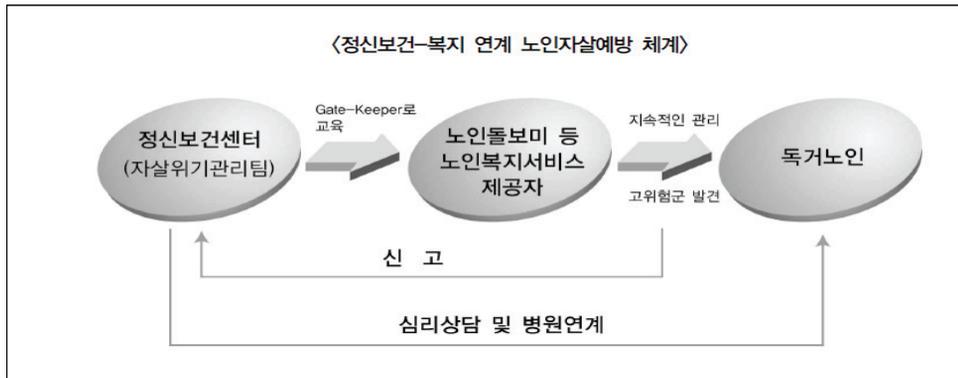
전체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7.3	0.0	4.5	17.8	27.9	32.4	36.4	37.5	57.6	78.6

자료: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www.spckorea.or.kr>)

- 취약계층 노인의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노인 자살예방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노인사회복지기관을 연결하여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 사업 수행 (현재까지 도시형 3개지역, 농촌형 4개지역 실시)

[그림 9-2] 정신보건-복지 연계 노인자살예방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23에서 발췌함.

- 자살예방 사업을 검토한 결과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자살사망률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 내에서 노년층과 더불어 높은 자살 생각률을 보이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시범사업의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음
 -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인한 우울이나 자살생각, 만연한 중독 문제 등 자살 고위험군 중장년층 1인 취약 가구를 발견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중독 예방, 치료 및 관리 정책 현황

-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 예방, 치유 및 관리 사업은 ‘알코올 중독’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독예방, 치료 및 관리 정책은 중독의 종류에 따라서 예방, 치료 및 관리 사업의 수행부처가 분리되어 있음

- 약물중독(식약청), 도박중독(사감위), 인터넷중독(미래부, 여가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둠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과 그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중독자 대상 상담 및 재활훈련을 하는 센터로서 전국에 50개소에 불과함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의 경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재활을 도모하고 있으나, 기존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중등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인식개선 및 홍보(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아동 청소년 상담, 노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재난심리 등 다양한 사업을 제한된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독 예방, 치유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한점이 많음

○ 사회복귀시설운영

-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시설은 매우 제한적임

2. 지원방안

○ (정책대안 1 ⇨ 청년/중장년) 청년/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스트레스 관리실 확대 운영

- 일부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되는 스트레스 관리실 확대 운영. 청년 1인 가구의 정신장애 유병률이나 자살생각률, 자살사망률이 다른 연령

에 비해 낮게 나타나기는 하나 청년층의 자살사망률 역시 높고(특히 30대 남성),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높게 나타나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아닌 스트레스, 우울수준을 측정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트레스 관리실 확대 운영

- 스트레스 측정, 상담으로 우울, 불안, 자살 고위험군으로 파악되는 청년 1인 가구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연계 혹은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 연계

○ (정책대안 2 ☞ 청년/중장년) 중독 1인 가구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중독자인 취약 1인 가구 대상 주거 지원 확대: 중독자 중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가정(알코올 중독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확충
 -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사회복지시설 10개소 중 알코올 중독자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2개소에 불과.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중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은 더욱 부족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³²⁾의 확충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예산 확충 필수적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에 필요한 예산 매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등적 지원 방안 고려 필요
- 중독자인 취약 1인 가구 재취업,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확대: 중독자의 사회복귀,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확충 필요. 지역 내 고용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체계 구축
 - 단도박이나 금주에 성공한 1인 가구 대상 원할 경우 중독예방 교육 인력 양성과정 이수 지원, 그 이후 예방 교육·홍보 강사로 활용
- 중독자인 취약 1인 가구 대상 사회적 지지망 구성 및 지원: 지역사회 유관자원(예. 무한돌봄, 노숙인 쉼터 등)에서 의뢰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중 금주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32) 2016.5.29.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2017.5.30.부터 시행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self-help) 구성 및 운영 지원

- 운영주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 현재의 인력, 예산, 업무수준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기 어려우나,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기초 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 가능해보임

○ (정책대안 3 ☞ 노인) 노인 1인 취약 가구 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화

- 자살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노인 1인 취약 가구 대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집중관리군(2~4개월 간 6~10회 방문, 수시 전화상담)으로 관리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우울, 불안, 자살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노인 취약 1인 가구 및 자살시도 노인 대상 1:1 대면 상담(방문 혹은 내소) 및 프로그램 제공
- 노인 1인 취약 가구의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노인 자살예방 연계체계 구축 및 확대
 -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 사업 일환으로 수행 가능. 시범사업에서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노인 사회복지기관을 연결하여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이 모이는 기관 및 조직의 실무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징후가 발견될 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및 확대
- 최근 사별, 이혼 등 life event를 겪은 노인 취약 1인 가구 대상 단기 loss and Grief 관리 프로그램 제공
 - 운영 주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 노인 취약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자살사망률이 높은 지자체는 자살예방 사업 특화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의 사업 우선순위 설정 시 지역의 자살사망률,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및 위기/응급대응 체계 구축 마련 필요
- 1인 가구의 비율과 고령화율이 높으면서, 최근 5년간 자살사망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 위치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노인 1인 가구 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에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토록 권고
- 이들 지역의 경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외에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역시 고려 필요.
- 지역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과정 이수 독려

제 10 장

돌봄·안전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0

돌봄안전 영역 1인 취약가구 <<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 돌봄 및 안전 영역의 범위

- 돌봄은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혹은 인지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의미함
- 안전은 혼자 생활하게 됨으로서 가정내에서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대응하는데 요구되는 서비스 및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환경 특성에서 발견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영역으로 한정함

〈표 10-1〉 돌봄 및 안전영역의 개념정의 및 정책 대상

영역	정의	주요 대상
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정서적 지원,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장애인, 노인
안전	가정 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거나 주거환경/지역사회의 안전이나 방법상태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 돌봄 및 안전 영역의 위험요인 분석 내용 및 방법

- 돌봄 영역의 위험요인 분석은 노인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계층별(1인 가구, 다인 가구, 1인 취약가구 등) 돌봄 현황 및 서비스 욕구 파악
- 안전 영역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된 가정 내 화재안전, 범죄예방시설 설치여부, 주거환경의 방법상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노인실태조사 문항 중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을 통해 1인 취약가구의 안전 관련 위험수준을 파악

〈표 10-2〉 돌봄 및 안전 관련 이차자료 분석 내용

자료명(년도)	대상	질문문항
노인실태조사 (2014)	만 65세 이상	돌봄수요 규모, 돌봄제공자 특성, 돌봄을 받지 않는 이유,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율
장애인실태조사 (2014)	장애인	ADL/IADL,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돌봄제공자 특성, 돌봄의 충분성
주거실태조사 (2015)	15세 이상 가구주 혹은 배우자	범죄예방시설 설치여부(CCTV, 비상벨) 화재로부터 안전성 주거환경 만족도 중 방법상태 만족도

□ 돌봄 및 안전 관련 정책 파악

- 돌봄 영역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돌봄 관련 사업 파악
 - 노인돌봄 관련 정책: 독거노인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안전 영역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보건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등) 및 지방정부 정책 파악

1. 돌봄 욕구 분석 결과

- 노인의 돌봄 수요를 신체적 기능제한(ADL 및 IADL 기능제한)과 인지기능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 1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43.2%, 다인가구에 속한 노인의 39.0%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저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는 1인 가구와 다인가구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돌봄 수요가 높고 특히 신체적 기능제한을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취약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신체적 혹은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중은 53.1%로 건강하지 못한 전체 노인 비중 39.0%보다 높음

- 특히, 노인 1인 취약가구는 노인다인가구에 비해 신체적 기능제한(13.6%)과 신체 및 인지기능 중복제한(12.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3〉 노인 돌봄 수요 현황

(단위: %, 명)

구분	노인 1인 가구		노인 다인가구	전체
	전체	취약노인 ¹⁾		
건강	56.8	46.9	61.0	60.0(6,150)
신체적 기능제한 ²⁾	12.3	13.6	7.4	8.5(873)
인지적 기능저하 ³⁾	21.7	26.6	23.7	23.2(2382)
신체 및 인지적 기능 저하	9.2	12.9	7.9	8.2(843)
전체(명)	100.0(2,387)	100.0(401)	100.0(7,861)	100.0(10,248)

주1 : 취약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주2 : ADL 또는 IADL 수행동작에 있어 한가지 이상 부분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3 : MMSE-DS 도구를 사용함

주4 : 가구원 가중치 사용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80.0%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 가구 노인은 67.1%만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노인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중은 현저히 낮았으나, 친척·이웃·친구·지인으로부터 도움(16.8%),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률(17.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19.1%)은 다인가구에 속한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신체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 1인 가구의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율이 높은 이유로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가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이 37.6%로 1인 가구 노인 평균 70.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취약계층에 속한 1인 가구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26.0%)와 노인돌봄서비스(28.7%) 등 공적 서비스 이용율이 54.7%에 이르고 있으며, 가족

이외의 비공식 돌봄체계에 의한 돌봄 제공율도 23.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4〉 신체적 기능제한 노인의 돌봄 수혜 여부 및 돌봄제공자 유형

(단위: %)

구분	노인 1인 가구		노인 다인가구	전체	
	전체	취약노인 ¹⁾			
타인으로부터 돌봄받는 여부	67.1	73.4	85.4	80.0	
돌봄제공자 유형	가족(동거 및 비동거 포함)	70.8	37.6	97.7	91.0
	친척, 이웃, 친구, 지인	16.8	23.1	4.2	7.4
	장기요양보험서비스	17.1	26.0	10.9	12.5
	노인돌봄서비스	19.1	28.7	2.9	6.9
	개인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1.4	-	1.2	1.3

주1 : 취약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주2 :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노인 1,7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혼자 견딜만 해서’가 57.9%, ‘도움이 필요 없어서’ 38.1%로 나타나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자발적인 이유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취약계층에 속한 독거노인의 경우, 도움을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3.3%),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1.8%)로 도움이 필요 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중이 5.1%로 나타남

〈표 10-5〉 신체적 기능제한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노인 1인 가구		노인 다인가구	전체
	전체	취약노인 ¹⁾		
도움이 필요 없어서	30.6	28.7	45.3	38.1
혼자 견딜만해서	64.7	66.2	51.4	57.9
도움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몰라서	1.8	3.3	0.0	0.9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2.9	1.8	3.4	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1 : 취약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주2 :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노인 1,736명 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3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장애인 중 1인 가구 비중은 22.0%이며, 20-39세 장애인 인구의 10.2%, 40-64세 장애인 인구의 19.4%,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29.1%가 가정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장애인 1인 취약가구는 전체 장애인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 연령대별 1인 취약가구를 보면, 20-39세는 1.9%, 40-64세는 8.7%, 65세 이상 장애인의 7.3%에 해당되며 40-64세 1인 취약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6〉 장애인 1인 가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 다인가구	전체(명)
	전체	취약가구(명) ¹⁾		
20세 미만	-	-	100.0	100.0(240)
20-39세	10.2	1.9(13)	89.8	100.0(686)
40-64세	19.4	8.7(257)	80.6	100.0(2954)
65세 이상	29.1	7.3(217)	70.9	100.0(2944)
계	22.0	7.1(487)	78.0	100.0(6824)

주 : 전체 장애인 대비 1인 취약가구 비중을 의미하며, 취약가구는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의료교육자활특례를 포함함

자료: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일상생활수행에 있어 신체적 기능제한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현황을 연령대별 1인 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보다 다인가구에 속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제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1인 취약가구에 속한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절반(53.4%)을 넘으며, 40-64세 연령대에서는 47.9%, 65세 이상은 58.1%에 이르고 있음

〈표 10-7〉 장애인 연령대별 신체적 기능제한¹⁾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 다인가구
	전체	취약가구 ²⁾	
20세 미만	-	-	10.4
20-39세	24.3	- ³⁾	42.4
40-64세	36.8	47.9	57.6
65세 이상	52.7	58.1	37.9
계	45.3	53.4	46.0

주1 : ADL 또는 IADL 수행동작에 있어 한가지 이상 부분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2 : 취약가구는 1인 가구 1500명 중 일반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의료교육자활특례 해당 자 486명을 분석함

주3 : 20-39세 1인 취약가구에 속한 사례수는 13명에 불과하여 이후 분석에서는 20-39세 연령집단을 제외한 40세 이상 1인 취약가구 장애인만 분석하고자 함

자료: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다인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이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 다인가구에 속한 장애인의 약 90%가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1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 중 도움을 받고 있는 비중은 40-64세 66.5%, 65세 이상 60.2%에 불과하였음
 - 1인 가구 및 1인 취약가구에 속한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르고 있음
 -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문항이 없어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분석은 불가능함
- 현재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충분도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이 다인가구에 속한 장애인에 비해 돌봄 충분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8〉 신체적 기능제한¹⁾을 지닌 장애인 대상 도움수혜 여부

(단위: %)

구분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 다인가구	
	전체	취약가구 ²⁾		
현재 일상생활 도움받음(%)	40-64세	66.5	71.9	88.8
	65세 이상	60.2	62.2	92.9
돌봄충분도(4점 기준) ³⁾	40-64세	2.37(.647)	2.40(.681)	2.61(.764)
	65세 이상	2.35(.668)	2.35(.642)	2.64(.643)

주1 : ADL 또는 IADL 수행동작에 있어 한가지 이상 부분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2 : 취약가구는 1인 가구 1500명 중 일반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의료교육자활특례 해당 자 486명을 분석함

주3 :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퇴원후 일상생활지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박세경 외, 2015)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노인 및 방문간호사 인터뷰 결과, 퇴원 이후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원 후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뷰 참여노인 중 한명은 3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집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신체기능이 악화되어 현재는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일환으로 수술 이후 퇴원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가사서비스를 퇴원한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가사지원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합

○ 노인 1인 취약가구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나 돌봄서비스 등 공식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중이 높고, 가족 이외의 비공식 돌봄체계가 작동 중에 있음. 돌봄의 사각지대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돌봄의 충분성에 대한 데이터 부재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있음

○ 장애인 1인 취약가구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약 30~40%에 이르고 있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함. 40-64세 장애인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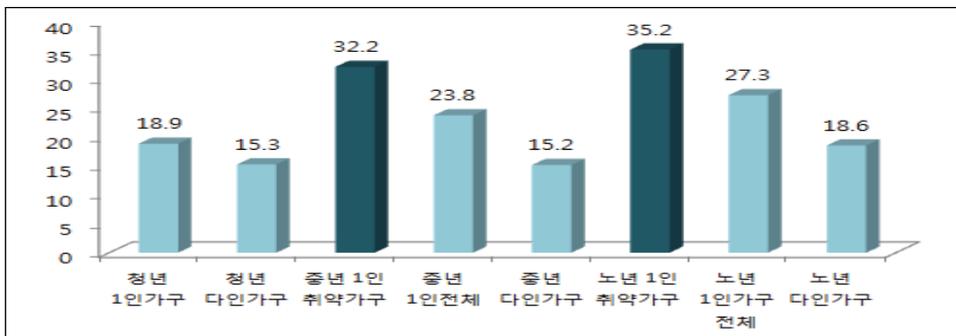
2. 안전 욕구 결과 분석

□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다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보다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로부터 안전성이 낮았지만, 특히 1인 가구 중 취약계층에 속한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노년 1인 취약가구에 속한 가구의 35.2% 그리고 중년 1인 취약가구에 속한 가구의 32.2%가 화재로부터 주택의 안전성이 불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노년 다인가구(18.6%)와 중년 다인가구(15.2%)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10-1] 화재로부터 주택의 불량상태(화재시 불안전성)

(단위: %)



주1 : 불량=불량+조금 불량

주2 :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3 : 청년층(20-39세)의 경우, 1인 가구이면서 취약계층인 케이스가 22건 밖에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주4 : 모집단 가중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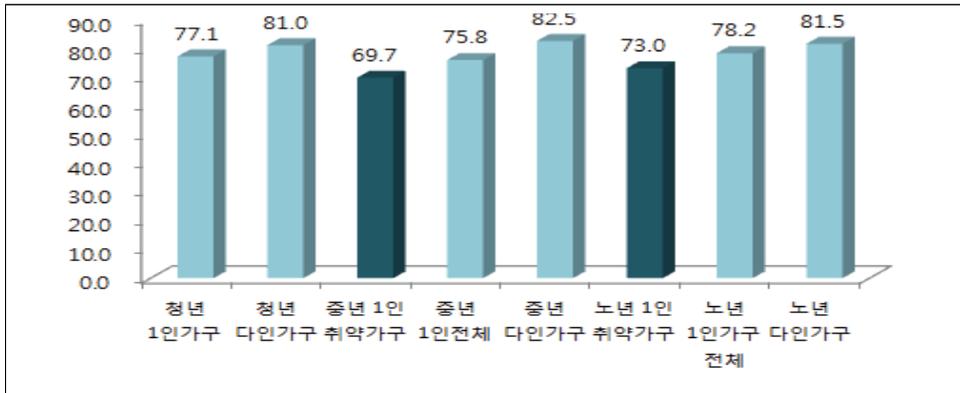
자료: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치안이나 범죄 등에 대한 방법상태의 만족도는 중년 다인가구(82.5%), 노년 다인가구(81.5%), 청년 다인가구(81.0%)가 가장 높았으며, 중년 1인 취약가구(69.7%)와 노년 1인 취약가구(73.0%)의 방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1인 취약계층에 속한 중년 및 노년가구의 1/4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함

[그림 10-2] 주변환경에 대한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만족

(단위: %)



주1 : 만족=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주2 :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3 : 청년층(20-39세)의 경우, 1인 가구이면서 취약계층인 케이스가 22건 밖에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주4 : 모집단 가중치 사용

자료: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연령대별로 1인 가구 거주지역보다 다인가구 거주지역 주변에 CCTV 설치나 방범벨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CCTV 설치율이 가장 낮음
- 청년층은 중년이나 노년세대에 비해 CCTV나 방범벨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년 및 노인 1인 가구와 중년 및 노인 1인 취약가구간의 CCTV 설치나 방범벨 설치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 연령대별로 방범벨 설치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20% 안팎으로 방범벨 설치율에 대한 해석에서의 주의가 필요함

<표 10-9> 주택 주변의 방법상태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 여부

(단위: %)

구분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1인 전체	다인 가구	1인 취약 ¹⁾	1인 전체	다인 가구	1인 취약 ¹⁾	1인 전체	다인 가구
주변환경 CCTV	있음	61.6	71.9	43.1	46.2	63.2	34.7	33.1	45.6
	없음	26.5	21.1	36.7	41.6	30.6	45.4	54.2	47.4
	모르겠음	11.9	7.0	20.2	12.2	6.2	19.9	12.7	7.0
범죄예방 비상벨	있음	9.7	15.8	6.4	5.5	12.8	6.1	5.2	7.8
	없음	64.0	61.0	66.1	73.3	66.9	67.5	76.0	76.5
	모르겠음	26.3	23.2	27.5	21.2	20.3	26.4	18.8	15.7

주1 :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2 : 청년층(20-39세)의 경우, 1인 가구이면서 취약계층인 케이스가 22건 밖에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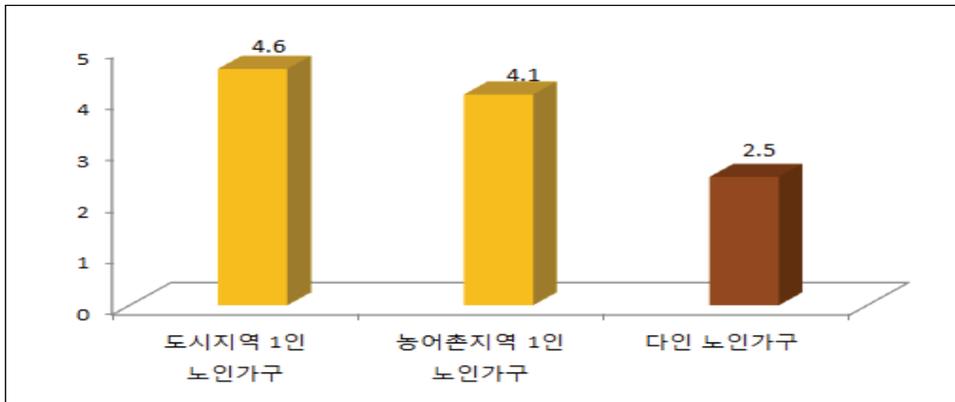
주3 : 모집단 가중치 사용

자료: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노년층의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율(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은 도시지역 1인 노인가구가 4.6%로 가장 높고, 농어촌 지역의 1인 노인가구가 4.1%로 나타남. 이에 반해 다인가구에 속한 노인의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율은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10-3]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율

(단위: %)



주 : 가구원 가중치 사용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종합

- 주거환경의 안전성은 주거유형(아파트, 다세대 등)과 거주지역(도시, 농촌)과 밀접한 관련있을 것임
 - 주거실태조사 데이터의 한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비교하지 못함
- 주거 및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비해 중년이나 노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볼 수 있음
 - 화재취약성, 범죄예방설비 설치율, 치안이나 범죄 등 방법상태 만족도 등은 중년층과 노년층 1인 취약가구에서 낮았으며, 특히 중년 1인 취약가구의 주거 및 지역사회 안전수준이 가장 열악함
- 노인 1인 가구의 가정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생활관리사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노인돌보미, 장기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생활지원에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 정책현황

가. 노인돌봄 관련 정책(보건복지부, 2016b)

-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
 -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는 건강상태여부와는 별개로 혼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돌봄 및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분적 혹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 지원 등의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음

□ 독거노인기본서비스

-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현황조사(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결과를 토대로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독거노인을 선정
 - 현황조사: 생활관리자가 직접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하여 현황조사카드 작성
- (내용)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정서적 지원,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을 제공

□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 (내용)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지원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간접확인(전화) 주2회 및 결과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 혹은 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방문 및 주간보호서비스) ①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② 시군구청장 인정자: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차상위계층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혹은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 (건강)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진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 확인
 - (소득)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방문서비스)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 제공

-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월 27시간(9일), 36시간(12시간)

○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연 6일

○ (단기가사서비스)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 제공

- 월 24시간

○ (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월 서비스 시간량,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화

□ 장기요양서비스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임
-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독거노인은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음. 이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독거노인만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독거노인을 우선시하는 등 노인 1인 가구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장해오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2015년 기준으로 463,000명³³⁾으로 장래가구추계(통계청, 2012) 자료에서 제시한 2015년 노인 1인 가구 1,379천명의 33.6%에 해당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노인까지 포함하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은 33.6%보다는 높을 것임
- 독거노인의 약 43%(신체기능제한을 ADL만을 기준을 할 경우, 약 34%)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인지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때(2014년 노인실태조사), 노인돌봄서비스의 규모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되어야 함

33) 독거노인응급안전망 사업대상자와 타 돌봄사업 대상자와 일부 중복 가능. 그러나 독거노인응급안전망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자 중심으로 제공되므로 중복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10-10〉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구분	사업명	분류	대상자 규모(명) 1)	내용
독거 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안전 돌봄	247,000	안전확인,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돌봄	56,000	안부전화, 정서적 지원
	독거노인응급안전망 구축	안전	56,000	화재, 가스감지기 및 활동센서 등 설치 및 관리
독거 노인 우선 선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 및 주간보호)	돌봄	20,000 (독거노인)	우선순위 1순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돌봄		독거노인 또는 고령 노인부부가구로서 전국 가 구평균 150% 이하 가사, 일상생활 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노케어	돌봄	84,000 (독거노인)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방문 하여 안부,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돌봄	-	일상생활지원, 정서, 연계서비스 등
기타	장기요양보험	돌봄	475,382	요양(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 간호,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주1 : 2015년 기준

출처: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p.468.

국민건강보험(2016).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대상 및 선정기준³⁴⁾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1~3급)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 인증등급을 위한 기본조사: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장애특성 고려 영역, 사회환경 고려 영역 등 4개 영역, 30개 항목(15세 이상 24개 항목, 15세 미만 22개 항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 중 1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에게 20점 이내의 점수 추가가 가능하며, 1인 가구에게는 기본급여 외에 추가급여를 제공

34) 「보건복지부(2016c).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의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함

- 추가급여 수급요건: 1인 가구, 취약가구(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인 경우), 출산가구, 자립준비자 등

〈표 10-11〉 1인 가구 관련 추가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량

(단위: 천원)

수급요건(요약)	급여량
1)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인 경우	2,464
2)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인 경우	720
3)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인 경우	180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8.

□ 활동지원급여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³⁵⁾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

〈표 10-12〉 활동보조 급여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목욕 도움, 세면도움, 배설 도움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 변경, 관절구축 예방활동 등) 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등)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식재료 준비,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관공서, 병원 등)
기타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35)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의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함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용 현황(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 2014년 12월말 기준, 활동보조지원기관 723개소, 방문목욕 224개소, 방문간호 100개소 운영 중이며, 활동보조인은 46,812명임

〈표 10-1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현황(2014.12.31. 기준)

(단위: 명, %)

이용자	전체	6-9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53,870	64,906	4,519 (7.0)	17,668 (27.2)	11,639 (17.9)	7,026 (10.8)	8,496 (13.1)	10,064 (15.5)	3,877 (6.0)	1,617 (2.5)
		34.2%		28.7%		34.6%(22,437명)			2.5%

원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 내부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백서

- 이용자 53,870명 중 추가급여를 받는 사람은 39,081명으로 전체 72.5%에 이룸
 - 추가급여를 받는 사람 중 1인 가구로 인한 추가급여를 받는 비중은 21.4%이며, 전체 이용자의 15.5%에 해당됨

〈표 10-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현황

(기준: 2014.12.31., 단위: 명, %)

전체 이용자	추가급여 이용자	1인 가구	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기타
53,870	39,081 (100.0)	8,365 (21.4)	4,630 (11.8)	20,576 (52.6)	4,176 (10.7)	1,334 (3.4)

기타: 출산가구, 자립지원,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생활
원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 내부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백서

- 급여유형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건수의 99.5%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방문목욕은 0.4%, 방문간호 0.5%로 나타남
 - 즉,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급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10-15〉 활동지원 급여유형별 이용현황

(기준: 2014.12.31. 단위: 건, %)

구분	활동보조 (일반, 심야, 공휴)	방문목욕 (차량내 및 가정내)	방문간호	계
전체	1,260,900(99.5)	5,426(0.4)	853(0.1)	1,267,179(100.0)

원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 내부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백서

-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보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포함한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전체 평균 36,870원이며, 무료 및 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대상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평균 60,036원으로 나타남

〈표 10-16〉 등급별 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기준: 2014.12.31. 단위: 원)

구분	전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전체	36,870	45,559	38,638	26,965	14,090
기초 제외	52,951	65,786	53,085	38,919	23,536
기초 및 차상위 제외	60,036	75,916	59,322	43,371	25,974

주: 실 납부액 기준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원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 내부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백서

□ 활동지원인력 자격요건 및 현황

-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 방문목욕제공자, 방문간호사로 구분됨

〈표 10-17〉 활동지원인력 자격 요건

급여종류	자격요건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전문과정,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소지자
방문간호	-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 간호사 - 3년이상 간호보조업무 경력의 간호조무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치과위생사

○ 활동지원기관은 약 1,057개소이며,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46,812명으로 집계됨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이 723개소, 방문목욕 224개소, 방문간호제공기관이 110개소임

〈표 10-18〉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현황

(기준: 2014.12.31., 단위: 개소, 명)

구분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록인원	활동인원	
전체	1,057	(954)	723	224	110	56,5311	46,812

주: 괄호 () 표시는 활동지원 서비스 간에 중복 지정되지 않은 순계 기관임
원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 내부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백서

다. 응급안전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36)

- (목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센터 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36)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 (대상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독거노인으로 치매/치매고위험군, 장기요양/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지체장애가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 가능)
-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1순위) 1등급이면서 독거, 취약가구³⁷⁾ 장애인, (2순위)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인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자,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이하 수급자로 상시 보호자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제공인력)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

-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리업무에 대해 행정지원을 수행
- 응급관리요원: 지역센터에서 소방서와 협력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댁내 장비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
 -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 (근로조건) 근무기간: 채용일 ~ 16.12월, 월 162만원(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댁내 장비)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

○ 서비스전달과정

- (게이트웨이 → 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37)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급여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감지, 활동 미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게이트웨이 →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상태정보 등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
- (소방서)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 (지역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시 가구방문, 정기적인 안전확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 물리적 및 비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14년 14개 지역, 15년 11개 지역
- CCTV, 비상벨, 보안등, 유도판, 보안등, 담장벽화, 경사로 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

○ 사업 성과(조상규 외, 2014)

-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간 환경 조성
-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의 범죄불안감 감소 및 지역만족도 상승
- 시범사업 지역의 범죄율 감소

○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법무부의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2.2.)

-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포함) 5곳 내외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업 지원(5.4억원)
- 국토교통부: 안전, 위생,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노후시설 정비, 문화시설 추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 법무부: 대상지역에 대해 범죄영향평가를 통한 취약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CCTV, 방범등 설치, 공·폐가 출입 차단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포함함

각종 범죄예방 컨설팅 제공

- 사업지역: 인천 팽이부리마을 등 전국 5개 지역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여성가족부, 2010)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역량강화, 돌봄,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지역사회의 돌봄 강화, 폭력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동체사업 활성화, 여성친화기업 인증 등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 5년마다 재지정 심사
 - 2016년 11개 신규 지정, 6개 지자체가 재지정을 받으면서 전국에 66개로 확대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안전마을

- 다양한 위해요인(재난, 재해, 범죄, 화재, 교통 등)의 해소와 취약집단(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
- 기본프로그램: 주민욕구조사, 안전지도, 마을안전계획 수립, 이웃간 자연감시 등
- 자율프로그램: 주민활동(안전순찰, 안전교육, 여성안전귀가동행 등), 환경 조성(계단 및 담장 도색, 핸드레일 설치, 반사경, 안내표지판, CCTV 설치 등)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 전화 한통이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만나 집까지 동행
- 25개 전 자치구, 월~금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 자치구 상황실 또는 120 전화 신청

○ 여성안심택배

- 25개 자치구 160개소 설치 운영, 365일 24시간 운영
- 48시간 무료, 48시간 초과시 24시간마다 1,000원 부과

○ 여성안심지킴이집

- 서울시 800여개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위촉

□ 부산광역시(디지털 타임스, 2015)

○ 방법취약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홈 방법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ADT캡스와 '홈 방법 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가구의 출입문, 창문 등에 감지센터 설치해 주거침입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 전문 보안요원이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 제공

○ 최신 보안서비스 설치비 10만원 지원, 월 사용료를 정상가격보다 5만원 이상 저렴한 9900원에 제공

2. 지원방안

□ (정책 개선방안1) 활동지원서비스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중년 장애인 1인 취약가구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예방등급(또는 예비등급, 5등급) 신설하여 서비스 제공

○ (현황)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에서 수급자 최저 기준점수(220점)에 미치지 못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20점까지 추가점수를 부여하여 1인 가구 장애인의 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와 함께 장애인 1인 가구가 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추가급여(최소 월 18만원에서 최대 246만원)을 제공하는 등 1인 가구의 일상적 및 사회적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이용자 53,870명 중 추가급여를 받는 사람은 39,081명으로 전체 72.5%에 이르며, 추가급여를 받는 사람 중 1인 가구에 해당되는 추가급여를 받는 비중은 21.4%이며, 전체 이용자의 15.5%에 해당됨

〈표 10-1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현황

(기준: 2014.12.31., 단위: 명, %)

전체 이용자	추가급여 이용자	1인 가구	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기타
53,870	39,081 (100.0)	8,365 (21.4)	4630 (11.8)	20,576 (52.6)	4176 (10.7)	1334 (3.4)

기타: 출산가구, 자립지원,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생활
 원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 내부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백서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 포괄범위는 좁은데 추가급여의 보장 범위(급여량)는 매우 높다는 평가는 받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선정기준 근방의 경계선에 있는 중년 1인 취약가구의 경우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식 혹은 비공식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1~4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특히 장애인 1인 가구는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일부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저소득층 1인 중장년 장애인을 파악하여 지원하고자 하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가 전무하여 민간자원 연계만 실시하고 있음
- (개선안) 중년 장애인 1인 취약가구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예방등급(혹은 5등급)을 신설하여 활동보조 급여 지원
- 4등급보다 낮은 기본급여를 제공하되, 추가급여는 적용하지 않음
 - 필요 예산은 현재 생활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월 한도액을 조정하여 예방등급(혹은 5등급)에 부여하는 등의 방안 고려 가능

- (기대 효과) 장애인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중년층의 서비스 수혜율 증가, 서비스 인증등급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확대,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건강상태의 급속한 악화 지연

□ (정책 개선방안 2) 일상생활 불편해소서비스 제공

- (현황)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소득이나 건강수준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나 청소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가 아닌 혼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불편사항(예, 전구 교체, TV/핸드폰/리모콘 등 오작동, 못 박기 등)을 해소하고, 집안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점검·관리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안) 기존의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

- 서비스 예시: 간단한 수리(전구 교체, 액자 고정, 선반 수리, TV/핸드폰/리모콘 등 오작동, 못 박기 등), 안전 및 보안(잠금장치, 추락/낙상 요인 점검, 화재안전 점검 등), 에너지효율점검(전력 점검, 고효율 조명기기 연계 등) 등
- 1인 취약가구는 무료 지원, 그 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분기 혹은 연 단위로 정기 방문 점검 및 추가적인 이용 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 책정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재능나눔)), 지역자율형투자사업(바우처사업) 등 활용 가능

- (기대효과) 정기적인 안전, 에너지 효율 점검 등으로 인한 가정내 사고 방지 및 돌봄비용 감소, 궁극적으로는 1인 가구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정책 개선방안 3) 퇴원후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확대

- (현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노인단기가사서비스에서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가 있는 노인에게 2개월(최대 1개월 연장 가능)간 신변·활동지원 및 가사·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병원 퇴원후 서비스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로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가구로 한정되어 있음
 -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로 제한됨
- (개선안) 노인돌봄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를 혼자 사는 1인 취약가구로 확대하여 수술 후 건강회복기간에 가정에서 식사도움이나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의 지원
- 단기적으로 장애인 1인 취약가구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중장년 1인 취약가구로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
 - 장애인 1인 취약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면서 장애등록 신청과정에 있는 비장애인(예비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해도 일시적인 중증 사고/질병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형태로 지원 가능)
 - 청년 및 중장년 1인 취약가구의 경우, 병원 퇴원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증 질환 회복 후 직장복귀 및 취업지원체계 마련’과 연속선상에서 추진 가능
 -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지역내 사례관리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 필요
- (기대효과) 수술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제한과 정서적 불안 감소 및 건강회복 증진
- (정책 개선방안 4)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전 강화
- (현황) 기존의 마을 조성 사업은 주로 범죄나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룸 밀집지역,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1인 가구 밀집지역을 타겟팅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은 전무한 실정임
 - 특히, 혼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개선안 1) 부처별 지역단위 (시범)사업 선정시, 지역내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지역내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 및 수행 유도

- (개선안 2) 지자체 평가지표에 1인 가구 밀집지역 혹은 1인 취약가구(여성, 장애인, 여성 등) 대상 안전 강화 지표 반영
 - 2015년도 지자체합동평가의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개선안 3) 여성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안전장치 지원
 - 출입문, 창문 등에 감지센터 설치, 립건물 출입구에 안심거울 설치(건물에 들어가기 전,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쉽게 확인 가능), 보안서비스 설치비 및 월 사용료 지원(감면) 등

제 11 장

결 론: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11

결론: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 1인 취약가구 대응 정책의 현 상황

☞ 1인 취약가구의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기능 미비

-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형성·발전해온 현행 사회보장체계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의 개인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22개 부처 사회보장 내역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가구에 별도 기준과 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1개뿐이며, 지원대상에 1인 가구를 명시한 사업은 14개, 1인 가구를 배제하는 사업은 0개,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지만, 별도 기준이 없는 사업은 272개임(부록 2 참조)

〈표 11-1〉 22개 부처 사회보장 내역사업의 1인 가구 지원 조사결과

구 분	사업 수	상 세
지원대상에 1인 가구 명시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 청년 전세임대, 공공실버주택 ▪ (환경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1인 가구 대상으로 별도 기준, 서비스 등 적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1인 가구 배제	0	
1인 가구 관련 별도 기준 없음	272	

- 2016년 국회 확정예산 기준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현황 검토결과, 정책수혜 대상에서 1인 취약가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재정사업은 23개 부처·청 소관 세부사업 242개로 소득보장, 고용·일자리서비스, 주거, 건강 및 정신건강, 돌봄·안전, 교육 문화 및 기타 정책영역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정책 대상이 1인 취약가구로 특정된 재정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돌봄·안전서비스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사업에 불과함
 -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사업(1,535억원)³⁸⁾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사업(125억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사업의 경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수혜대상으로 명시
- 한편, 국가보훈처 소관 사업으로 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사업으로 가사간병지원 및 노인의료용품지원)이 1인 가구를 주 정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라는 특수계층에 대한 지원에 국한됨
- 정책의 수혜대상을 1인 가구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1인 가구의 취약성을 고려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환경부 소관사업으로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정책대상 중 소외계층의 일부로서 독거노인이 포함되며, 복지부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으나 정책대상의 범위가 최종중 장애인 일부에 한정됨
 - 2016년 예산안 편성 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최종중 독거·취약 장애인 가구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전년 대비 약 3.8% 인상
 - 인정조사 점수가 4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대상자(최중중 장애인) 중 독거가구(또는 동거가족이 18세 이하/65세 이상 가구)에 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인상

38)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사업은 취약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에게 그 욕구 및 건강상태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관계활성화 지원 서비스로 구성. 이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돌봄 & 안전)와 독거노인관계활성화 지원서비스(정신건강)는 정책대상을 독거노인에 한정, 단기가사서비스는 부부가구까지 포함하고 있음

- 그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일부 국토부 소관 주거지원 사업에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음
 - 4.28 맞춤형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취업준비생 또한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와 같이 최장 6년간 거주 가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입소 1순위를 부여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1인 가구 한정)을 포함
 -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에서 1인 가구일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한편, 주거지원 용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1인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거지원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저리 금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
 - 내집마련디딤돌대출(만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만25세 이상 단독세대주), 주거안정월세대출(성년이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 만25세 이상 단독세대주)
- 이상의 주거·돌봄/안전관련 재정지원 이외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 지원대상 수급자 선정 및 지원수준 산정 시 가구원수가 고려되며, 이에 연계하여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기타 복지급여 또는 조세급여가 지급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가구규모에 따른 위험수준이 제도에 반영되는 상황임
 - EITC와 같은 조세급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속성 집단이나 가구와 같은 집합적 단위를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어 1인 취약가구의 생애주기별 위험요인 및 특성을 제도적으로 구별하지 못함
- 그 밖에 일자리지원, 건강의료, 기타 영역에 걸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1인 가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정도에서 매우 소극적으

로 개인화된 위험을 인식하는 수준에 불과함

- 예컨대, 의료비지원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질병·질환을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연령이나 가구규모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못함
-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제공되는 고용·일자리지원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 대상으로 하는 부처 기능의 특성 상 사업별 정책대상의 생애주기 구분은 일정수준에서 가능하지만, 가구규모에 대한 제도적 고려는 전무한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 포함한 관련 노인일자리 지원정책의 경우 수혜자 상당수가 1인 취약가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노인이라는 정책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일자리 이외 노후소득보장이나 노인의료지원 등 다른 노인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즉, 1인 가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제도적 구분이 없고 따라서 재정지원 규모나 수혜자 실태와 관련한 정보 관리 또한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와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고립 및 관계 단절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1인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특히, 계층과 세대 등에 따라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의 개념 정의를 통해 정책대상을 설정, 1인 취약가구 유형별로 정책영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각 부처 정책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영역별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소득계층(중위소득 60%) 및 세대(청년 - 중장년 - 노인) 및 장애와 성별을 고려한 정책집단 대상으로, 소득지원, 주거지원, 고용서비스, 건강행태, 정신건강, 돌봄 및 안전등 6가지 정책영역별로 기존의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포함하여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구성하여 제시함

- 정책대상 및 영역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Matrix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제안하였으며, 앞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로 제시함

□ 정책영역별

○ 소득지원 영역

- (정책 개선방안 1 ☞ 청년)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연령기준 및 급여체계 확대
- (정책 개선방안 2 ☞ 청년) 잠재적 청년 1인 취약가구 대상 소득-고용-주거 연계 지원체계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마련
- (정책 개선방안 3 ☞ 노인) 노인단독 빈곤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액 추가 지급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성 제고
- (정책 개선방안 4 ☞ 청년/중장년/노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및 차상위 지원 관련 1인가구 선정기준 및 급여 상향 조정방안 종합적 검토
- (정책 개선방안 5 ☞ 청년/중장년/노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우선순위 부여 및 총 근로기간 연장

○ 고용서비스 영역

- (정책 개선방안 1) 고용 및 복지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강화
- (정책 개선방안 2) 고용서비스 제공 연계 급여의 신설 혹은 확대
- (정책 개선방안 3) 고용서비스 전(全)과정에서 집단상담 등 인적 네트워크 확대 프로그램 강화
- (정책 개선방안 4) 고용서비스 인지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강화
- (정책 개선방안 5) 1인 취약가구 고용서비스 혹은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 주거지원 영역

- (정책 개선방안 1 ☞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청년 임차가구를 주거급여 특례가구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정책 개선방안 2 ☞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정책 개선방안 3 ☞ 청년) 저소득 청년에게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공급
- (정책 개선방안 4 ☞ 노인) 농촌 거주 자가 노년층에게는 주택개량지원과 함께 주택개량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 (정책 개선방안 5 ☞ 노인) 서비스가 통합된 공공실버주택 공급대상 지역 확대 및 민간자금 확보
- (정책 개선방안 6 ☞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임차가구 위한 '지원주택' 공급방 마련

○ 건강행태 영역

- (정책 개선방안 1 ☞ 청년/중장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1인 취약가구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확대
- (정책 개선방안 2 ☞ 청년/중장년/노인) 1인 취약가구 대상 건강검진수검률 증진 및 건강검진 수진 이후 만성질환 관리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성
- (정책 개선방안 3 ☞ 청년/중장년) 만 30세 이상 64세 이하 청년 및 중장년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인 1인 취약 가구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혹은 당뇨병 관리 시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일부 감면
- (정책 개선방안 4 ☞ 노인) 만성질환 보유 저소득 및 차상위 재가 허약노인 1인 가구 대상 보건-복지 통합 프로그램 제공 모형 개발 및 운영

○ 정신건강 영역

- (정책 개선방안 1 ☞ 청년/중장년) 청년/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스트레스 관리실 확대 운영
- (정책 개선방안 2 ☞ 청년/중장년) 중독 1인 가구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정책 개선방안 3 ☞ 노인) 노인 1인 취약 가구 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화

○ 돌봄 & 안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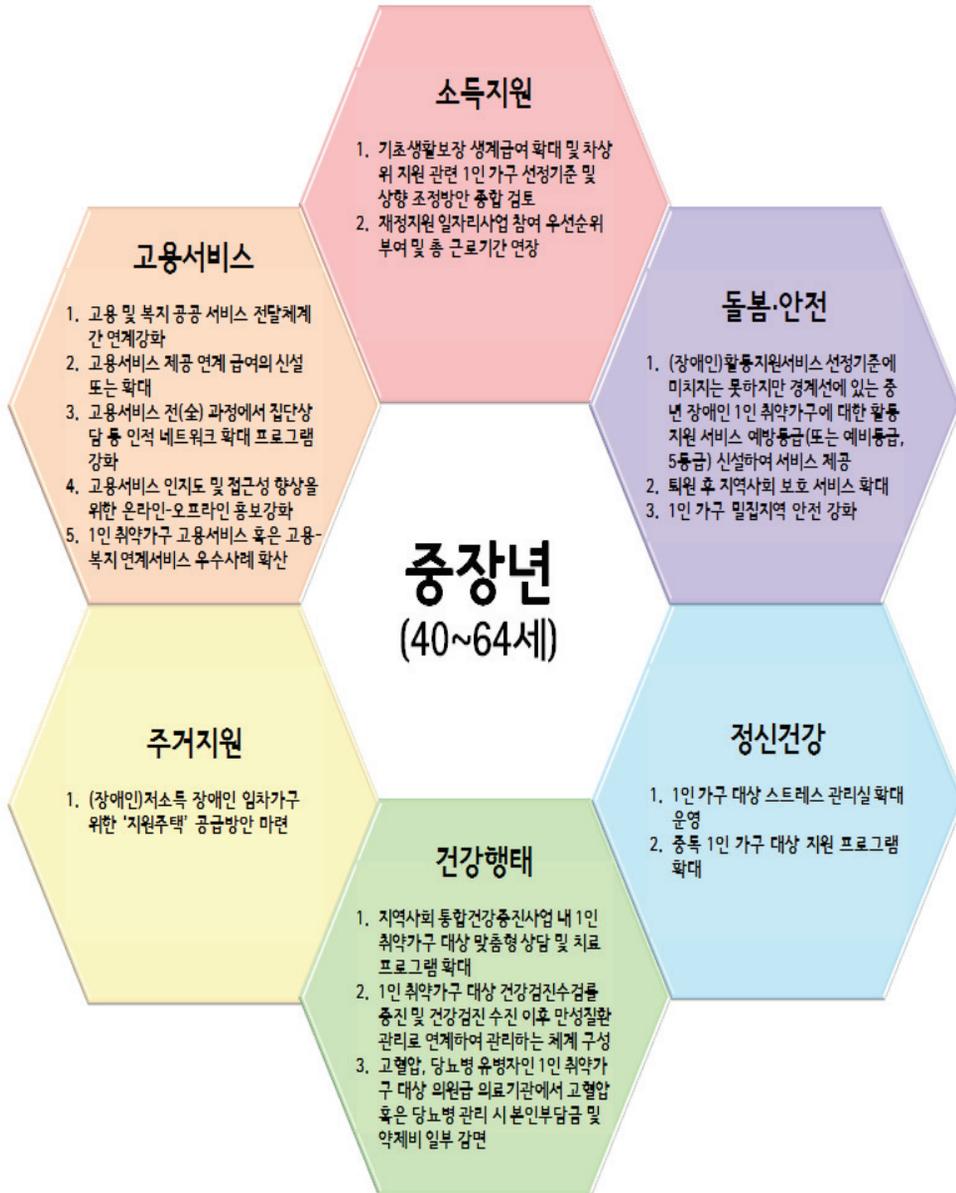
- (정책 개선방안1 ☞ 중장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중년 장애인 1인 취약가구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예방등급(또는 예비등급, 5등급) 신설하여 서비스 제공
- (정책 개선방안 2 ☞ 노인) 일상생활 불편해소서비스 제공
- (정책 개선방안 3 ☞ 청년/중장년/노인) 퇴원후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확대
- (정책 개선방안 4 ☞ 청년/중장년/노인)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전 강화

□ 정책대상별 정책지원 방안

○ 청년(18~39세)



○ 중장년(40~64세)



○ 노인(65세 이상)



□ 정책 및 예산관리 영역

☞ 1인 취약가구 생애주기별 위험 대응 정책 및 예산관리 제도 마련 필요

○ 1인 취약가구 재정지원 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리

-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개인화된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해 합리적 사회안전망 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함
- 현행 부처중심의 프로그램예산 편성체계에서는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나 수혜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1인 취약가구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요구됨
- 관련 부처별 생애주기·정책영역별 재정지원 규모, 성과목표, 수혜실태 분석, 기대 효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1인 취약가구 재정지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취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예를 들어,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1인 취약가구 관련 예산, 통계, 정책설계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단행본·논문>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2016a).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고용노동부. (2016b).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국민건강보험. (2016).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2015).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2016).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길현중, 박찬임, 성지미, 김예슬. (2015). 고용복지+센터 발전방안. 고용노동부.
- 길현중. (2016).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 미래지향적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대토론회.
- 김광석. (2015).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2016). 트렌트 코리아 2017. 미래의창
-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최지희, 김명희, 김소운, 김영애, 김유미, 박정희, 장숙량, 정진주, 정최경희, 천희란. (2013).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질병관리본부.
- 김도희. (2012). 청년 1인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 학술대회 논문집, pp.1-27.
- 김혜영. (2007). 비혼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원석, 박은철. (2014).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 박세경, 강은나, 황주희, 김정현, 하태정, 이정은, 등. (2015).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 (Joined-up Services) 공급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자. (2016). 만성질환 의료이용 분석과 개선방안: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지혜, 이순학, 한승희 (2015). 1인 가구의 문화소비지출행태 분석. 산업연구원

- 방하남, 이영면, 김기현, 김한준, 이상호. (2007).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배건이, 정극원. (2013). 1인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변미리(2016) 서울의 4種4色 1인가구, 대세로 자리잡다. 서울경제 2016년 3월 제132호.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복지재단.
- 변미리. (2014).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설명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2012).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현황 및 실적.
- 보건복지부. (2013).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 보건복지부. (2016a).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6b).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6c).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6d). 읍면동 복지허브와 내용과 정책방향. 사회안전망포럼 발표자료.
- 서울시. (2015.6).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현황보고.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서울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 정책포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서울시 보육교직원 소통방운영사업 최종심의보고서.
- 서울연구원. (2014).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정책연구.
- 성지미, 길현중, 김동태. (2016, 미발간). 고용복지연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송인주. (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 복지재단.
- 여성가족부. (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 안주엽. (2016). 청년층 고용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방향.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토론회 자료.
- 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 (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보건복지부, 동의대학교.
- 인천광역시. (2015). 2015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2015). 2015전남통계연보. 전라남도.
- 전진아. (2016).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등.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희, 임은정. (2014).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pp.1-19.

- 조상규, 손동필, 조영진.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건
축도시공간연구소
- 질병관리본부. (2013-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 질병관리본부. (2014). 국민건강통계.
- 질병관리본부. (2016). 2016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 천현숙. (2016) 가구원수별 주거사용면적 차이와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통계청. (2011).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동향 2015. 통계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2015 장애인백서.
- 한삼성, 강성욱, 정성화. (2012).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경험. 보건의료산
업학회지, 6(3), pp.29-38.
- 한정민, 이용호. (2013)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KIET 산업경제, 산업연
구원.
- Hasenfeld, Y. (1983). *“Human Services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보도자료〉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6.10.7.) 2016년 9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명
- 경기도 보도자료. (2016.05.17). BABY 2+ 파복하우스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2.2.). 강호인 장관, ‘쇠퇴지역 재생으로 국민안전 제고 앞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2.04). 공공실버주택, 국토부-지자체-LH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3.25). 공공실버주택, 성남위례에서 첫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5.30).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집주인”을 모
집합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6.13).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6.22). 청년전세임대 5천호, 첫 입주자 모집. 국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6.27).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6.28).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토지 분야 관련.
- 노컷뉴스. (2015.3.6.). 부산시, ADT 캡스와 ‘나홀로 여성’ 위한 방법서비스 시행.
- 디지털 타임스. (2015.3.18.). ADT 캡스- 부산시 손잡고 홈 방법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머니투데이방송. (2016.10.11.). 서울 청년층 월세 부담 비청년보다 2.7배 높아, 주거환경도 열악.

서울시 보도자료. (2013.02.06).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한지붕세대공감' 추진.

서울시 보도자료. (2016.03.24).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2030세대에 청년주택 대량 공급.

서울시 보도자료 (2016.6.22.) 2016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서울시민 생활상은?

세계일보 (2016. 11. 18). 1인가구,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쓴다.

시사저널 (2016. 11. 17). 솔로이코노미① 편의점, 렌탈 사업 급성장.

시사저널 (2016. 11. 18). 솔로이코노미② 식품, 외식업 1인용 인기몰이.

통계청 보도자료 (2016.6.29.)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 (2016.9.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파이낸셜 뉴스 (2016. 11. 13). 4인 가구보다 많은 '나홀로 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시급.

황성균. (2015). 제23차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시험공고. 황성균 공고 제2015-954호.

<참고사이트>

LH홈페이지. 2016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SH공사 홈페이지. 희망하우징 소개 사이트.

(http://www.i-sh.co.kr/www/m_157/wpge/lease_wish_intro.do) 및

강원통계정보 홈페이지. (stat.gwd.go.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소개 사이트.

(<http://www.gico.or.kr/business/welfare/ddabok02.do>).

경남통계. (stat.gyeongnam.go.kr)

경상북도 통계포털. (www.gb.go.kr)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 (area.busan.go.kr)

서울시 홈페이지.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제도 소개.

(<http://opengov.seoul.go.kr/public/6442411>)

서울시 홈페이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소개.

(http://citybuild.seoul.go.kr/young_house_background/young_house_basic)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통계. (stat.seoul.go.kr)

워크넷 일자리/복지 통합검색. (www.work.go.kr)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참조. (<http://www.i-sh.co.kr/index.do>)

일모아. (ilmoa.go.kr)

주택도시보증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중앙자살예방센터홈페이지. (www.spckorea.or.kr)

청년희망재단. (www.yhf.kr)

1. 2016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류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 접 일 자 리	1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3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4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지원(건설현장안전지킴이)
	5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6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7	교육부	배움터 지킴이	
	8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9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아 교육지원
	10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해외인턴십)
	11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12	농림부	가축위생 방역본부	구제역 예찰 전담요원
	13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14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강소농추진 민간전문가
	15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16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글로벌농업인재양성
	17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8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19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0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학예인력지원; 사립박물관문화에듀케이터지원
	21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2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3	문화부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교육및배치
	24	문화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현장활동 및 신규양성
	25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6	문화재청	궁능방재 시스템 구축	
	27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28	문화재청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9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0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보훈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31	보훈처	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32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33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34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35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36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37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38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분류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39	복지부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지원	
	40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1	기재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42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4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보조포함)	
	44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45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46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포함)	
	47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48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49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50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언어영재교실운영등	
	51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아동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52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53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54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다자협력전문가	
	55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해외봉사단	
	56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ODA청년인턴	
	57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58	해수부	어업협정 이행	민간어업협력사업	
	59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국가기록물정리	
	60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61	행자부	정보하마을조성(경상)	프로그램관리자육성	
	62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취약계층 공공근로 사업	
	63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64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5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국립공원지킴이;주민 감시원;5대강환경지킴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66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67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락직종훈련
		68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69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70	고용부	기술·기능인력양성	
		71	고용부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용자)	
		72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73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74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75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76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77	고용부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78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79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80	고용부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분류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81	고용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82	고용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83	고용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자자체 지원사업
	84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지원
	85	고용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86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87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88	국토부	U-City 인력양성	
	89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석박사과정; 취업자과정 지원
	90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91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92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93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94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95	문화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업계맞춤형교육프로그램
	96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1. 관광전문인력육성및산학협력 2. 관광내인력교육 3. 관광아카데미 4. 관광통역안내사교육 5. 카지노아카데미 6.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7. 관광학
	97	문화부	문화콘텐츠인재양성(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콘텐츠핵심인력양성; 사이버인력양성; 창의인재동반성장 양성과 통합
	98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특화교육
	99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영화 및 비디오 콘텐츠 인력육성
	100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101	미래부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102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103	미래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104	법무부	경쟁보호활동	직업훈련
	105	법무부	직업훈련	
	106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107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108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09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110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11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직업훈련
	11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113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114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복지정보포털시스템
	115	행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116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117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118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화학물질관리)	생태독성, 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119	산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고 용 서 비	12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121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22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23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296 1인 취약가구 위험 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분류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스	124	고용부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125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126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사회심리재활지원
	127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128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29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130	고용부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131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제외한 금액
	132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33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134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35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36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137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
	138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139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140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141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전역군인취업역량강화
	142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전직교육원
	143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144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145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146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47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148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온라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
	149	중기청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150	고용부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151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	
152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153	고용부	고용촉진지원금		
154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155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56	고용부	생활안정자금대부(용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157	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158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고용연장지원금	
159	고용부	장년고용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 인턴지원금	
160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161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62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보)		
163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64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65	고용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66	미래부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고용장려금

분류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창업지원	167	산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기술혁신운영중견,중소기업인력지원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168	중기청	신성장기반자금(가젤형기업지원)	
	169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가젤형기업지원)	
	17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17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172	고용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173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채류형창업지원센터
	174	미래부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신규)
	175	산자부	대체산업창업지원(용자)	
	176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 활성화
	177	중기청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178	중기청	장애인기업 육성	장애인창업교육
	179	중기청	재도약지원자금(용자)	재창업자금(채무조정형포함)
	180	중기청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81	중기청	중소기업재기지원	
	182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183	중기청	창업기업자금(용자)	
	184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185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186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187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실업소득유지및지원	188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189	고용부	구직급여	
	190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191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192	고용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193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194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195	고용부	채당금지급	
	196	고용부	채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197	농림부	경영이양직불	
	198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2016b

2.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기간) '16. 9. 23.(금) ~ 9. 30.(금)
- (조사대상) 22개 부처 287개 사회보장 내역사업 전수조사
 - 1인 가구를 특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
 - 1인 가구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1인 가구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이 있는 사업
 - 1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업

□ 조사 결과

○ 전부처 사회보장사업의 1인 가구 지원 조사결과

구 분	사업 수	상 세
지원대상에 1인 가구 명시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국도교통부) 행복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 청년 전세임대, 공공실버주택, 창업지원주택, 청년임대리츠 ■ (환경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1인 가구에 별도 기준, 서비스 등 적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1인 가구 배제	0	
1인 가구 관련 별도 기준 없음	272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규정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보훈점검이 등 유사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기준

- 독거노인 현황조사(매년 초)를 통해 조사한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항목을 점수화하여 일정점수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을 주 1회 직접방문, 주 2회 전화를 통해 안부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1일 안전 확인 실시

○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53,912	257,702/257,702	257,702
2015년	62,447	273,873/273,873	273,873
2016년 (*16.8.31.기준)	69,959	250,193/250,193	250,193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규정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 * 공식적인 재가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은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기준

- 고독사자살 고위험군의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집단분류
- * 노인 특성에 따라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으로 구분

○ 지원내용

- 고독사자살 고위험군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및 독거노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자조모임 운영
- * 개인상담, 사례관리, 우울증 진단·투약, 집단(정신)치료, 자조모임, 외부 나들이 등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2,520	3,605/3,605	3,605
2015년	2,680	3,080/3,080	3,080
2016년 (예상치)	2,680	4,800/4,800	4,800

□ 독거노인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규정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생애주기 구분 가능 시 기재 요망(구분 : 3) 노인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인정한 자

○ 지원내용 : 6) 돌봄안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댁내에 화재·가스 및 활동센서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6,587	-	80,754
2015년	7,683	-	88,306
2016년 (예상치)	12,534	-	88,306

□ 독거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근거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국가보훈처 훈령)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이며 노인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훈대상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 생애주기 구분 : 노인(3)

○ 지원기준(소득기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판단기준 ◀

-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가계지출비 대비 100%이하(1인가족 2,382천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가계지출비 대비 200%이하 (4인가족 8,934천원)이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원내용: 6) 돌봄·안전

- 보훈섬김이가 재가복지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신체청결·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병원동행, 말벗 등 정서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22,576	13,978(4,848)	13,978
2015년	20,550	15,767(5,966)	15,767
2016년 (예상치)	21,510	15,900(6,606)	15,900

□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 근거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5)

○ 지원대상

- 젊은층(대학생·사회초년생(1인 가구),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 근로자 등

* 지원대상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1인 가구임(지원기준은 입주기준 참고)

○ 지원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대학생 또는 대학교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일부 대학원생 포함)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국민임대 기준
사회초년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평균 소득의 80% 이하 (세대 100%이하) (자산) 5년·10년 공임기준

○ 지원내용

- 주거지원(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429,430	- / -	-
2015년	1,045,368	847 / 255	255
2016년 (예상치)	1,321,096	10,000 / 3,000	3,000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요약(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대학생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본인 자산이 국민임대 기준 이하
사회초년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자산이 공공임대 기준 이하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인근 직장에 재직 또는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이하) (자산)세대 자산이 공공임대 기준 이하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 자산이 공공임대 기준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세대 자산이 국민임대 기준 이하
산단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이하) (자산)세대 자산이 공공임대 기준 이하

주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5년 100% 481만원, 80% 385만원, 120% 577만원
 주2) 자산(부동산/자동차) : (공공임대)2억1,550만/2,767만원 (국민임대)1억2,600만/2,465만
 주3)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계층 80%, 취약·노인계층 20%(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국입 등과 혼합단지,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거주 기간 : 순환유도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은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20년
- *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무자녀 6년, 자녀 1명 8년, 자녀 2명 이상 10년)

□ 내집마련디딤돌대출(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규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지원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1인가구) 디딤돌대출은 만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를 지원함

○ 지원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은 연간 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2억원 한도로 LTV 70% 등 고려 구입자금 지원
- 대출기간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연 1.6% ~ 2.9% 수준으로 대출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4,872,860	24,863/6,531	6,531
2015년	3,600,000	37,880/11,031	11,031
2016년 (예상치)	3,600,000	36,198/17,610	36,198

* 디딤돌대출은 2014.1월 출시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이차보전분 지원액은 제외)

* '16년 실적은 8월말까지 실적을 연환산하여 작성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규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1인가구) 버팀목대출은 만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를 지원함

○ 지원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신혼가구 등은 연간 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에 임차보증금의 70% 지원
- 보증금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연 1.3%~2.9% 수준으로 대출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	-	
2015년	4,400,000	109,360/51,344	51,344
2016년 (예상치)	4,431,400	106,785/68,108	68,108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015.1월 출시 / '16년 실적은 8월말까지 실적을 연환산하여 작성

□ 주거안정월세대출(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규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지원대상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인가구)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은 민법상 성년이상, 일반형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일반형) 등

○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최대 720만원 이하)
-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10년 지원,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	-	-
2015년	4,400,000	210/94	94
2016년 (예상치)	4,431,400	240/150	150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15.1월 출시되었으며 전세자금 예산을 같이 사용

□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근거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지원대상 :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주거취약가구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65세이상이면서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사군 출신 대학생으로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 지원기준

- (고령자)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 (대학생)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	/	
2015년	-	/	
2016년 (예상치)	966,688	/	

* 예산액은 다가구 매입임대 출용자 총예산을 기입했으며(공공리모델링은 매입임대 예산에 포함됨)어 있으며 올해 2,000호 매입 및 200호 공급 목표(12월에 공급예정)

□ 청년 전세임대(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근거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의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0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 지원대상

-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지원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2분위, 월 212만원), 장애인(소득 100%이내)으로 무주택(3점), 가구특성(가구원 5인이상)에 따른 가점방식 공급

○ 지원내용

- (주거지원) 수도권 8천, 광역시 6천, 道지역 5천만원
-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8~19만원 수준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1,720,000	3,650/3,650	3,650
2015년	2,205,000	4,923/4,923	4,923
2016년 (예상치)	3,013,000	10,000/10,000	1,000

* 예산액은 전세임대 용자예산을 기입하였으며(청년전세임대 예산은 전세임대용자 예산 일부) 올해 2,000호 공급 계획

□ 공공실버주택(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개요

- (개념)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1개동에 복지관과 주택을 복합건축
- (입주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며,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소득 수준의 국가유공자가 1순위, 수급자 가구가 2순위이며 3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 * 동일 순위 내에서는 홀몸 어르신(단독세대주)이 우선

○ 추진현황

-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아 올해 1월 11곳(1,234호) 선정하여 추진 중
 -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한 성남위례와 성남목련은 연내 입주
 - 신규로 건설하는 9곳도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7년말~'18년 입주

수도권 (3곳)	성남위례(164호) 성남목련(130호) 수원광교(150호)	
충청권 (2곳)	보은이평(100호) 세종신흥(80호)	
강원 (1곳)	영월덕포(100호)	
전라권 (2곳)	장성영천(100호) 부안봉덕(80호)	
경상권 (3곳)	울산혁신(100호) 안동운흥(150호) 부산학장(80호)	

○ 특징

- (주택)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비상콜 등이 설치되어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 제고
- (복지관)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
 - 실버복지관은 입주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 공공실버주택 예시도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규정

- 에너지및자원회계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 LPG고무호스 사용주택의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은 무료 시설개선 지원중(국비 및 지방비 매칭)

○ 지원대상

- LP가스 호스사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지원기준

- 독거노인 가구 중 LPG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가구(기타 기준 없음)

○ 지원내용: 6) 안전

-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안전장치(퓨즈콕) 설치 등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독거노인 지원 인원
2014년	12,548	72,188	8,300
2015년	13,351	74,983	8,623
2016년 (예상치)	17,438	94,436	10,840

* 전체지원가구중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구분은 '16년부터 시작되어, 14·15년은 '16년 기준으로 작성

□ 근로장려금(EITC)(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법」제100조의2 ~ 13

○ 지원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일정 연령 이상*인자

* 단독가구는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 ('13~'15년 60세, '16년 50세, '17년 40세)

○ 지원기준

구 분	신청요건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재산주택요건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세금의 환급방식으로 지급(소득보장)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900만원	70만원
900~1천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 × 400분의 70

○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천가구, 천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7,745	846 / 143	
2015년	10,565	1,282 / 207	
2016년 (예상치)	11,000	1,380 / 308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세입예산에 해당(전체 지원가구 지급실적임)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규정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 1급~3급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중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지원기준

- 재산, 소득기준 해당없음.

○ 지원내용: 6)돌봄·안전,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2,464천원 지원
-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720천원 지원
-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180천원 지원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가구, 명)

구 분	예산액 (국비 기준)	지원실적(집행기준 작성)	
		지원 가구 수/1인가구 수	지원 인원
2014년	52,545	53,870 / 8,365	8,365
2015년	61,457	60,521 / 9,810	9,810
2016년 (예상치)	70,133	67,000/11,220	11,220

* 지원기준 : 년도말 기준, 활동지원 추가급여지원액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59호, 2016.3.24., 제정]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51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2.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59호, 2016.3.24>